


연구결과 요약집

2004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과 재정정책 등 경제 관련 정책들을 연구·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2년 9월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개원 이후 저희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고 폭 넓은 연구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확립과 세무행정의 발전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바, 보다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정책의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국가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조세 및 재정분야에 대한 본원의 연구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연구결과를 한 데 모은 이 연구결과 요약집이 아무쪼록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9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일 러 두 기

1. 본 책지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03년 이후 발행한 보고서의 내용 요약 및 주요 목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3년 이전에 발행한 보고서는 '1993~2003 발간도서목록'에 수록하였습니다.
2. 지면 관계상 용역보고서, 번역자료, 일부 기타보고서 등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3.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목차는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f.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4. 본 책지에 수록된 보고서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연구보고서 7
 - 03-01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9
 - 03-02 장기 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23
 - 03-03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31
 - 03-04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37
 - 03-05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45
 - 03-06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51
 - 03-07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7
 - 03-08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 63
 - 03-09 지방자치단체 純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70
 - 03-10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74

- 정책보고서 81
 - 03-01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83
 - 03-02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88
 - 03-03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97
 - 03-04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105
 - 03-05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109
 - 03-06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113
 - 03-07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117
 - 03-08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122

03-09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126
03-10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129
● 기타보고서.....	133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135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142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148
전설의 10년: 1990년대 미국경제 성공의 교훈.....	157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170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175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184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187
고령화 현상에 수반되는 사회경제 변수 및 의료지출의 변화.....	18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198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202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	206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	210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212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216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관한 이해.....	219
● 『재정연구』.....	223
● 『재정포럼』.....	233
● 1993~2003 발간도서목록.....	257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 ◆ 성명재·박형수·전병목·
박기백·김현아
- ◆ 2003. 8.
- ◆ 222p/8,000원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본이 되는 재정수지를 전망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경제위기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던 현실, 국민연금이 최근에는 상당히 큰 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장차 수지적자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등에 따라 건전재정 기초의 회복이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최대의 재정현안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급반전되어 2002년에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가 5.4조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03년을 목표로 하였던 재정흑자 기초가 조기에 달성되는 듯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직 재정불안 요인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건전재정 기초의 유지·관리는 여전히 우리 재정의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부터는 정부재정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지방재정까지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기 시작하므로 지방재정까지 아우른 통합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2002년 말의 대선공약과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재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후보들이 매우 많으며, 각계로부터 구조개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개별 정책은 모두 국민경제의 성장원동력을 배가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정책은 재정 부담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동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건전재정 기초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중기전망을 하고 부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안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재정수지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2004~2008년의 거시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04년에 5.6%, 2005년에 4.4%, 2006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수렴하여 연평균 5.2%의 실질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성장률이 다른 해보다 다소 낮은 경기순환적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가 2004년의 경기회복기를 거쳐 2004년 하반기 또는 2005년 상반기에 정점을 지나 약 1년 정도의 하강국면에 진입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지출은 2002년중 소비과열로 7%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 2003년에 2%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4.8%, 3.7%, 2006년 이후에는 4%대 중반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3년보다 높아지는 것은 2004년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2005년 이후에는 소폭 악화 또는 변동이 없어 실질GNI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과 비슷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의 급증 및 소비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민간저축률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2004~2008년 평균 5.2%)보다 다소 낮게(4.4%) 전망되

는 이유는 신용카드 등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소비둔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금융대출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중기(2004~2008년) 거시경제 전망 결과

(단위: 증가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 실질GDP	3.1	6.3	4.2	5.6	4.4	5.7	5.3	4.6
1. 총소비	4.2	6.2	2.0	4.5	3.5	4.4	4.2	3.7
민간소비	4.7	6.8	2.1	4.8	3.7	4.7	4.5	3.9
2. 총고정투자	-1.8	4.8	4.1	6.9	7.1	5.6	6.6	5.3
설비투자	-9.6	6.8	3.4	11.4	9.3	5.4	7.6	5.1
건설투자	5.3	3.3	4.5	3.3	5.2	5.7	5.6	5.4
3. 총수출	0.7	14.9	10.5	7.0	7.5	8.5	7.7	7.3
4. 총수입	-3.0	16.4	10.4	7.9	9.4	7.4	7.6	7.3
II. 물가								
1. 소비자물가	4.1	2.7	3.8	3.0	3.0	3.0	3.0	3.0
2. GDP디플레이터	2.5	1.7	1.0	2.5	2.4	2.3	2.4	2.5
III. 환율·경상수지								
1. 환율(원/달러)	1326	1200	1220	1200	1200	1200	1200	1200
2. 경상수지(억달러)	82	61	10	25	△20	10	5	0
상품수출	-14.0	7.5	8.5	7.5	6.8	8.2	7.6	7.5
상품수입	-13.4	7.7	11.3	8.6	9.4	8.3	8.2	8.2

주 : 2001~2002년은 실적치, 2003~2008년은 전망치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4년에 11.4%, 2005년에 9.3%로 2001년 이후 저조했던 설비투자로 인한 생산능력 저하추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에 대한 각종 불확실성 증대와 기업활동이 1990년대와 같이 활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06년 이후에는 설비투자가 5% 중반대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향후 5%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몇 년간의 추세보다는

다소 높지만 2000년대 증가율이 1990년대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건설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14.3%로 1990년대(21.5%)에 비해 약 7%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거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2003년중에는 교역조건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2004년에는 다소 개선되고 2005년 이후에는 소폭 악화 내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은 전망하기 어려워 연평균 1,200원으로 가정하였다.

수출물량의 경우 미국, EU, 일본, 중국경제 등 주요국의 성장률 및 환율 등에 의해 좌우되는데, 향후 7%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물량의 경우에는 환율, 설비투자, 경제성장률 등에 의해 좌우되는데, 2004년 및 2005년에는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재 수입 등의 증가로 다소 높은 8~9%의 증가율을 보이겠으나 이후에는 7%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9.4%와 9.1%로 1990년대 평균(14.1%와 11.3%)보다 낮아지지만, 경제성장률보다는 높아 무역의존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2008년에는 실질GDP의 1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외 수입, 지급을 포함하는 경상수지는 2003년 및 2004년에는 소폭 흑자를, 2005년에는 소폭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 대체로 균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물가 목표가 2.5~3.5%인 점을 감안하여 3%로 전망하였으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국제원유가, 반도체 가격 등과 연계되어 있는 수출입 단가지수의 향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5%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3. 2004~2008년의 통합재정수지

2004~2008년의 거시경제 전망과 세입 및 세출 전망치를 토대로 작성한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지흑자분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02년에 이미 5.4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2003년에도 2조원 정도의 소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2005년에는 적자(약 2조원)로 반전되었다가 다시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되어 2008년중에는 3조원 정도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세입전망은 전망치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세출은 전망치라기보다는 계획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정도로 재정당국의 정책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수지 전망치는 세출규모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2> 통합재정수지 기준선 전망

(단위: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수입	135.8	144.0	158.7	172.0	184.9	199.0	219.1	238.1	257.8
- 중앙정부세입	134.0	142.2	156.9	170.1	182.8	196.7	216.6	235.5	255.0
· 국세	92.9	95.8	104.0	114.4	122.4	135.1	150.0	163.9	173.4
· 사회보장기여금	14.8	17.5	19.7	21.6	24.2	29.7	32.3	35.1	35.1
· 세외수입	25.0	27.6	31.8	32.5	34.6	37.6	41.6	45.8	50.5
· 자본수입	1.3	1.3	1.4	1.6	1.6	1.6	1.6	1.6	1.6
- 비금융공기업 수입	1.8	1.8	1.8	1.9	2.1	2.2	2.4	2.6	2.8
총지출 및 순융자	129.3	136.8	136.0	150.3	161.6	175.4	191.6	206.7	220.7
- 중앙정부 세출 및 순융자	126.8	132.2	131.1	145.0	156.0	169.4	185.2	199.8	213.2
· 이자제외	122.4	129.6	129.2	135.0	144.3	154.2	167.5	181.1	195.0
· 공적자금상환이자	0.0	0.0	0.0	2.8	3.8	5.4	6.8	7.8	7.9
· 기타이자	6.9	7.2	6.8	7.2	7.9	9.8	10.9	10.9	10.4
- 비금융공기업의 지출	2.5	4.5	5.0	5.3	5.6	6.0	6.4	6.9	7.4
통합재정수지 ¹⁾	6.5	7.3	22.7	21.7	23.3	23.6	27.4	31.4	37.1
- 국민연금기금 수지	13.6	14.9	17.3	19.7	22.4	25.5	28.4	31.2	34.2
- 국민연금기금 제외 수지	-7.1	-7.6	5.4	2.0	0.8	-1.9	-1.0	0.2	3.0
(경상GDP 대비, %)									
통합재정수지	1.25	1.32	3.80	3.45	3.43	3.23	3.49	3.72	4.10
- 국민연금기금 수지	2.61	2.70	2.90	3.14	3.31	3.48	3.62	3.69	3.77
- 국민연금기금 제외 수지	-1.36	-1.38	0.90	0.31	0.12	-0.25	-0.12	0.03	0.33

주 : 1)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함.

2003~2006년중에는 재정부담분 예금보험공사채 및 자산관리공사의 만기 도래분에 대한 국채전환 등으로 2002년 말 현재 126.6조원(경상GDP 대비 21.2%) 수준이던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규모가 2006년 말을 기준으로 204.2조원(경상GDP 대비 26.0%)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여 2008년 말에는 194.1조원(경상GDP 대비 21.4%)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중앙정부 국가부채 전망

(단위: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채	76.3	87.8	103.1	123.0	149.1	172.5	191.4	189.3	184.3
- 외평채(잔액)	13.5	14.1	20.7	21.9	21.9	21.9	21.9	21.9	21.9
- 공적자금상환용(순발행)	0.0	0.0	0.0	13.8	12.9	13.3	13.5	1.4	1.3
- 기타 국고채(순발행)	7.9	10.9	8.8	4.8	13.2	10.0	5.4	-3.5	-6.3
- 국민주택기금채(순발행)	1.9	2.9	5.6	3.0	3.0	3.0	3.0	3.0	3.0
차입금	21.9	22.5	20.7	19.1	13.2	11.6	10.0	8.5	7.0
국고채무부담행위	2.7	2.8	2.8	2.8	2.8	2.8	2.8	2.8	2.8
국가채무(중앙정부)	100.9	113.1	126.6	144.9	165.1	186.8	204.2	200.6	194.1
(경상GDP 대비, %)	19.3	20.5	21.2	23.1	24.3	25.6	26.0	23.8	21.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재정수지는 국민연금을 제외할 경우 규모는 작지만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수 조원 정도의 재정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었다¹⁾.

1)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채무는 향후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채무를 중앙정부의 채무에 포함시킨 국가채무에 대한 향후 전망은 생략하였다.

<표 4> 중앙 및 지방재정의 순계

(단위: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앙정부									
세입	135.8	144.0	158.7	172.0	184.9	199.0	219.1	238.1	257.8
세출	90.7	71.4	78.7	98.3	106.7	117.1	128.2	138.3	147.2
재정수지	45.1	72.6	80.0	73.7	78.2	81.9	90.8	99.9	110.6
지방자치단체									
세입	32.1	40.7	46.9	49.4	54.0	58.0	63.1	68.4	73.8
세출	52.4	59.4	65.1	68.8	74.9	80.6	87.7	95.2	102.6
재정수지	-20.3	-18.7	-18.2	-19.3	-21.0	-22.6	-24.6	-26.7	-28.9
교육자치단체									
세입	1.7	1.8	1.9	2.0	2.2	2.3	2.5	2.7	2.9
세출	19.7	23.0	26.1	28.0	31.1	33.9	37.6	41.6	45.6
재정수지	-18.0	-21.3	-24.2	-26.0	-28.9	-31.6	-35.1	-38.9	-42.7
공공부문 전체									
세입	169.5	186.5	207.5	223.5	241.1	259.3	284.7	309.3	334.5
세출	162.8	153.8	169.9	195.0	212.7	231.6	253.6	275.0	295.4
재정수지	6.8	32.7	37.6	28.4	28.4	27.7	31.1	34.3	39.1
국민연금기금 수지	13.6	14.9	17.3	19.7	22.4	25.5	28.4	31.2	34.2
국민연금기금 제외 수지	-6.9	17.8	20.3	8.7	5.9	2.2	2.7	3.1	4.9
(경상GDP 대비, %)	522.0	551.6	596.4	627.6	678.7	731.2	786.2	844.5	906.3
공공부문 전체 재정수지	1.30	5.93	6.31	4.53	4.18	3.79	3.96	4.06	4.31
국민연금 제외수지	-1.31	3.23	3.40	1.39	0.88	0.30	0.35	0.37	0.54

주 : 2000~2001년은 통계치이며, 2002~2008년은 전망치임.

한편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가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조세부담률은 2003년 23.5%에서 2008년 24.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까지 포함시킨 국민부담률도 같은 기간 동안 27.0%에서 27.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 국민부담률 등의 전망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세부담률	18.23	18.03	17.85	18.29	18.46	18.52
조세부담률	23.54	23.40	23.22	23.73	23.97	24.07
국민부담률	26.98	26.96	26.91	27.51	27.79	27.94

4. 세입·세출정책 변화시의 모의실험 결과

세입·세출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재정수지는 기준선 전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거나 대통령선거 공약 등의 정책대안 후보 가운데, 담배 관련 세금 또는 부담금의 인상, 법인세 인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 중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방안, ‘교육재정 규모의 GDP 대비 6% 확충’ 방안, 그리고 재정지출 억제가 필요한 경우 지출을 삭감하는 5가지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7.6%로 인상하는 경우의 재정수지 효과도 살펴보았다.

가. 담배세 인상방안의 효과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을 인상(예: 내국세 1.7조원, 부담금 1.5조원)하여 2004년부터 연간 3.2조원씩의 세입을 증대시키면 직접적으로 재정수지를 연간 3.2조원씩 개선시킨다. 그러나 내국세의 증가(연간 1.7조원)는 연간 0.4조원의 지방재정지원 지출을 증대시키므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의 순개선효과는 2.8조원에 이른다. 재정수지의 개선은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늦춰지거나 국가부채 절대규모를 감소시킨다. 이는 지급이자지출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부차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개선시킨다.

결론적으로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을 확대하면 2004~2008년 동안 총세입이 16.1조원 증대되지만 지방지원지출 증가를 차감한 연후의 지급이자지출 감소

효과가 총 0.5조원 정도에 이르러 전체적인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1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감세방안의 효과

법인세나 여타 세목에서 감세를 통해 2005~2008년 동안 연간 3.6~4.9조원 정도의 세입을 감축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막대한 수지흑자로 인해 중앙정부만을 고려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면 통합재정수지는 2005~2007년 동안 1.4~4.5조원(GDP 대비 0.2~0.6%)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2008년 동안 17.1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지면 직접적으로 재정수지가 17.1조원 악화되지만, 지방재정지원 지출 감소 및 지급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총지출 및 순융자의 순효과가 2.9조원 감소함으로써 총체적으로는 2004~2008년 동안 재정수지가 14.2조원만큼 악화된다.

적자규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축소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정도의 적자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가부채의 증감추세를 놓고 볼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부채도 2007년에 최고치(210.4조원)를 기록한 후 2008년에 소폭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기조는 건실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여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 유아보육·교육지원 확대의 효과

유아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15.6조원 확대(연간으로는 1.9~4.3조원)하면 기준선 전망에 비해 국민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다소 확대되며, 국가부채 규모도 2004년 2.0조원, 2006년에는 8.3조원, 2008년 18.3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준선 전망에 비해 국가부채의 규모 차이가 커지는 것은 세출확대분이 누적됨에 따른 재정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의 추가적인 증가는 지급이자지출 규모도 확대시켜 재정수지를

2.7조원 정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유아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향후 5년간 총 18.3조원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라. 교육재정 확충방안의 효과

GDP의 6% 수준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6.6~7.9조원(중앙정부만 고려), 총액으로는 향후 5년간 36.4조원의 재원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어 적자규모가 2004년에는 6.0조원, 2006년에는 9.7조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이후 적자규모는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7.8조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23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GDP 증가율보다 낮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06년에 28.9%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08년에는 26.2%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 세출억제에 따른 효과

세입여건이 비정상적으로 악화되어 항구적인 세원 침식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출억제 방안을 검토한다. 세출억제 방안으로 주로 주택, 교통, 농어촌 부문과 상공업 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등에서의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 22.8조원의 지출증가를 억제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추세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흑자규모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부채는 2006년에 189.8조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지의 개선은 이차적으로 국가부채를 (누적으로) 감소시켜 지급이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향후 5년간 4.5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수지 개선효과를 지닌다. 그러므로 22.8조원의 세출증가 축소는 총 27.3조원의 통합재정수지 개선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바. 지방교부세율 조정시의 통합재정수지 효과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의 15%에서 17.6%로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총 14.4조원의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추가 이전된다.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의 증가로 직접 지출이 5년간 14.4조원 증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로 이자지급지출 규모가 향후 5년간 2.8조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총세출은 17.2조원 증가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14.4조원의 교부세 재원을 이전받으므로 재정수지는 직접적으로 14.4조원 개선된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경우 증가된 세입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산한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이자지급 등에 따른 간접효과만큼 재정수지를 악화시킨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세출 증가는 지방정부의 세입 증가분과 상쇄되지만 중앙정부의 이자지급 등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향후 5년간 총 2.8조원으로 추정)만큼 통합재정수지는 악화된다.

5. 정책시사점 및 결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남북통일, 급격한 노령화와 이혼 급증, 출산율 저하, 복지수요 팽창 등 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안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잠재적인 재정수요의 팽창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민부담률 상승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나 수준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과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서유럽 국가의 실패한 복지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

추어야 하고 지방재정 개편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여야 하며 우발채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유지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세입·세출정책을 적절히 연계시켜 적절한 범위내에서 정책조합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정책 또는 세출정책 하나만으로 재정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자칫 경제효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과세체계하에서 증대되는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증세가 불가피한 경우 증세의 기본방향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세 또는 시장의 실패 등에 의한 경제의 비효율을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세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으로는 최악세 또는 소비억제적 조세의 기능강화 방안을 들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복지수요 등의 증대로 인해 재정수요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희소한 만큼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세출증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긴요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과거보다 지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각종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수지를 정상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해 재정압박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 목 차

요 약

1. 연구의 목적
2. 2004~2008년의 거시경제 전망
3. 2004~2008년의 통합재정수지
4. 세입·세출정책 변화시의 모의실험 결과
5. 정책시사점 및 결론

I.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2. 배 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II. 거시경제 전망

1. 최근 동향 및 향후 여건
2. 중기 경제전망 방법
3. 중기 경제전망 결과

III. 중앙정부 세입 전망

1. 국세수입 전망
2. 세외수입 전망

IV. 중앙정부 세출 전망

1. 분석방법
2. 기능별 세출전망

V. 통합재정수지 기준선 전망

1. 추정방법
 2. 추정결과
-

VI. 지방재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전망
2.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전망
3. 중앙정부 재정전망과의 결합

VII. 정책시뮬레이션

1. 변동요인별 세입·세출 변동효과
2. 요인별 통합재정수지 효과
3. 지방교부세율 인상시 통합재정수지 효과

VIII. 정책시사점

1. 기본방향
2. 세입·세출정책의 연계 필요성
3. 분석의 한계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I. 세계경제의 동향 및 전망

부록 II.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추계방법 소개

부록 III.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 추계방법 소개

부록 IV. 지방세수입 추계방법 소개



장기 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 ◆ 김종면·성명재
- ◆ 2003. 12.
- ◆ 276p/9,000원

1. 요약

1) 서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세계화·개방화·정보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1997~1998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용구조 등이 대폭 개편되었으며, 그 결과 소득분포 구조 또한 급속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추세적 변화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고령화의 진전 추세에 따라 앞으로 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장차 고용구조 및 실업률 변동,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사회로의 진입 등 본질적으로 우리의 재정을 팽창시킬 수 있는 요인이 점증하고 있다. 세입 측면에서는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장기적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각종 세원분포도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변화된 제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의 재정수입·지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재정수입 부문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득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각종 재정수입 관련 연구에서 소득총량을 기준으로 소요재정규모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경우에도 평균소득 등 총량변수를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재정수입 또는 지출은 기본적으로 총량지표에 의해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총량 규모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구성원들의 상대소득분포에 의해 수입·지출 규모가 달라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에서는 미시적 소득분포의 변화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s)를 통한 총량 위주의 분석에 그쳤다. 따라서 미시적 분포의 변화에 의한 효과 추정 문제는 비껴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분포의 변화에 의한 효과 추정을 간과함으로써 연구목적과 수단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득분포 전망의 문제에 대해 유용한 해결책으로서 분포 자체를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틀을 이용하여 분포 전망에 필요한 모수와 분포 특성 자체를 추정함으로써 중·장기 재정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유용한 분석의 틀과 소득분포에 대한 추정결과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추정기법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전형적 특성(stylized fact)을 찾아내기 위하여 1982~2002년 사이의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가구소득 변수의 자연대수를 취한 자연대수 가구소득을 연도별·가구주 연령별로 분류하여 분포함수를 비모수적인 회귀분석방법(nonparametric regression)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연대수 소득의 정규분포 여부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연도

별·연령별 자연대수 소득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 내었으며, 그러한 관계가 시계열·연령별로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소득분포의 안정적 변화패턴에 착안하여 중·장기적인 소득분포 예측방법을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원의 변화추이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3) 소득분포함수의 추정

소득분포의 구조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검정방법을 동원하였다. (1) 자료상의 평균 및 분산을 통계학적 분포상의 평균 및 분포와 비교, (2) 경험분포와 이론적 확률분포와 비교, (3) 통계적 분포 검증을 통한 정규분포의 검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이 연도별 또는 연도·연령별 소득분포에 있어 자연대수 정규분포와 유사한 수준을 넘어 실제로 자연대수 정규분포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라는 2개의 모수로 분포 전체를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각종의 정책모의실험이나 경제모형 분석시에 모수적으로 주어진 소득분포가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결과의 현실적 유용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소득분배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1997년 연말에 외환위기가 도래하였고 1998년에 본격화되어 경제위기 상황이 가장 극심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시가구의 소득분포가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의 소득분포 구조가 상당히 심각한 붕괴현상을 보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자연대수 소득분포는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8년과 같이 매우 심한 좌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발하여 경제붕괴가 시작된 1997년 말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보통의 불경기보다는 훨씬 심각한 구조적 문제의 표출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

며, 보다 세밀한 추가적인 연구를 요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4) 연령별 상대소득분포의 추정

연령대별로 소득분포 구조를 검정한 결과 역시 각 연령별대 소득분포도 대체로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통합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횡단면에서의 연령별 상대소득분포가 실질적으로 불변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향후 연령별 소득분포 변화를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 세대별 생애 연령-소득 곡선의 도출

횡단면 연령별 상대소득분포가 실질적으로 불변이라는 특성을 응용하여 세대별 생애 연령-소득곡선을 도출하였다. 1982~2002년의 21년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관측기간이라는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40여년에 걸친 세대 생애 연령-소득 곡선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6) 지니표면을 이용한 자연대수 소득의 분산 추정

소득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계량화하였다. 그 결과 지니계수는 지역적으로(locally) 자연대수 소득의 표준편차의 일차식으로 근사(approximation)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분포의 분산을 간접기법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실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7) 소득세원 분포의 전망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 찾아낸 소득분포의 특성을 사용하여 향후 소득분포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득세의 추이를 예측해보는 사례를 보

였다. 그 결과 향후 2032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이 결과는 실효소득세부담률과 지니계수간의 상관관계만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소득세제의 개편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보완과제

본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격상 기초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득분포와 연관된 정책분야의 거의 모든 연구가 현실 연구에서 부딪혀왔던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과 방법론을 발견·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학문적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소득분포나 소득분배와 연관된 대부분의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조세·재정 분석 중 상당 부분의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조세·재정 분석에서 본 연구에 기초하여 이전에는 분석이 불가능했던 새로운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소득분포를 전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세제개편이나 과세구간 재설정 등에 따른 장기효과를 분석하면서 세밀한 정책모의실험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득분포를 계량화하여 특성 지움으로써,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정책 기획에 있어서 수혜대상이나 금액 등 수혜기준 설정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지며, 이러한 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의 장기전망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기여도·활용도 등을 논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소득분포는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며 그러한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장래의

분포 예측에 있어 필요한 모수 중 분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정요인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이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중 소득분포의 중·장기적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소득세원의 분포 추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득분포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과표의 총규모 및 상대분포와 세부담 분포에 대한 장기추세 분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가 어떤 체계를 취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아무런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상적인 소득세제를 대상으로 어떤 세제가 어떤 세부담 분포를 초래할 것이며 어떠한 세부담 분포를 가져다주는 세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줄 연구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보, 즉 1982~2002년의 소득분포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향후의 소득분포와 각종 공제 관련 항목 등에 대한 예측(projection)을 통해 소득세제 정책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미시적 분포 특성을 추정 또는 검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을 요구하는 만큼 미시분포의 변화추이에 발맞춘 개별관측치별 소득·소비분포에 대한 동시적 예측이 필요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령-소득 결합분포함수의 필요성
3. 분석방법

II. 분석자료 및 추정기법

1. 분석자료
2. 커널 추정기법의 소개

III. 소득분포함수의 추정

1. 연도별 소득분포
2. 연도별 ·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분포
3. 정규분포 여부의 검정
4. 소결

IV. 연령별 상대소득분포의 추정

1. 연령-소득 곡선의 도출
2. 회귀분석에 의한 세대 생애 연령-소득 곡선의 도출

V. 세대별 생애 연령-소득 곡선의 도출

1. 연도별 횡단면 연령-소득 곡선의 전망 도출
2. 세대별 생애 연령-소득 곡선의 도출
3. 개인소득과 대비한 가구소득의 특성

VI. 지니표면을 이용한 자연대수 소득의 분산 추정

1. 지니표면의 도출
 2. 자연대수 소득분산의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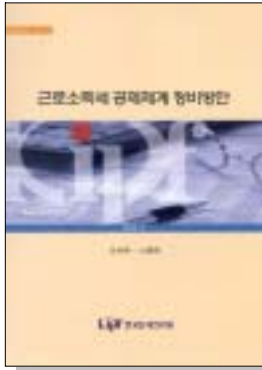
VII. 소득세원 분포의 전망 및 시사점

1. 소득세 실효세율과 소득분포의 상관관계
2. 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의 예측

VIII. 결론

참고문헌

- 부록 I.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부록 II. 커널 추정기법의 소개
부록 III. 연도-연령별 자연대수 가구소득 분포도
-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 ◆ 전병목·원종학
- ◆ 2003. 12.
- ◆ 156p/7,000원

1. 요약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와는 달리 과표양성화율이 낮고 개인의 신고소득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중하위 소득자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률적 확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의 비중을 증가시켜 넓은 세원 구축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 달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우리나라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세계개편의 주요 대상인 중하위 소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제율 확대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중하위 소득계층

에 집중된 혜택구조는 오히려 면세점 이후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중상위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심의 근로소득세제 개편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실제 생활의 기본단위인 가구의 세후소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가구의 생활수준은 소득자 일인의 수입보다 가구원당 수입이 잘 나타내나 현재의 재분배정책은 근로소득자 일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세제측면의 고려가 미약하여 실제 가구의 필요경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기존의 정책들은 가구원당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없는 1인 가구 등의 소득세 부담률을 급격히 낮추어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면세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보고서는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현황과 주요 선진국들과의 부담구조 비교분석을 통해 현 제도를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편방안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목간의 상대적 역할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근로소득세 제도측면에서는 면세점 수준, 누진구조, 가구원수에 따른 필요경비 고려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저생계비와 비교한 면세소득 수준은 1인가구의 경우 2.83배로 4인가구의 1.28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가구규모에 따른 면세소득 수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에서도 1인

가구의 면세 소득수준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평균생산직 근로자소득의 2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나 우리나라는 그 보다 높은 평균소득의 40~50%로 설정되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반면 4인가구의 면세소득은 평균소득의 60~70% 수준으로 미국·영국의 80~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가구규모 증가에 따른 세제적인 고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실효평균세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특히 저소득계층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구의 필요경비 측면의 고려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평균세율의 누진구조도 우리나라는 생산근로자 평균임금의 1.3배~2.3배 수준의 중간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공제로 인한 세수결손을 타세금으로 보전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공제의 정부예산 1원당 편익은 1.15원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1.31원보다 낮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예산 1원당 편익은 1.16원으로 두 제도 값사이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소득공제제도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분석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세수중립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공제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 역할을 소폭 변화시킨 시나리오 A(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의 소득수준별 실효세율의 변화는 전액 소득공제되는 소득한도가 줄어들어 따라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은 소폭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45%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의 적용범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연소득 3,000만원 내외의 근로자에게는 제도개편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다. 연소득 3,000만원 이상 수준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확대효과가 소득공제 축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게 되며 그 효과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축소된다. 이러한 제도개편의 영향은 연소득 약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실효세율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에 따른 부담구조의 문제점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은 생산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기존의 40~50% 수준에서 20~30%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져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4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 차이도 현재의 제도보다 넓어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이 현재보다도 낮아져 동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중간소득 계층에서 나타나는 실효세율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제도를 EITC제도로 개편하는 시나리오 B에 따르면, 1,5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음(-)의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1,600만원을 넘어감에 따라 실효세율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폭은 중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2,177만원~3,000만원계층의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4~6배 이상 증가한 10.0 ~11.4%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1인가구의 높은 면세소득 수준,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세제적 고려 미비, 그리고 중간소득 이상의 계층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실효세율 증가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EITC제도로의 개편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에 대한 면세소득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평균근로자 소득의 20% 이하로 낮아진 반면 4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은 소폭 증가하여 가구규모에 따른 고려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가구원 수 증가에 대한 세제적 고려는 필요경비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일정소득(생산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의 구간에서 크게 나타나며 소득이 동 수준을 초과하면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구규모에 따른 실효세율변화 패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구조로 판단된

다. 한편 근로소득세수는 현행 제도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나 상당한 저소득층 지원금을 고려하면 소득세 부담구조는 중상위근로자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정책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소득층보호와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는 1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을 높여 과세기반을 약화시키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두 공제제도의 확대는 넓은 세원을 지향하는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목적인 중하위소득자의 보호측면에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세제 측면의 고려는 현재와 같은 일률적 공제제도 중심의 조세체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등 일률적 공제제도의 축소와 함께 음(-)의 소득세와 같은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미 면세 혹은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간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실효세율 증가는 기존 공제제도의 구간 및 공제율의 종합적인 조정 등을 통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제제도의 공제율 누진도가 중간소득계층에서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구간 혹은 누진도를 조정하거나 소득구간의 물가연동제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전체적인 공제제도의 개편방향과 함께 각 공제제도의 역할 정립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대표적인 공제제도 중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소득공제제도보다 비용 대비 편익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제개편시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를 지양하고 정책목표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구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공제 수준의 현실화와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EITC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

1.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특징
2. 과세체계
3. 소득공제
4. 세액공제

III.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3.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4.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종합적 효과

V. 공제제도 개편방안

1. 개편방안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 ◆ 성명재·박노욱
- ◆ 2003. 12.
- ◆ 236p/11,000원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방세 세목별로 세수함수를 설정하고 이를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세목별 세수 총계를 추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부터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에 포함되기 시작하여 재정전망시 지방세 세수규모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재정운영에 긴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문제,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한 세목간 비중변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재원 교환·배분 등의 문제와 결부하여 지방세의 세목별 세수추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영희·조기현(1998), 조임곤(2001) 등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심도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자산과 같은 貯量變數(stock variables)로부터 세수가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소득·소비과세에 기반한 국세와는 과세환경이 판이하다.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에는 경제적 인과관계에 기초한 세수함수 설정 및 추정이 국세에 비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세수추계의 방법론이나 모형의

구조 등의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이가 없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재산 관련 변수에 대한 정보(예측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세 세수추계시의 유의사항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세수추계시에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기로 한다.

첫째, 경제적 인과관계에 기초한 세수추계는 논리적으로도 매우 우수하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세수추계를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시계열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자, 비록 경제의 인과관계에 기초한 모형의 맞춤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각종 경제전망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거시전망치를 대상으로 각 지방세 세목별 세수의 GDP 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을 지방세 세수추계를 위한 기본방법으로 채택한다.

둘째, 세목에 따라서는 거시경제지표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계열이 안정적인 변수(예: 지가지수나 자동차등록대수 등)를 대상으로 설명변수를 선정하는 방법을 통해 위의 문제를 완화한다.

셋째,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에 비해 세제뿐만 아니라 과표 조정 등과 같은 행정요인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즉, 과표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세수규모가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경제적 인과관계 분석보다는 추세분석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그러므로 지방세 세수추계에서는 추세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적절한 분석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추세분석에 있어서는 세수함수의 구조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세법개정, 지가변동 또는 과표조정(시가반영률이나 과표현실화율 등) 등을 포괄한다.

다섯째, 세수합수를 위한 기본 회귀방정식은 자연대수 선형모형을 기준으로 하고 분석방법은 단순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또는 코크레인-오컷(Cochrane-Orcutt, 이하 C-O 기법으로 통일) 기법을 기본으로 한다. 공적분에 기초한 CCR(can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 방법은 부록에서 검토한다.

3. 지방세의 구성

200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모두 17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주체에 따라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대분류되며, 세목의 성질, 즉 재원 배분에 대한 귀속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대별된다.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의 4개 세목이 있으며,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의 3개 세목이 있다. 시군세는 보통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의 8개 세목이 있으며,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의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재산할) 등은 자산 등의 취득·등록 또는 보유사실 등에 근거하여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볼 수 있다. 농업소득세, 주민세, 사업소세(종업원할)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기초하여 과세되며,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레저세 등은 주로 소비에 기반하여 과세된다고 볼 수 있다.

4. 지방세의 세수추계

지방세의 세수추계는 지방세 세수총계에 대한 것과, 세목별 세수추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후자는 총 17개 지방세 세목 가운데 13개 세목(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레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세목별 세수함수 또는 수요함수 분석을 통해 세수추계를 한다. 수요함수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가 적합한 세목은 소비세의 성격을 지니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의 2개 세목이다.

그 밖에 세수규모가 작은 지역개발세, 면허세, 도축세, 농업소득세의 4개 세목은 논의의 편의상 세수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회귀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세수전망

2003~2008년의 지방세 세수추이를 요약하면, 2003년의 경우 레저세, 주민세 등의 호조에 힘입어 세수증가율이 크게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는 세수가 경상GDP보다 다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단위탄력적 또는 소폭 탄력적인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3년도 지방세 세수는 34조 1,851억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2002년 대비 2조 6,59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증가율은 8.44%로 경상GDP 예상증가율(4.86%)의 1.74배 수준이다. 지방세 증가율이 경상GDP 증가율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지방세부담률은 5.29%에서 5.4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레저세와 주행세, 주민세 등이다.

2004~2008년에는 지방세 세수가 각각 36.5조원, 40.0조원, 42.4조원, 45.8조원, 49.5조원이 징수되어 연간 6.1~9.53%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는 지방세 세수가 36조 5,268억원 징수되어 전년대비 6.85%의 증가율을 시현하여 경상GDP 증가율(7.21%)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탄력성은 0.95로 2003년의 1.73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2003년에 세수증가율이 예외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데 따른 반작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세수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에는 39조 9,930억원이 징수되어 전년대비 9.49%라는 비교적 높은 세수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탄력성은 1.23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지방세부담률도 5.54%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김해 경마장의 신설에 따른 레저세의 세수증가 요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42조 4,257억원이 징수되어 6.08%의 낮은 세수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방세탄력성은 0.82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세수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이 2006년부터 60%에서 20%로 대폭 인하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면 지방세 세수탄력성은 약 1.1 정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방세부담률은 2005년의 5.54%에서 5.47%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2007~2008년에는 지방세의 세수탄력성이 1.09~1.10 정도로 안정화되면서 지방세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세수총계에 대해서도 세수합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세목별 세수추계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한 세수전망치와 세수총계를 토대로 추정한 세수예측치 간에는, 2003~2005년에 1조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그 차이가 2천억원 미만으로 크게 축소되었다가 2008년에는 그 차이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견 두 방법에 의한 세수예측 차이는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여건을 고려한다면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세수추계는 분명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경마장 신설에 따라 레저세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2006년에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인하(60%→20%)로 인한 세수여건의 변화가 예상된다. 세목별 세수추계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세수효과를 반영하였으나 세수총계에 대한 세수추계시에는 이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세수추계 결과가 초기에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가 후기로 갈수록 작아진 것은 위와 같은 세수여건 변화에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세수추계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방법에 의한 세수예측치의 차이만을 놓고 보면 굳이 번거롭게 세목별 세수추계를 통해 각 예측치를 합산하여 세수를 추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목별 세수특성의 변화 또는 세법개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지방세 총세수에 대한 세수함수를 분석한 경우보다 세목별 세수함수를 분석하여 세수를 합산하는 방법이 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수추계의 시급성이나 개략적인 세수추이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비록 세법개정효과나 세목별 세수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세수총계 세수함수 분석결과를 이용한 세수예측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6. 향후 보완과제

지방세의 경우 하나의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특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개체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등기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천에 따라 동기가 다르므로 과세대상의 종류와 성질로 세분화하여 세수추계를 하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의 경우 세수는 기본적으로 조세제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집행단계에서의 지가평가나 과표조정 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세제도의 변화에만 국한하여 세수추계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세 세목별 세수총계에 대한 세수추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나름대로 용도가 다르지만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추계에는 이르지 못한다.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포괄할 수는 없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자치단체별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으로의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세수추계의 연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 차

I. 서 론

II.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

1. 연구의 목적
2.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III. 주요 세목별 세수추이와 특성

1. 지방세의 구성
 2. 지방세 총계
 3. 등록세
 4. 취득세
 5. 지방교육세
 6. 주민세
 7. 담배소비세
 8. 자동차세
 9. 종합토지세
 10. 레저세
 11. 주행세
 12. 도시계획세
 13. 재산세
 14. 사업소세
 15. 공동시설세
 16. 과년도수입
 17. 지역개발세, 면허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

IV. 2004~2008년의 세수전망

1. 세수추계시 유의사항
2. 세수전망

V. 요약 및 향후 보완과제

1. 세수추계 분석방법에 대한 요약
2. 세수추계 결과
3. 향후 보완과제

참고문헌

- 부록 I. 지방세 세목별 세율 변천추이
 - 부록 II.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이
 - 부록 III. CCR에 의한 지방세 세수추계
 - 부록 IV. SUR 모형에 의한 세수함수 추정결과
 - 부록 V. 석유류 관련 소비세율의 변천
-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

- ◆ 김진수 · 박형수 · 안종석
- ◆ 2003. 12.
- ◆ 174p/7,000원

1. 주요 내용 요약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인근에 있는 경쟁국들의 낮은 세율정책 등이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 국제자본 유치에 위한 주변 국가와의 경쟁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 그 자체가 가져오는 단기적인 설비투자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가 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유효세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한편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법인세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주요국의 정책동향

최근 G-7국가들, OECD 회원국, 아시아 주요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율 30%를 하한으로 세율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5% 수준 또는 그 이하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국세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인 주민세를 합하면 총세율은 27.5%가 되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법정 법인세율이 낮으나 국제 자본시장에서 경쟁상대가 되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아직도 높은 편이다. 특히 감가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함께 고려한 유효세율의 주변국과의 격차는 명목세율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 유효세부담의 국제비교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와 주변의 경쟁국들에 대한 투자를 각각 1단위씩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납부하는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세부담이 얼마나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계 유효세율은 감가상각 속도에 따라 24.9~30.6%인 데 비해 중국은 10.6~17.5%, 싱가포르는 5.3~10.4%, 말레이시아는 6.9~18.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홍콩의 경우 한계 유효세부담이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명목세율의 차이와 함께 감가상각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주변국들보다 높으며, 그 세부담의 격차는 명목세율 비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크다.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가 유효 법인세부담에 주는 영향을 보면 현행 27%에서 2%포인트씩 법정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한계 유효세율도 1.9~2.2%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낮추려면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은

20% 수준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하며,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목표라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3) 법인세부담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

외국의 문헌조사 결과를 보면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모두 법인세부담의 경감이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분석 기법이나 분석에 이용된 모형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다르다. 대표적인 것으로 OECD 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명목 GDP의 1%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법인세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이고 그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경상이전지출을 축소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0.03~0.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동일한 방법의 법인세부담 경감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연 0.02~0.0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17개 OECD 회원국들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투자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세율과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의 한계 유효세율은 설비투자액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더욱 뚜렷하였으며, 국내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재원을 내부유보 등 자기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율 변동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4)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을 2005년부터 2%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세수입이 매년 1.8~2.5조원 정도 감소하여 4년 합계 약 8.5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수입 감소는 통합재정수지를 연간 1.4~2.2조원 악화시켜 4년간 총 7.2조원의 재정압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는 시기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미루어져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조원 정도, 2007년에는 2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명목 GDP의 0.2~0.4%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2008년까지 기준선 전망보다 약 7.2조원 증가하여 명목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의 비율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시사점

기업의 법인세부담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경쟁대상이 되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계 유효세부담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명목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감가상각제도 등 다른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려 한다면 명목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하여 2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의 개편은 재정정책의 변화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를 보충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시기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세 이외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기대 수익률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존 투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목 차

- I. 서 론
 - II.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 1.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쟁
 - 2.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 III.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 현황
 - 1. 현행 법인세율 체계
 -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과정
 - 3. 법인세 세수 현황
 - 4. 조세부담률
 - IV.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
 - 1.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
 - 2.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
 - 3. 시사점
 - V. 주변 경쟁국과의 유효법인세 부담 비교
 - 1. 한계유효세율 분석
 - 2. 평균유효세부담 분석
 - VI. 법인세 부담이 기업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1. 외국의 연구결과
 - 2. 우리나라에 대한 실증분석
 - 3. 시사점
 - VII.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2. 재정에 미치는 영향
-

Ⅷ.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국제조세 회피의 형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 안종석·최준욱
- ◆ 2003. 12.
- ◆ 144p/6,000원

1. 주요 내용 요약

국제조세 회피 및 탈세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아 왔지만 특히 최근 들어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국제거래가 자유롭게 되면서 세무당국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조세 회피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규명하고, 각 유형별 조세회피 및 탈세(이하 '조세회피')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1) 조세회피 유형별 특징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는 과세이연(tax deferral)이라는 국제조세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의 이름으로 국제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세피난처에 축적함으로써 투자자 거주지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서류상의 회사로서 단순한 통과회사(conduit company) 또는 기장센터(book-keeping

center)의 역할만 하므로 명목상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및 탈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당국의 노력도 단순히 회피된 세금의 추정 및 벌과금 징수 외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는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회피가 용이하게 되면 결국 국제거래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국내거래에 비해 국제거래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그 국제거래가 자본거래라면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국내투자보다 국외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조세조약 남용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와 결합되면 국제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지 과세와 거주지 과세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조세조약 남용의 경우 대체로 조세피난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갖춘 국가나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 통과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이 treaty shopping을 위한 통과회사의 소재지로 많이 활용된다.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남용은 주로 국제거래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전가격 조작은 국내에서 발생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조세피난처 등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내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전가격 조작 자체가 국내 경제활동을 해외로 이전토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조세회피 및 대응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내투자를 감소시키고 국외투자를 증가

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그 외에도 조세회피는 그 자체로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때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조세회피가 줄어들고 동시에 국외투자를 축소시키고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명목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회피 동기의 축소도 조세회피 감소와 국내투자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의 인상과 같이 국내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그대로 둔 채 국외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만 인하시켜 국제조세 회피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정책은 국내투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세회피가 없다면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공공재로부터 주민이 느끼는 한계효용과 공공재 공급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책결정에 대한 다른 제약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세율을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시키는 동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명목세율 인하로 인한 조세회피 감소 및 국내투자 증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의 인하로 인한 국내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의 인하로 인한 조세회피 동기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자본수출에 대해 중립적인 조세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최적의 공공재 공급규모는 조세회피가 없는 경우보다 작으며, 최적세율 역시 조세회피가 없는 경우보다 낮다.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지만 조세회피 동기를 완전히 근절할 정도로 강화하는 것은 최적정책이 아니다. 탈세에 대한 범칙금은 다른 여건이 허용하는 한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treaty shopping을 통해 회피할 때 그 효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국내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짐으로써 국내투자를 증가시킨다. 둘째, 국내 세부담을 회피하여 세입을 감소시킨다. 소득의 원천지가 소규모 자본수입국인 경우 조세회피 비용은 모두 자본수입국에 귀착된다.

이 경우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세율을 인하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조세회피의 동기 및 조세회피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이 중 국내세율 인하는 국내투자를 증대시키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한편 세무조사 강화는 국내투자를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펴면 외국인 자본의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의 국내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세수입 감소로 인하여 공공재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국민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조세로 인한 비효율성과 조세회피의 효과, 공공재 공급의 효용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되 조세회피가 없는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있는 경우에 더 낮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시사점

이상을 종합하면 국제청의 국제조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국인 또는 국내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국외소득에 대한 국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수입국 쪽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조세 회피 및 탈세 근절’이라는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세율정책과 관련해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세율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 조세회피 비용, 세무조사 비용, 다른 세원의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존재하는 경우 이동성이 큰 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세회피가 없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경우 세부담이 낮은 데다

세수입의 일부는 세무조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 공공재 공급 규모는 더욱 작아진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세회피 동기를 억제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이동성이 큰 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의 대상이 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세부담만을 완화하는 조치는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 차

I. 서 론

II. 국제조세 회피 및 탈세의 유형과 특징

1.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
2.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및 탈세
3.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및 탈세
4. 요약 및 시사점

III. 국제조세 회피 및 탈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자본수출국

1. 문헌 조사 및 본 연구의 특징
2. 기본모형
3. 국제조세 회피의 경제적 효과 분석
4. 최적 조세정책
5. 요약

IV. 국제조세 회피 및 탈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자본수입국

1. 기본모형
2. 국제조세 회피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최적 조세정책

4. 요약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권오성·강만옥
- ◆ 2003. 12.
- ◆ 226p/9,000원

과거 세계 각국이 환경을 무시한 양적 팽창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자연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문제는 21세기 범지구적으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1990년대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OECD 주요 선진국 등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가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오염저감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것은 환경세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 중에서도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본 보고서는 환경과 산업 및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과 동시에 산업 및 무역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분석부분에서는 환경세가 경제성장 및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오염유발산업의 사례로 Ak 모형을 사용하고, 기술진보를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산업의 사례로 기술진보 모형을 사용하였다. 환경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Ak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기술진보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k 모형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환경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진보 모형에서 환경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기술진보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물적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저감기술이나 청정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진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윈윈(win-win)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

환경세가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Ak 모형과 기술진보 모형에서 모두 환경세가 단기와 장기에 걸쳐 자본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을 감안하지 않을 때 자본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을 감안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과다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태모형에서는 최적 환경세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특정 구간 내에서 임의의 값을 갖는 반면, 동태모형에서는 임의의 값이 아닌 특정 값을 갖는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태모형과 달리, 동태모형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므로 자본축적을 위한 최적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본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비용과 자본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분리하여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문을 감안한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사회최적성을 실현하는 환경세의 정확한 값은 정태분석이 아니라 동태분석에 의

해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최적을 실현하는 최적 환경세에 있어서 Ak 모형에서는 균제상태의 환경세가 일정한 값을 갖는 반면, 기술진보 모형에서 도출한 최적 환경세의 세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이 일반 소비재에 비해 환경의 질에 대한 상대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배출량 단위당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은 상호 대립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소비자에게 환경세수입을 환급해준다고 가정하면 자본의 생산성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상해줌으로써 환경세를 부과하기 이전 소비자의 수입과 같게 된다. 이는 환경세가 가격신호(price signal)를 통해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세가 역진적인 경우 환경세수입을 사후에 소비자에게 환급해줌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형평성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오염집약도가 낮은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반대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환경세가 없는 경우에는 오염집약도가 높은 재화의 생산이 무역부문의 가격경쟁력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집약산업인 경우와 같이 환경세가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에는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 면세, 환급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경쟁력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은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수단일 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환경세의 도입이 친환경적인 산업에 무역부문에서의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세가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론분석에 이어서 실증분석부분에서는 환경세 부과 및 기타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의 오염저감비용 변화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경쟁력과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오염저감비용 변화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PACE가 환경규제의 강도를 대변하고 R&D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대변하는 변수라고 가정할 때,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술혁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변수인 특허를 이용한 결과, 오염저감비용의 변화가 특허출원과 등록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환경규제가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쟁력에 양(陽)의 효과를 보인다는 Porter 가설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한국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에서 기업에게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설비투자를 유인하도록 적절한 규제수단을 사용하거나, 환경세 등의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향후 산업부문에 환경세를 포함하여 적절한 환경규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혁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오염저감비용이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로 인한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존재하지만, 총 교역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로 살펴본 오염저감비용의 효과는 산업별 비용구조, 수출입 탄성치 등과 상호 작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오염저감비용의 크기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일부 산업부문에 있어서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분석 시계열 내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세 또는 다른 형태의 환경규제가 무역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긴 시계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I. 서론

II. 국제적 논의의 추세

1. GATT/WTO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UN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3. OECD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논의

III. 국내외 선행연구 개관

1. 환경과 무역 연계에 관한 연구
2. 환경규제와 기업 및 국가경쟁력간의 연관관계 연구
3. 에너지·탄소세의 활용과 영향에 관한 분석
4. 에너지·경제·환경시스템의 모형화에 관한 연구
5. 환경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IV. 환경세가 산업경쟁력, 경제성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분석

1. 환경세가 산업경쟁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V. 오염저감비용의 변화가 산업경쟁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1. 오염저감비용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 오염저감비용이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부록 I. 이론모형에서의 사회최적, 최적 환경세,
시장균형 및 비용함수의 수식 도출
 - 부록 II. 수출입 탄성치 추정결과
 - 부록 III.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세계개편과 환경세 도입 동향
-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 -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

- ◆ 최준욱·전병목
- ◆ 2003. 12.
- ◆ 190p/8,000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재정정책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 소요 및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장기 전망을 하였다. 조세 및 재정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이 어떠한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들 지출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따라 세대간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세대간 회계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재정지출 장기전망에 대해서는 먼저 연령차별적 지출의 주요 항목에 대해 장기전망을 하였다. 연금지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건강보험 지출 전망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좀 더 명시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감안하여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감안하지 않은 교육지출 등이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재정지출 증가와 관련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가정을 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

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지출 증가 폭이 가장 작아지는 경우에도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현재보다 11%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지출의 비율이 크게 감축하지 않는다면,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약 40%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방정부 지출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지방정부 지출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출은 그보다 더 커진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여기서 전망된 것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지출이 본 연구에서 전망한 것처럼 낮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적은 노동인력으로도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식자산의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나 R&D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향후 고령화 대응 정책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평균수명이 현재 전망하는 것보다 더 연장되거나, 출산율이 기존에 전망된 것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에도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고령화는 큰 사회적 변화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이처럼 악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지 개별 정책의 타당성만을 검토하기보다는 각 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하여, 종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재정상황의 악화는 매우 심각하다. 재정지출이 이처럼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당연론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대책만으로는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재정지출이 이처럼 커진다는 것은 세입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므로, 부채를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출이 이처럼 증가한다면,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향후 고령화로 인해 제기되는 재정지출 증가 중 가장 큰 부분은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인데, 이를 연금기여금과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요율이 대폭 인상된다. 소득세를 제외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기여금의 부담만도 근로소득의 30~4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의 부담이 높아져 고용 및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입측면에서 과세 베이스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은 세대간 재분배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에서 가장 이상론적인 접근이 적은 근로인력으로도 더 많은 고령인구를 부양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측면에서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성장률이 상승하면 재정수지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세대별 세부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성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 특히 세대간 분배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현재 수급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의 조달이 필요한데, 이 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 세대별 세부담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추가적인 재원을 소비세나 소득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미래세대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추가적인 재원을 소비세나 소득세에 의존하

는 경우 현재의 연금제도가 가지는 인위적인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일정 부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연금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을 소비세로 하는 것이 연금기여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작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재원을 다른 세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검토된 것은 아니다. 연금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단지 세대간 재분배 측면만을 감안하여 연금 재원조달 방안을 변경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만으로 어떤 명확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가 가지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교정 또는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검토결과는 추가적인 재원을 소비세로 조달하는 것이 비록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다소는 경감시켜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역시 연금제도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낮게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완전적립형이 아닌 연금은 상당한 정도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은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일부 조정하는 효과만을 가질 뿐이며, 연금제도가 초래하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연금제도에서 수급구조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지출의 향후 증가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적당한 수준의 지출 증가율과 할인율을 가정하고, 잔여생애기간 동안의 혜택과 세부담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30대 이상에서는 잔여생애기간 동안의 순혜택이 순세부담을 초과하며, 평생 동안의 세부담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20대에서는 잔여생애기간 동안의 세부담과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평생 세부담을 보면 혜택이 세부담을 초과한다. 현재의 10대 이하의 세대에서는 평생 동안의 세부담이 혜택을 초과하며, 그러한 정도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커진다. 현재의 0세 및 가까운 미래 세대에서는 평생 동안의 세부담이 평생 동안의 혜택을 약 30%

정도 초과한다.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방안에 따라 세대간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 바, 소득세를 통해 이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효과가 크지 않지만, 소비세를 통해 이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연령별 지출구조 및 지출 증가 추이의 변화, 특히 고령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단지 세대간 재분배 측면만을 검토한 것이며, 다른 측면은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현행의 보험료가 아닌 일반 세원을 기반으로 할 때, 보험이라는 성격이 약해지면서 나타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로 인한 영향은 단지 연령별 구성원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태 및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많은 강한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세대간 재분배 측면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는데, 향후에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세대간 재분배 및 세대 내 재분배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고령화의 전망과 영향

1. 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2. 고령화의 영향
3. 고령화의 재정 영향

III. 고령화의 재정 영향 전망

1.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
2. 전망을 위한 거시경제 가정
3. 건강보험
4. 공적연금
5. 기타 연령차별적 지출 및 재정지출 합계
6. 재정수지 전망
7. 요약 및 추가적인 논의

IV.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1. 연구개요
2. 횡단면 자료에서의 세대별 세부담 분포
3. 공적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4. 건강보험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5. 요약 및 추가적인 논의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자립률을 통해 본 고령화의 영향

<부록 2> 세대간 자원흐름에 미치는 영향

- <부록 3> 인구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 <부록 4> 인구구조 변화의 건강보험지출 영향
 - <부록 5> 세대간 재분배 효과 예시
 - <부록 6> 공적연금의 세대별 세부담: 민감도 분석
 - <부록 7> 공적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추가 검토
 - <부록 8> 건강보험의 세대별 세부담: 민감도 분석
-



지방자치단체 純재정편의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 ◆ 김정훈
- ◆ 2003. 12.
- ◆ 124p/6,000원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은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과제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자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성장이론이나 신경제지리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 효율을 잃지 않으면서 경제 집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가 경쟁력에 도움을 주면서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적 처방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가 급속하게 개방화되면서 지역간 경쟁이 국내가 아닌 국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억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하여 몇 가지 원론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혼잡,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시장 기능의 실패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정부 정책으로 내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처의 정책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되, 시장 개입적 성격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낭비나 정책의 비일관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원론적인 처방을 제외하고는 경제 집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으로 인하여 지역간 인구 이동이 발생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은 시장 기능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가 지역간 순재정편익의 격차를 발생시킬 때에는 이를 제거할 경우, 높은 순재정편익을 누리고 있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억제되고, 이는 결국 지역 생산성이 아닌 재정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배치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순재정편익은 주민이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과 주민이 지불하는 지방세 부담의 격차를 이른다. 따라서 서울의 공공부문이 주는 혜택이 지방세 부담에 비하여 매우 크다면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 많은 주민들이 서울로의 이주를 희망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 대도시의 1인당 세출 부담이 소도시의 1인당 세출 부담보다 같거나 오히려 높은 반면, 우리나라 대도시의 1인당 세출은 소도시의 1인당 세출보다 절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교육·경찰·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사적 공공재에 대한 재원조달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민이 증가하면 세출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지방세 수입은 비례적으로 늘어나서 대도시의 전체적 세출 여건이 좋아지는 특징을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가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도시의 1인당 세출은 인구가 증가할 때 크게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지방세 수입은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인구

비례 이상으로 증가하여 서울시는 막대한 규모의 순재정편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와 기타 지역간 순재정편익의 격차가 서울시에 대한 끊임없는 인구 유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인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정책과 재정 인센티브 등을 동원하여 수도권 밖으로 생산시설과 인구가 옮겨가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간 순재정편익의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한 시장 개입적 성격으로 인하여 비록 성공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면 교육·경찰·복지프로그램과 같은 대표적인 지방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고, 또한 재정적 요인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막기 때문에 지역간 자원 배치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그 지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주택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어차피 멈출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지방세 부담에 비하여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비용의 상승이나 환경 문제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할 정도의 요인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정체된 상황을 맞이한 이유는 이 지역의 공공부문이 창출하는 순재정편익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취업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의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보면, 현재 서울시의 교육서비스와 경찰서비스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3조원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세출분권을 통하여 지방공공재의 인구탄력성이 현재보다 상승한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가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높은 지방세제 구조 역시 조정한다면, 수도권 공공부문이 창출하는 순재정편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고 따라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크게 완화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실증분석을 위한 지방재정 자료의 특성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지방재정 자료의 특성

III. 혼잡계수의 추정 및 외국의 사례

1. 혼잡계수의 추정
2. 외국의 사례

IV.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

1. 이론적 모형
2. 시뮬레이션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미국판례 중심으로 -

- ◆ 노영훈
- ◆ 2003. 12.
- ◆ 150p/7,000원

1. 연구배경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국에 자회사 등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국적기업군 내의 관련기업간 거래에 설정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들 관련기업간에 국제적인 이익이나 소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국제조세법의 원칙은 『정상(독립기업간) 거래대가 원칙』(arm's length standard principle)이다. 즉, 이전가격세제란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과세를 위해 거래에 사용된 재화나 자산(goods and asset used), 부담된 위험(risk assumed), 수행된 기능(function) 등 상황을 분석하여 해당 거래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적정한 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사업부서간 국경거래가 폭증하는 추세하에서 다국적기업 내에서의 이전가격 설정은 해당 기업과 과세당국간 조세문제를 떠나서 기업경영 차원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전가격세제는 이중과

세를 배제하고 협력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설정된 기준만으로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세조화(tax harmonization)가 필요한 영역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사실상 이전가격 조세제도의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밑바탕이 된 미국의 이전가격세제를 해당 법규정과 핵심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전세계 이전가격세제의 또다른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OECD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도 다자간 협약의 형태를 지닌 이전가격지침서(Transfer Pricing Guidelines)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발전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OECD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이전가격에 대한 접근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라는 새로운 방법론까지도 창안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제II장에서는 미국의 이전가격세제를 규정한 연방소득세법 및 재무부 규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에 현재의 이전가격세제를 구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14개의 대표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판결들을 소개한다. 이들 판결을 통해 형성된 판례는 그 후 연방정부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정하거나 후속 판결들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핵심 판례들이다.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가 『국제조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중의 일부 항목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제적인 이전가격세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판례법체계(case law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 연방소득세법 및 관련 재무부 규정들에 대한 법조문의 해석만으로는 이전가격세제의 형성 및 발전동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핵심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판결들마다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간의 구체적인 차이가 적정한 이전가격 산정을 위해 채택되

는 방법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정책시사점

미국 내 이전가격세제의 동향 및 추세를 전술한 14개의 핵심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연방소득세법, 재무부 규정과 같은 법조문뿐만 아니라 제482조의 발동에 따른 과세조정에 대한 납세자의 미국 내 법원에의 조세불복 판결에 의해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 법원 판결 후 재무부 규정이 개정되는 등의 환류과정(feedback process)을 통해 법제화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2) 특히 유형재화에 대한 것보다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해 보다 많은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상품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재화와 달리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어려움 및 재량성을 어느 정도 납세자 측에서 활용하려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이전거래에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이 이를 통상소득이 아닌 장기자본소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취급하여 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으로의 기술이전시 이전가격을 낮추기보다는 높이려는 유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3) 이전가격 판결에서 경제학자들의 전문가적 증언자(expert testimony)로서의 역할 및 경제적 분석수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Sundstrand社 판결(1991)에서 Dr. Sanford J. Grossman의 싱가포르 SunPac 공장 대신 가상의 Denver 공장을 지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조달비용 추정 및 Dr. Haner의 BERI(Business Environment Risk Informatin)를 이용한 기업입지 관련 생산성 비교, ② Du Pont社 판결(1979)에서 Prof. Irving H. Plotkin의 1,100개 기업대상 SIC 산업평균 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 산정, ③ Bausch & Lomb社 판결(1989)에서 Prof. Plotkin의 무형자산 이전에 대한 로열티율의

해당 산업 내에서의 정상가격성에 관한 견해, Prof. David Bradford의 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걱정 로열티율 산정, 그리고 Dr. William J. Baumol의 거래가격 및 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정상가격성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4) 이전가격세제 관련 판결에서 발견되는 법원의 태도는 정상가격 산정이란 정교한 과학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및 방법론들 중 최선의 선택을 하는 즉, 일종의 타협적 해법(compromised solution)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정상가격에 대한 추정치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Your guess is not better than mine' approach).

5) '정상가격'의 개념은 결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경쟁균형가격(perfect competitive equilibrium price)'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대상물, 그리고 거래상황의 차이가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간주되는 가상적인 가격(hypothetical price)을 합리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전가격세제는 납세자가 판단하는 정상가격과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정상가격간의 괴리를 축소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예, 미국의 APA나 우리나라의 사전승인제도), 신고납부주의 세목인 법인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규정이 일종의 근거규범으로 준용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현실 상황에서 3개의 가장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그리고 원가가산법이 이전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익분할법 및 비교이익법 등 이익에 기초한 방법들이 미국 및 OECD에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명시된 3개의 우선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익분할법과 거래순이익률법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국제거래활동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 서비스, 특히 금융거래,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커질수록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익에 기초한 방법들에 대한 해외 동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익에 기초한 방법들이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서 적용된다고 대부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한 기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업분류기준(SIC)에 의한 업종 내의 평균적 이익률 및 수익률이 정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편화될 경우 납세자 측에서는 일종의 추계과세(presumptive taxation)에 따른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납세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전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추후 세무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및 과세조정을 염두에 두고 ‘정상가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각국의 과세당국들도 이러한 납세협력적 기업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활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전가격세제가 잘 발달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진출국가의 이전가격세제 및 세정에 대해서도 납세자 및 과세당국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단적으로 세계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생산경쟁력 또는 산업기반(industrial competitiveness)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회적 고비용과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정책당국이 대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나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같은 접근방법을 추구할 경우 동 지역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는 자연적으로 이전가격

세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미국의 이전가격세제 및 관련 판례 연구

1. 미국의 이전가격세제 개요
2. 이전가격세제 관련 기본 판례

I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국내의 이전가격 관련 판례

정책보고서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 남북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Ⅲ) -

- ◆ 한상국
- ◆ 2003. 12.
- ◆ 264p/11,000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행된 조세정책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서 북한의 조세제도 도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변화방향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은 크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이라기보다는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나온 유연한 현실 수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이 다양한 새로운 개혁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북한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세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록 개혁·개방정책의 착수 시점의 중국과 현재의 북한은 상이한 점이 다수 있지만, 유사한 점도 적지 않게 있다. 최근 북한의 정책 당국이 가격 및 임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상대가격 구조를 조정할 점, 지방의 자율적 관리 권한을 확대할 점, 공장 및 기업소의 자율적 관리 권한을 확대할 점,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점 등이 대표적인 공통

점이다. 비록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변화된 최근의 경제정책이 개혁의 범위 및 의미에 있어서는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경험은 북한에 유용한 점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세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중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개혁 및 재정·조세제도 개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은 경제체제 및 재정제도의 전반적인 정비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세수는 재정의 주류를 이루고, 이러한 재정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경제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은 재정개혁을 전제로 하므로, 재정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개혁의 핵심은 재정의 분권화 추진이다. 지방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분권화를 통해서 지방정부 및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을 마련토록 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력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도 이러한 경로를 밟았다. 북한이 재정 분권화의 바탕위에서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조세설계(tax design)적 관점 및 조세개혁(tax reform)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개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든지 조세설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든지 공평한 세제, 효율적인(경제적 효율성, 세제운용의 효율성, 유연성, 공공선택과 관련한 효율성) 세제, 중립적인 세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는 세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행된 조세정책에서 도출한 북한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동 법을 통해서 개개의 세목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세체계를 구성하되, 현실적인 조세행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둘째, 세제의 단순화 및 낮은 세율화를 지향함이 바람직하다. 세제의 단순화를 통해서 조세의 투명성 및 조세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

며, 각 사업주체들의 재투자 기회를 증대하고, 보다 큰 수익률 향상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국유기업 이윤배당을 조세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정분권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체제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하겠다. 국유기업 이윤배당의 조세화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분배관계를 조세제도라는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화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주권의 확대에 따른 기업 활력의 증대 및 조세에 의한 강제성의 확보로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은 개별이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세목에 비해서 조기 정착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기간세목으로 조기에 정착시켜서 세입의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제도 발전의 기초를 삼아야 할 것이다. 여러 분야의 경제개혁 추진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를 보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조기 정착을 통해서 이러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조세 폐지(1974년)로 인한 자주적인 납세의식의 결핍 및 미숙한 조세행정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초기단계에는 과세정보 포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세정보 포착이 용이한 재화와 일부 용역 그리고 과세정보의 포착이 어려운 서비스 업종을 분리해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제의 이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부가가치세제의 이원화는 세수확보 측면 및 징세행정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정책 목적에 따라 기업소득세제의 이원화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외자 및 기술 등의 유치에 더 큰 정책목적이라면 이원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세수의 확보 및 경기조절기능 등을 중시한다면 이원화는 불필요하다.

일곱째, 북한의 조세 폐지(1974년)로 인한 자주적인 납세의식의 결핍 및 과세인프라의 미비 등을 고려하면 분류소득세제도를 채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우대정책은 각종 세부담의 감면 허용 또는 저세율의 적용, 조세면제기간의 계승·발전, 투자공제의 허용, 조세제도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간주의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조세행정이 뒷받침되어야 조세제도가 현실에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조세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별도의 조세행정 전담조직의 설치를 통한 조세행정의 전문화 도모, 세무행정의 전산화, 수직적 관리 계통의 확립,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세법의 투명성·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 목 차

- I. 서론
 - II. 북한과 중국의 경제 변화 과정 및 단계별 특징
 - 1. 중국의 경제개혁 경과 및 단계별 특징
 - 2. 북한 경제의 변화 과정 및 단계별 특징
 - 3. 중국 개혁·개방모델의 북한에의 시사점
 - III.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조세개혁
 - 1. 개혁·개방과 재정정책
 - 2. 개혁·개방 이전의 세제 및 세제개혁
 - 3. 개혁·개방 이후의 세제 및 세제개혁
 - IV.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세수구성 및 추이의 변화
 - 1. 개혁·개방 이전의 조세수입 추이
 - 2. 개혁·개방 이후의 조세수입 추이
 - 3.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재정수입의 대비 분석
 - V.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조세행정
 - 1. 개혁·개방 이전의 조세행정
 - 2. 개혁·개방 이후의 조세행정
 - 3. 중국 세법의 법률체계
-

VI. 북한에의 시사점

1. 기본 방향과 한계
2.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세제개혁 및 조세정책이 주는 시사점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부록 1> 中國의 舊稅制 概要
 - <부록 2> 中國의 現行 租稅制度의 概要
 - <부록 3>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조세
 - <부록 4> 중국의 조세우대제도
 - <부록 5> 중국의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의 주요 내용
-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 ◆ 흥범교
- ◆ 2003. 12.
- ◆ 158p/7,000원

1. 주요 내용

가. 배경

전자상거래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 및 행정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던 반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된 커다란 원칙들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실제로 과세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비세 행정에 있어 B2C거래에 대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적인 B2C거래에 대한 소비세 과세는 전자상거래 과세에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공급자에 의하여 징수·납부되는 데 문제가 없으며, 국제적인 B2B거래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신고납부/대리납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 반면 국제적인 B2C거래는 거래 자체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2003년 7월부터 EU에서 역외로부터 공급되는 국제적인 B2C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판매세의 간소화 프로젝트(Streamlined Sales Tax Project)를 통하여 주간 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소비세의 징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B2C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나. OECD의 국제논의 동향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의 정비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직접세), 소비세, 조세행정 3분야에 걸쳐 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관세는 별도로 WTO에서의 논의를 거쳐 현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조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등장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개념정리에 대한 논의와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의 종류 구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소비세 분야에서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행정분야에서는 IT신기술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1997년의 핀란드 투르크 회의를 필두로 19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기본원칙(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이 채택되었고, 2001년 초에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 성격의 OECD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2001년 이후의 논의에 있어 변화는 전자상거래를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점이다. 즉 인터넷이 전자상거래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에게도 필수적인 수단이 됨에 따라 이제는 거의 모든 영업에서 전자적인 수단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e-business라는 개념이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보다 적절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각하에 전자상거래보다는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작업의 초점

을 맞추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OECD 논의의 최근 결과물로는 “소비세 지침 시리즈(Consumption Tax Guidance Series)”와 “조세 행정 지침 시리즈(Tax Administration Guidance Series)”를 들 수 있다. 동 시리즈는 소비세 행정에 있어 각국의 과세당국이 따라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i) 소비자의 소비지 및 납세의무신분 확인 ii) 간이등록제도에 대한 지침 iii) B2B거래의 소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i) 사업체 식별 지침 ii) 거래정보 지침 iii) 기록보관 지침 iv) 전자지불시스템 기록가능성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 EU 및 미국의 소비세 개편 동향

EU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3년간의 예정으로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와 라디오·TV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동 조치는 그동안 역외국에서 EU 내의 개인소비자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EU 내의 공급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기술적으로 징수 시스템이 뒷받침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동 조치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공급지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EU 역내 공급자는 다른 EU 회원국 역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역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더 이상 부가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음.

ii) EU 기업고객으로서 역외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징수.

iii) 역외 공급자로서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모든 EU 국가에 등록을 하고, 개인 및 비영리단체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iv) 역외 공급자로서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적어도 1개의 EU 국가에 등록을 하여(간이등록제도) 개인 및 비영리단체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부가가치세율은 최종 소비지 국가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수는 분기별로 해당 국가에 배분된다.

한편 미국에서도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해당 주들의 세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전자상거래 및 우편주문 등 주간의 거래에 있어 판매세체계가 다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업활동의 위축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간의 거래에 있어 공급자가 우편주문이나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판매가 이루어지는 주에 물리적인 근거지(nexus)가 없는 한 해당 주의 판매세에 대한 징수의무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주내의 공급자와 주외의 공급자간에 차별을 발생시키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세법의 단순화, 세정의 효율화, 그리고 징세비용의 완화를 통하여 전통적인 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 모두 해당하는 세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02년 11월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정부간에 협정이 채택되어 현재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원격판매자들에게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벌금이나 이자 납부 등의 벌칙을 가하지 않도록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대규모의 원격판매자들은 2003년 9월부터 자발적으로 원격판매에 있어 판매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EU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B2C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실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한 두 지역의 제도 정비가 오타와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정책 시사점

가. OECD의 조세행정 지침에 따른 정비

OECD의 소비세 조세행정 지침이 우리 과세당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선 납세의무신분과 관할지역의 결정에는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OECD에서 제시한 방안이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무를 부여할 경우, 인증의 성격과 종류에 대해서 미리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납세순응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외국의 소비고객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과세관할권을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B2C거래와 같은 경우, 국내 소비자의 거주지(usual residence)에 따라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규정상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소비자의 관할권에 대한 자진신고가 다른 방법에 의한 확인과 다르게 나타날 경우,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신고와 부가적인 확인방법에 의한 관할권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법규를 제정하고 소비자에게 입증을 통한 소비지 소명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고객의 과세관할지역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사업적인 발전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외국의 발전 동향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접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의 전자상거래 공급자에게는 간이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세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서 형식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 공급자의 등록편의를 생각하여

최소한 영어등록은 필수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수요 및 행정비용을 감안한 추가적인 외국어 등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당국은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는 되도록 간단한 등록 신청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장 현황에 대한 부분은 간이등록의 경우 대부분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세당국은 등록 신청에 대한 접수 확인을 해주고, 등록자의 확인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외국공급자에 대한 등록자 확인번호는 물론 국내사업자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간이등록을 한 비거주자의 세무신고를 위하여 과세당국의 홈페이지에 전자 신고양식을 제공하고, 납부도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납부의 경우, 달러·유로·엔의 3가지 통화에 의한 납부 허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준 환율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미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를 위하여 간이등록의 신고요건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각국의 요건 통일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고 요건에 대한 외국어 안내 공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영문판 세법의 게시를 통한 안내보다 유형별 납세자에 따라 플로 차트(flow chart) 등을 이용한 보다 쉬운 안내를 통하여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전자적 기록보관의 법률적인 근거를 검토하고 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적인 뒷받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세청 고시를 통하여 이미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해외 공급자로부터의 기록도 전자적인 형태로 받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공급자로 하여금 국내와 동등하게 5년간의 세금계산서 보관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관련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국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하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면 모든 과세당국이 상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관련 기관과의 협조하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인터넷 등록기구(internet registrar)에 등록을 할 때, 자신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외공급자는 국내 판매를 위하여 반드시 국내 인터넷 등록기구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판매추진을 위하여 한글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국내용으로 새로이 등록을 한다면 개별 등록 사업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이러한 기관과의 협조하에 사업자에 대한 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록보관요건에 있어 국제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전자기반 환경하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표준감사파일의 제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감사파일의 공통적인 요소는 국제적인 통일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감사파일설정에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최소한 반기록 시스템이 되도록 하고, 무기록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한도를 설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 B2C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정책 방향

국제 B2C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 유실규모는 2005년도에 약 6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제거래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국내외 공급자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B2C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차별적인 과세를 배제하는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틀(Taxation Framework)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과세되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서비스로 분류되는 온라인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다. B2C 과세를 위해서는 i) 부가가치세

법 제34조의 대리납부의무를 명시적으로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든가 ii) 해외로부터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용역의 공급을 새롭게 규정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외국 사업자의 등록을 위한 간이등록제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iii) 2006~2007년까지 징수에 대한 해외 기술발전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리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하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세 번째 방법은 현재 EU가 실시하고 있는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입법 노력 및 조세행정적인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EU의 실시 결과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징수 방안이 상당히 빨리 진척되어, 2006년도에 동 제도를 대체한다면 빈번한 제도의 변경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누적 세수 유실액이 전자상거래의 증가 속도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방안에 따라 최소한 법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간이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의 전자상거래 공급자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신고·납부를 허용하고, 외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는 과세 최저한은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 공급자의 등록제도를 통한 B2C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외국 공급자에 대한 집행 구속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B2C거래에 대한 과세를 가장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장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으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동북아 경제 블록 형성에 따른 우리 경제의 비중 증가, 기술발전에 따른 제재 가능성, 국제적인 과세당국간의 협조, 그리고 EU의 실례를 감안할 때 B2C 과세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 목 차

I. 서론

II. OECD의 국제논의 동향

1. 2001년 OECD 보고
2. 최근의 논의

III. EU 및 미국의 소비세 개편 동향

1. 유럽의 서비스 과세
2. EU의 B2C 부가가치세 부과
3. 미국의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

IV. OECD의 지침과 우리의 제도 정비 방안

1. 소비세 지침 시리즈
2. 조세행정 지침 시리즈
3. B2C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정책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EU 부가가치세 부과 실시와 관련된 지침

<부록 2> 과세정보 교환에 대한 EU의 규정

<부록 3>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세 및

조세행정 지침 원문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 ◆ 정재호 · 성명재 · 이명현
- ◆ 2003. 12.
- ◆ 260p/11,000원

본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지되어온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 및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크게 두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방법은 주요국의 관세율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이고, 두 번째 분석방법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것으로 경제전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적정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였다.

국제비교를 통해 품목별 관세율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식물성 생산품(HS 02)의 관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식물성 생산품(HS 02)의 가중평균 세율은 163.1%로 단순평균 세율 91.1%보다도 높게 나타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중국의 관세율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고 EU는 20.1%였다. 단순히 다른 국가와의 세율 비교로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낮추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HS 01)과 조제식료품 등(HS 04)의 가중평균 세율이 각각 23.6%와 13.8%로 EU, 중국과 유사한 수준임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 비중가세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물론 현재 WTO에서는 관세수준이 불분명한 비중가세를 모두 증가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고, 이는 DDA 협상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과 EU가 비중가세를 약 40%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이를 모두 증가세로 전환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익에 따라 일부 농산물에 비중가세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 국가별로 전체적인 관세율 분포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를 보면 미국·EU·일본 등은 WTO 양허세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중심관세율이라고 명명할 관세율은 없다. 반면, 칠레는 단일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볼리비아는 10%, 페루는 12%를 중심세율로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무세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지만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뉴질랜드 7%, 필리핀 3%, 인도네시아 5%, 멕시코 13%, 콜롬비아 5%, 코스타리카 14%, 베네주엘라 5% 등에 가장 많은 세율이 분포되어 있어 중심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관세율 제도와 차등세율 제도에 대한 장단점은 각각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일반균형모형분석에서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심세율제도에 대한 장점에 더욱 비중을 두고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은 이러한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으로 존재하는 양허세율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미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양허세율을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로 받아들일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해 두 대안들이 DDA 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과 인하시기 등이 주요 고려 대상임을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대담으로 일반균형계산모형을 통해 중심관세율 체계 유지를 지지하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또한 DDA 협상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였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차등관세율로 전환하는 것에 비해 더 나은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심관세율과 차등관세율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하나의 척도로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¹⁾.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비교를 통한 주요 특징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원자재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0.5%로 거의 무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는 많은 원자재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원자재 세번 기준으로 미국은 86.9%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고, EU 84.1%, 일본 89.6%, 호주 89.5%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체 원자재 수입액의 99.1%가 무세로 수입되며, 뉴질랜드도 99.8%가 무세로 수입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원유를 제외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본고에서 분석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관세율 정책의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구조에도 다수의 정책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가공단계별 분석에서 중간재의 평균 관세율이 최종재보다 높은 국가들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EU 등이 있었다. 그 밖의 국가들은 관세누진 체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도 수입 가중 평균 관세율을 보면, 그 차이가 역전되거나 혹은 무시할 만큼 적은 반면 우리나라는 그 폭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중간 수입재에 대해 그만큼 관세가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간재의 관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에 대해 관세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즉, 중간재의 관세율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원자재와 유사한 수준 혹은 약

1) 구체적인 중심관세율 수준은 DDA 협상의 구체적인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간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중간재와 둘째, 최종재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중간재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우선은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면 중간재 세율을 원자재에 가깝게 낮추면, 이로 인해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하여 국내대체산업이 피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결국 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큰 자원으로서의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자원 재분배를 유도하는 것이 관세율 정책이 가지는 큰 역할 중의 하나이다. 한편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재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세율 구조를 통해 자원 재배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 중심관세율 체계의 유지와도 연관이 된다. 즉, 중간재 세율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원자재와 유사하게 무세에 가깝게 유지하거나 혹은 최종재와 유사하게 유지함으로써 무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율은 중심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중심관세율 체계를 염두에 두면서 자원배분의 최적을 추구하는 정책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재의 최종재와 중간재 사이의 차이가 우루과이라운드의 ITA 협정과 같은 분야별 무관세의 결과로 해석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의 분야별 무관세 협상도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몇몇 분야에 대해 무세화가 이루어진다면 분야별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체계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ITA 협정에 의해 실효보호율 측면에서 역관세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산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DDA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산업별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 비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산업구분에 따라 주요 국가의 관세율 구조를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일반균형계산모형에서 기준이 된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은 조립가공 업종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전체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수출상품 비중에서도 조립가공 업종은 48.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30.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입의존도도 32.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품이 수입유발적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도 조립가공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출 신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수입도 또한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수출에 따른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의 생산에 투입되는 소재 및 부품 등 중간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투자가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 관세율 정책에서는 이들 분야의 중간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앞서 가공단계별 분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간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분류는 세부적인 산업별 연구에 의해 구분되어질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해서 중간재의 관세율을 최종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역관세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일본의 조립가공 업종의 수출상품 비중은 2000년 기준 63.5%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의 수입의존도는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조립가공 업종도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정책을 통해 국산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품에 대해서는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상품 비중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조립가공 업종에 대해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세에 가까운 매우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특징으로 만약 한·일간에 FTA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이들 업종의 일본 관세율은 이미 무관세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들 업종의 수출 신장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

진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그 특징을 살려 국제비교에서는 분석할 수 없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중심관세율 체계 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또한 DDA 협상 이후에도 중심관세율 체계 유지가 더 나은 대안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당히 큰 관세율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행 중심관세율 체계를 산업적 고려에 의하여 차등화할 경우, 이를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로비와 갈등이 당연히 예견되며 그와 같은 갈등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과정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율성 증대가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미미하다면 현행의 중심관세율 체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관세율 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방법은 내국세의 과세기반 충실화 정도에 맞추어서 관세의 세수를 실질적으로 인하해가는 것임을 도출하였다. 관세율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적 후생의 증대는 주로 관세율 수준의 전반적 인하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으며, 개별 품목별 미조정을 통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전제한 두 가지 제약을 통합하면 관세세수를 실질 변수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약 아래 관세율의 차등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후생증가의 폭은 미미하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적세율체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산업의 무세화는 앞으로의 관세율 조정이나 DDA 협상과 관련하여 제한적이지만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실질세수 중립의 제약 아래 광산품, 섬유 및 가죽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제품에 대하여 무세화 또는 현행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이 추천할 만한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물론, 이러한 무세화 혹은 상당히 낮은 세율은 전체적인 세율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 최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 정책과정을 시간을 두고 최적세율에 접근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들

품목에 대한 세율인하를 전반적인 관세율 조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비교를 통한 분석에서도 광업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고려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자재로 주로 이용되는 특징에 따라 국제비교 분석에서는 원자재의 세율 인하를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한 기본세율 인하를 예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고 모험하고도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섬유 및 가죽제품도 국제적으로 고관세 분야이지만 우선 DDA 협상에서 무세화 분야로 지목되고 있으며, 중심관세율 체계의 예외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산업 및 수출 비중,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등의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DDA 협상을 계기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 수준을 점차 낮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균형계산모형을 통한 분석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율 정책의 효과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력성 모수의 추정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의 일반균형계산모형에서는 이 모수들을 국내의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하지 않고 외국의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각종 정책변화가 있을 때 이에 상응하여 각 상품 시장에서의 공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바로 이 탄력성 모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외국의 탄력성 모수를 사용할 경우 정책변화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재-내수재간 전환탄력성과 노동과 자본간 대체탄력성을 국내 경제자료에 입각하여 추정하였다.

◆ 목 차

I. 서 론

II. 관세율 체계의 국제비교

1.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및 품목별 비교
2.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비교
3.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비교

III. 일반균형모형을 응용한 적정관세율 체계의 검토

1. 예비적 고찰
2. 일반균형계산모형
3. 2000년도에 대한 최적관세율 분석
4. DDA 협상 이후의 최적관세율 체계
5. 소결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전환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추정

부록 II. 일반균형계산모형의 구조

부록 III. 국제비교 관련표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 ◆ 박형수 · 박기백
- ◆ 2003. 12.
- ◆ 192p/8,000원

정부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채무 추이를 보면 GDP 대비 채무의 비중이 1976년 21.5%에서 1996년 8.8%까지 낮아졌으나 2001년에는 20.8%, 2002년에는 21.5%로 증가하였다. 지급보증을 포함하면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1976년 24.5%에서 1996년 10.6%까지 낮아졌으나 2002년에는 38.9%로 급증하였다. 반면 중앙정부의 채권도 빠르게 증가하여 2001년말 현재 GDP 대비 28.5%이며 금액으로는 155.3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현상은 1990년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자산의 GDP 대비 비율은 1976년에 31.8%에서 1979년 18.3%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2년에는 56.3%가 되었다. 반면에 정부부채는 1976년 21.8%에서 1994년에 5.5%까지 감소했다가 2002년에 19.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G7 국가의 GDP 대비 부채의 평균 비율은 2001년말 기준 82.9%이며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73.5%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채무에 대한 규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부채는 선진국보다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재정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Hakkio & Rush(1991)처럼 세입과 세출간의 공적분 관계, Ahmed & Rogers(1995)처럼 세입과 이자지급 제외 세출 및 이자지급의 공적분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추정 결과를 보면 이자를 포함한 전체 지출의 계수가 0.931로 예상한 수치인 1에 가깝게 나타났지만 잔차(residual)가 안정적이지 않아 공적분 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추정 계수를 보면 이자를 제외한 지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수도 0.958로 예상한 수치인 1에 가깝다. 그러나 이자지급에 대한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상한 수치인 1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추정과 마찬가지로 잔차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ohn(1998)은 일시적인 정부 지출의 증가나 경기변동이 기초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정부부채가 커지는 경우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유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ohn의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을 따져보는 데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가 세입 이내의 세출이라는 재정운영 방식을 사용하여 정부부채의 조정보다는 재정수지의 균형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채의 개념으로는 ‘일반정부가 정부 이외(민간·해외)에 상환해야 하는 금전적인 지급의무로 확정된 경우’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범위는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제도단위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통합재정의 범위를 조정하여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무 관련 논쟁의 핵심이 채무를 구분하지 않는 데 있으므로 채무를 성격에 따라 확정 채무, 잠재 채무, 기타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이론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단기적으로는 Keynesian의 이론처럼 재정적자가 GDP를 증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전학과 모형을 따라 자본을 감축시켜 GDP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채무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정당국이나 민간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변화하여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는데 구축효과, 기초적 재정수지 개선 등의 경로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의 증가가 대체로 실질금리를 상승시키고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늘어난 국채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감안할 때 지나친 국가채무의 누적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정 부채 또는 최적 부채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기변동의 축소, 저축의 조정, 조세평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적정부채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적부채는 기본적으로 부채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부채의 핵심적 이득은 금융시장의 발달이며 국채 발행의 손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의 위축이다. 따라서 이득과 손실의 크기를 비교하여 적정 부채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부채관리의 기준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재정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할 과도한 재정적자나 부채를 회피하는 것이다. 중기적으로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상환성 부채 수준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채무관리제도 및 조직정비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급격한 국가채무 증대가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한편, 국가채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만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관련 법령이 산재해 있으며 국가채무의 개념 및 포괄범위도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채무를 적절히 관리할 조직이나 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채무 전망 및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 국가채무관리 조직의 정비 등 조직적·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 방안

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도 있다.

◆ 목 차

I. 서론

II. 국가채무의 개념 및 현황

1. 국가채무의 개념
2. 측정상의 문제
3. 채무 현황 및 국제비교
4. 안정성 검정
5. 결론

III. 국가채무의 경제적 영향

1. 이론적 논의
2. 국가채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최적부채 및 국제시장
4. 결론

IV. 국가채무관리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 현황
2. 외국의 국가채무관리
3. 국가채무관리 개선방안

참고문헌

- <부록 I> IMF의 부채관련 회계처리 규정
 - <부록 II> 외국의 국가채무 감축 사례
 - <부록 III>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자료
 - <부록 IV> IMF / World Bank의 국가채무관리 지침
-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 ◆ 박기백·정재호
- ◆ 2003. 12.
- ◆ 210p/8,000원

조세지원에 대한 부분균형 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외부효과가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없는 분야에 조세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업용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그 혜택이 농민뿐만 아니라 유류 생산자에게도 귀속되므로 정부의 정책목표가 농민의 소득 증대라면 소비세 감면보다 직불제처럼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더구나 최종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에 대한 조세감면일 경우에는 생산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가 발생되어 농업 생산자에게 귀속되는 이득은 더욱 축소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간재에 대한 조세지원은 효과적이지 않은 지원방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효과에 대한 일반균형 모형은 정부가 직접 지원재화에 지출 또는 투자하는 것보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이론적인 면에서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치안, 국방과 같이 외부효과가 아주 강한 재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지출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세감면 규모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준비금 및 과세이연의 경우 한계세율 25%, 3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자율 5%를 가정할 경우 준비금 1원의 감세 효과는 약 0.042원이다. 따라서 2001년 준비금 및 과세이연의 규모가 6,813억 원이므로 실제적인 감세 효과는 285.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투입산출표를 이

용하여 추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모든 재화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조세지출 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약 6.2조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조세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주택소유, 지방 및 중앙정부, 교육기관, 의료 및 보건, 생명보험, 정미, 여객운송 등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의 개념은 OECD(1995)에서처럼 조세체계상의 일반적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나는 항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반적 원칙에는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 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조세체계에 벗어나는 항목이 조세지출 또는 조세감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존의 조세감면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조세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명백한 세제상의 특혜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조세감면과 정부의 직접지출을 비교하기 위한 조세지출예산의 경우 현재처럼 조세지출의 규모와 대상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조세감면이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 조세지출과 예산의 연계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지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업종 기준을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포괄주의)으로 전환하고, 일몰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감면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분야별 개선방안 중 중소기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조세지원은 특별세액감면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특별세액감면 이외의 조세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차별을 폐지하여야 한다. 설비투자의 경우 조세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외부효과를 가지는 설비투자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경기조절 목적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업종과 기업규모, 자산의 구분 없이 조세지원을 하여야 한다. 저축지원제도의 경우 대부분 폐지하고 생계형 저축, 농어가 저축 등 저소득층의 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장기 저축만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농어업용 투

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농어업용 유류는 특별소비세나 교통세를 면제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개발의 경우 준비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도 경상지출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관세감면의 경우 산업관련 감면제도는 그 기능을 관세율 체계에 반영시킴으로써 관세율 정책을 통해 일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 차

I. 서 론

II. 조세감면 현황

1. 조세감면의 개요
2.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III. 이론 모형 및 규모추계

1. 부분균형 모형
2. 일반균형 외부효과 모형
3. 세수 손실

IV. 기준조세와 조세지출예산

1. 기준조세
2. 조세지출예산

V. 개선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조세지원 대상 및 방법
 3. 통제 장치
 4. 분야별 세부 방향
-

참고문헌

<부록 I> 부가가치세 면세규모 추정 계산방법

<부록 II> 소득세의 조세지출 구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 ◆ 김현아
- ◆ 2003. 12.
- ◆ 196p/8,000원

본 보고서는 지방세수 확충에 관한 각 논의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지방 소비세가 지방소득세보다 바람직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별 논거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따른 지방소비세 혹은 지방소득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논거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자주권 확보, 세수확보의 신장성 및 안정성 확보, 중앙의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요약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이다. 둘째, 응익과세 원칙에 따른 지방세수구조 재편성이다. 셋째, 지역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수 도입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논거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수 확충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응익과세 원칙과 지역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수 도입에 관해서는 지방소비세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본 보고서는 경제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지방세수 확충의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이전재원이 아닌 자체세입을 통한 자주재원이어야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기에 모형부분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보여진다. 모형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지방소득세와 동일한 의미이지만 비례세적인 세율체계 등을 고려한 개념적인 모형으로는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을 뒷

받침하고 있다. 모형의 결과가 제시하는 의미는 각 지방정부가 지방소비세라는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하에서 배분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또한 지방소비세의 도입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의 소비과세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봐야 하고 그 이전에 지방으로의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논의를 이론에서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방소비세와 관련한 선행연구 부분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있다. 하나는 분권과 관련하여 하위정부의 과세권 강화가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소비과세의 해외사례에서의 문제점 등을 위주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였다.

각 대안별 세수효과분석에서는 배분기준에 따른 세수효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시 각각 어느 정도 규모의 세수 변화를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세수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분기준으로 지역의 소비를 반영하고 있는 여러 통계지표 중 ‘최종소비 지출’이 지역간 균등화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밖에 소비 관련 지표에 따라 지역간 배분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의 소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배분기준의 선택적 범위는 다양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밖에 현행 주행세율 인상(교통세 전환), 주민세 소득할 인상 방안은 부가가치세 공동세 방안이나 소득세 공동세 방안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의 세수효과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 주행세율 인상안의 경우, 인구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주유 소비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교통세액을 전환하거나 혹은 현행의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대안으로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비과세인 부가가치세를 대안으로 꼽은 이유는 지방정부의 고유기능인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해 응의과세원칙에 적합한 소비

과세가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일반소비과세에 대한 과세권한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우선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모형으로 설명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현안분석과 세수효과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 목 차

I. 서 론

II. 지방세수 강화의 필요성

1. 지방세 도입에 대한 논의
2. 지방소비세 모형
3. 요 약

III. 지방세 현황

1. 국세 지방세 체계
2. 지방세 체계
3. 지역간 세수격차

IV. 선행연구

1. 분권의 필요성
2. 국세 지방세 배분
3.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소비세 도입의 근거
4. 기술적인 문제점 : 생산지원칙 vs 소비지원칙
5. 일반소비세의 공동세화 방안 : 주요국의 사례연구
6. 요약

V.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1. 부가가치세 공동세 방안과 교부세율 인상방안
 2. 도입시 쟁점사항
-

- 3. 지방세수 효과
- 4. 교통세 도입방안
- 5. 요 약

VI.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 1. 주민세소득할 인상방안
- 2. 소득세 공동세 방안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 ◆ 노영훈
- ◆ 2003. 12.
- ◆ 120p/6,000원

1. 연구배경

2001년 하반기 이후 2년여간 일부 지역의 특정유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 시행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서 추진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주택 관련 조세정책을 통해 가격급등을 억제하지는 방법론을 채택하게 되었다. 정부정책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그 효과가 발휘되고, 또 그 나타난 결과가 시장가격 및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인 가격을 정책지표로 삼을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왜곡 관련 경제적 비효율성문제는 추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가격안정화 기능이 야기하는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주택 관련 조세정책을 통해 주택시장문제를 풀려는 정책당국이 봉착하게 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들 세제 및 세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등기제도 등 제반 환경하에서 과세자료 확보의 적기성, 확보된 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간 유상거래시에 신고납부제로 운영되는 조세의 과세표준이 실지거래가격과 달리 과세당국에 과소신고되어도 이를 확인하여 과세당국이 경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하에서는 해당 조세의 본질적 및 부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평성에 따른 납세의식 저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개인간 유상거래시에 실지거래가액대로 취득 및 처분단계 조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되지 못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이 만연되어 가는 근본 원인이 해당 조세들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의 과세(이하 ‘실가과세’라 함)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대안 중 하나인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추진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세부담 증가를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율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부동산거래단계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이득과세인 양도소득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로서 그 과세표준인 ‘과세양도차익’(taxable gains)을 계산하는 원칙으로 ‘기준시가 결정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일종의 추계과세제도(presumptive taxation method)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호·불황기에는 양도세 세부담 변화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자 기준시가의 상향조정 또는 특정지역 특정대상에 대해 실가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보편화시켜 왔다. 특정자산시장의 가격안정화 기능은 중앙정부의 재정목표 중 하나이므로 정책세제로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활용하는 접근방법은 사용수단과 추구목적간의 정합성이란 측면에서는 일견 무리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안정화를 위해 특정자산 특히 부동산과 같이 지역적으로 이질적인 자산시장의 가격변동폭을 줄이기 위해 人稅로서의 양도소득세를 사용하려면 처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별로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차별화하는, 즉 지방세적 운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세제운영방식이며, 타 원천의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나라들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상거래를 포함한 사실상의 재산취득 및 재산권의 창설, 변경 등에 대한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후 보유과세인 (건물)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오랜 기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세제당국이 운영해 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조세가 신고납부주의 세목인 반면 보유과세인 (건물)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정부부과결정 세목이므로 과세표준 결정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즉, 전자의 경우 유상취득시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되지 않는 현상이 만연해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가과세를 담보할 수 없다는 데에 제도적 결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래의 양 당사자인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조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양분되므로 세정당국에서는 신고자료를 상호 대서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국세당국은 기준시가 이상으로만, 지방세당국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한 것으로 용인하는 세무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3. 실가과세 방안과 정책시사점

취득시점에서의 실거래가 신고가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위해 현재 취득단계에서 지방세로 과세되는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화하는 방안(대안 1), 취득단계에서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화하는 방안(대안 2), 취득단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인을 없애기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대안 3), 기타 주택거래신고제 및 부동산중개사에 대해 전산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규제방안(대안 4)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어떠한 실가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세법개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신고거래가격의 축적 및 사후관리,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다. 대안별로 자료수집·관리업무가 달라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취득단계에서 실가로 수집되는 과세자료가 양도시점까지 보존·관리되면서 그 동안 취득거래 시점의 취득자와 양도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상호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양도자의 신고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해 주는 비과세제도는 소득공제 또는 100% 세액공제 등 어떠한 형태로라도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개편하여 실가과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1대안을 택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급증하는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당 세목의 법정명목세율 조정을 통해 낮추어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세목은 모두 신고납부주의 세목으로 납세자가 거래내용대로 성실하게 자진신고할 유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가과세로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현행 세부담 수준으로 맞추어 주는 보완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조정 등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취득세를 폐지하고 등록세를 면허세·인지세와 묶어서 국세로 통합한 후, 양도세 양도가액과 (통합된) 등록면허세의 등기시 신고가액을 일치시켜 운영하는 실가과세 방안인 제2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결손분은 보전해 주어 세수중립적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된 국세인 등록면허세 세수의 지방양여금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거래신고제나 부동산중개사의 거래가격 전산신고제는 정책당국이 간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부동산 거래단계에서의 조세제도 현황

1.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체계 및 운영 현황
2.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의 과표체계와 세율
3. 실거래가격 대비 (국세청) 基準時價 및 (지방세) 時價標準額의 수준 및 양자간 관계

III. 부동산 거래과세에 대한 설문조사

1. 조사대상 선정 및 방법론
2. 설문결과 분석

IV.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관련 조세의 적정 세율 분석

1.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세원의 증감액 추정
2. 적정세율 분석

V.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제도의 실행방안

1. 방안모색의 기본방향 및 선행조치들
2. 실행가능한 구체적 대안들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형사처벌 신문보도

부록 II : 부동산 관련 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들
(myths)

부록 III : 부동산 관련 양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 ◆ 김 재 진
- ◆ 2003. 12.
- ◆ 326p/12,000원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공지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정의된다. 이는 세금은 그 납부의 형태·방법·시기 등에 있어서 구속력이 적용되며, 개인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어떤 효용이 직접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의 크기가 개인이 납부한 세금액과 일반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국방·치안·행정·교육·사회간접자본 등 국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공공재를 공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세의 대가는 납세자에게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이 간접적이고, 무형적이며, 비금전적이며, 납부한 세금에 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납세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무임승차(free rider)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원을 투명화하여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상거래에서 현금수수관행이 뿌리박혀 있고 장부기장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과세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오랜 숙제이며 난제였다. 이렇게 구조적이고 역사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난제를 하루아침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다.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의 인프라가 확충되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정부의 조세철폐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총납세의무자 381만명 중 과반수를 초과하는 약 200만명이 과세미달자에 해당하고, 과세자 중에서도 장부기장자의 비율은 약 45%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약 40%가 납부면제자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과세기반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과세기반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의 불형평성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불형평성 문제로 이어져서 사회계층간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세당국의 가지고 있는 오랜 숙제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간 이과세배제지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세무관리를 강화하여 간이과세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축소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저축상품의 범위를 축소하여 종합과세 시행의 기초를 다진 후,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세정측면에서의 정책골간은 일차적으로 상거래에서 현금거래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차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강화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중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혐의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통하여 위에 제시한 2단계 그물을 빠져나가는 일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탈세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정착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적격영수증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 등에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신용카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소액거래에 대하여 직불카드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무기장가산세율의 인상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실효성제고, 기장확대 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통하여 기장의무자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적극 확대하여 정당한 과세목적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다섯째,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여 현금거래를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성격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무사 실무 및 보수 교육시 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세무사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징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목 차

I. 서 론

II.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관련 제도와 정책

1. 세제분야
2. 세정분야

I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분석
2. 세부담에 관한 기존연구
3.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과거 정책
4. 성과 및 문제점

IV.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전략

V. 개선방안

1. 세제분야
2. 세정분야

VI.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주요국의 혐의거래 감시기구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 ◆ 전택승
- ◆ 2003. 12.
- ◆ 170p/7,000원

본 연구에서는 기금제도에 대해 이론적·논리적으로 계약이론을 통해서 증명하여 기금제도의 재정운영에서의 역할을 증명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금운영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기금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금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실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금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기금제도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제도적인 특성, 각 기금별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금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얻은 주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금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금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이루고, 사회구성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금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기금이 자율권을 남용하여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후생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기금과 특별회계간의 보다 명확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기금은 특별

회계에 비해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여유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기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금은 다양하지 못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운영하고 기금을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부처의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신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미국의 기타기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기금제도의 개선에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1990년의 예산관리법을 기초로 하여 기금관리의 기본을 세웠으며, 이후에는 각 기금별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개별기금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개별기금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 목 차

I. 서 론:기금제도의 현황 및 연구배경

1. 기금운영의 현황
2. 연구내용 및 목차

II. 기금의 관리:통제와 자율의 대립

1. 통제와 자율권의 논의의 필요성
2. 기금의 성격 정의
3. 기금설치의 논리
4. 성공한 기금의 사례와 분석: 고속도로기금
5. 실패한 기금의 사례와 분석
6. 결 론

III. 계약이론을 통한 기금제도 이론모형

1. 이론모형의 필요성
2. 모 형
3. 정책적 시사점

IV. 미국의 기금제도

1. 분석의 필요성
2. 미국 기금제도의 개괄
3. 미국 기금의 분포
4. 기금의 여유자금과 정부부채와 예산
5. 개별기금의 내용

V. 우리나라와 미국 기금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1. 연구방법
2. 비교 1: 두 나라 기금제도의 총괄적 비교
3. 비교 2: 계약성과 영향력에 따른 분류
4. 비교 3: 기금과 특별회계간 비교
5. 우리나라 기금의 성질 및 특성별 평가

VI.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 ◆ 손 원 익
- ◆ 2003. 12.
- ◆ 132p/ 6,000원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지출과 유흥산업의 관계 및 접대비 관련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접대비 관련 조세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흥산업 규모의 변화와 접대비 관련 세제개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흥산업으로 주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및 주점업 및 일반음식점업의 합계를 사용한 경우를 각각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음식점업이 주점업보다 접대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흥산업과 접대비비율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흥산업을 나타내는 변수로 종사자비중이 사업체비중보다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차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사업체비중과 접대비비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점업이 가장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점업 사업체비중의 경우 시차를 고려하면 접대비비율과 유흥산업규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유흥산업의 규모에 대한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에서는 주점업의 사업체비중증가율에 대하여 1년의 시차를 가지

고 접대비비율증가율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 결과이지만 유흥산업의 다른 범위를 사용한 경우와 다른 변수를 사용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크지 않아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접대비 관련세제 개정의 결과인 손금산입한도의 변화율이 접대비비율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 외에 동종 업종 내 타기업수와 타기업 접대비비율의 평균값, 업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기업규모의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추정계수도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손금산입한도증가율의 경우 모든 분석모형에서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손금산입한도의 증가폭이 커질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조세정책이 기업의 접대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기업접대비평균은 접대비의 경쟁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이며, 접대비비율증가율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수가 증가할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종업종 내에 접대비에 대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업종더미 변수의 경우 도소매업, 운수업, 전기·가스·증기업 등의 접대비비율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모형에 복리후생비지출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복리후생비비율증가율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서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변칙회계처리의 가능성은 소규모 기업이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

으로 예상되나 분석대상이 기업공개 의무가 있는 상장기업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형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제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산업과 접대비지출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유형산업의 축소를 위해서는 접대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상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기업의 접대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상으로는 손금산입한도의 축소가 정책당국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접대비 지출 현황 분석

III. 접대비 지출관련 세제

1. 현행 세제
2. 세제개정 내역

IV. 외국의 접대비 관련 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6. 접대비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
-

V. 접대비 규제와 유흥산업의 규모

1. 유흥산업의 규모
2. 연관관계 분석

VI. 접대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접대비 규제와 지출 현황
2. 세제개편의 효과분석
3. 복리후생비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효과

VII. 요약 및 정책방향

1. 요약
2.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I. 접대비 명세서 양식

부록 II.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기타보고서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 ◆ 이일영·김연철·양문수·
이건범·이남주·전병유
- ◆ 2003. 5.
- ◆ 212p/7,000원

(1) 북한은 최근까지 사적 부문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경제 내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경제운용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재정정책의 거시-미시적 역할과 여타 정책과의 관련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생산·고용 감소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면에서 구소련·동구의 평균적인 상황보다 심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에서도 인플레이션의 폐해는 매우 클 것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긴급 일변도의 정책을 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시장화 과정에서 생산과 고용의 감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몇 년간 지속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거나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 9년간의 마이너스 성장과 ‘고난의 행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지나친 확장정책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시경제 운용은 소폭의 확장적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인플레이션 수준과 재정적자 수준에 대해 목

표치를 정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해외자본의 유입 정도, 특히 남한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의 규모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정책이 중요하다. 안정화 정책과 산업정책의 정책혼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재정정책도 균형예산보다는 소폭의 적자예산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정부지출을 어떻게 감축하느냐, 시장화 초기에 발생하기 쉬운 재정지출수요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조세제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는 것들이 최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2) 한편 전환경제에서 급진적 개혁이나 점진적 개혁이냐에 따라 재정제도의 과제에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급진적인 개혁의 경우 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부분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 재정제도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런데 점진적 개혁의 경우에는 재정제도 개혁이 체제전환의 주된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는 점진적 개혁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유지되며, 재정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경제주체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화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 체제전환을 전제로 할 때 전체 경제개혁과 관련된 재정제도 개혁에서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첫째는 재정의 분권화이다. 특히 중국에서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북한에 적용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미 공장기동을 저하, 자재 부족, 생활필수품의 결핍 등의 원인으로 계획 외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획내로 흡수하기보다는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정에서처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국유기업 사이의 재정관계의 단절로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체제 개혁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재정관계 단절의 핵심은 사회보장

기능에 대한 개별 기업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유기업에 대해 예산제약을 강화하는 제도개혁과 금융의 상업화를 더욱 빠르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체제전환과 금융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제전환기에 금융의 역할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던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은 재정의 일부로서 중앙집권적 계획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지만 개방개혁의 과정에서는 자원배분을 결정하고 투자를 심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북한의 경우 개방과 개혁을 통하여 금융부문은 재정에서 담당하던 기업과 관련된 자금의 이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금융부문의 구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체제전환국의 경우 금융이 재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가재정과 기업의 위기 및 부실이 은행 및 금융부실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바람직한 금융제도 수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금융시스템 수립을 위해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은행의 사유화나 외국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통화정책의 담당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정립하여야 하며 중앙은행은 거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금융안정성(financial safety)을 제고하고 금융위기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특수은행의 설립 등 시장실패의 보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설립할 필요는 있으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원활한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기업개혁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국영기업부문과 비국영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영기업부문의 과제로는 기업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의 추진 방향과 개별 기업의 이윤유보 확대 및 재정 분권화를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현재의 북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과 탈냉전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냉전적 재정지출 구조부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탈냉전이 진전된다면, 북한은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보다 생산적인 산업정책 활성화에 투자할 수 있다. 재정 투자 정책은 생산재 산업보다 소비재 산업에,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 정책 전환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산업전략 전환 차원에서 집중투자 대상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하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비국영기업 부문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의 지출과 재취업 교육비용이 예상된다.

기업 차원의 재정분권화 정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립채산제의 엄격한 적용과 이에 따른 재정 권한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중국에서 시행했던 경영 책임제와 재정 책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국영기업 부문의 확대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적으로 비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소득세 부과도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봉급, 이자소득, 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세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거래세 개념에서 간접세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다음으로 기업 및 노동 인센티브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북한이 당면한 재정문제는 국가 주도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점과 또 그 과정에서 비공식부문이 증대하면서 독립된 경제단위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은 마비된 생산시스템을 복구해서 물자부족 문제를 해결하

고 비중이 늘어나는 비공식부문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생산의 마비와 비공식부문의 창궐을 초래한 요인에 대한 시스템적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자원배분의 메커니즘에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북한이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서의 엄격한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서 규율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기업과 노동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초해서 행동하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임금에 대한 보조도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유기업으로부터의 수입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분담 원칙이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사회화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분권화의 과정에서 공유자산이 개인적으로 유용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당 조직 중심의 통제감독시스템에서, 행정적 효율성이 담보된 위계적인 통제시스템에 의한 감시와 평가의 지배구조가 같이 결합될 필요성이 있다.

(6) 마지막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 유통시스템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통상적으로 경제발전 초기 농업에는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체제 이행에 있어서도 농업은 경제자유화의 학습, 거시경제의 안정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 개발 초기, 체제이행기의 농업발전에서 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재정적자의 규모와 재정지출 중 가격보조금의 비중이 시스템 개혁의 방향·속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가격보조금 비중이 과거 러시아에 비하면 대단한 규모는 아니었고, 경제상황의 악화로 재정적 제약이 강화되어 가격보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은 수매가격과 배급가격이 농민시장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거 러시아와는 차이가 있

고 오히려 개혁 전 중국과 유사한 가격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순조로운 경제발전과 체제이행을 위해 농산물 수매가격 인상을 통해 공급부족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단기·중기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운 가격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중기·장기적으로는 양정사업소 등 국유 유통기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 순수하게 기업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분업구조를 고려하여 국내외 가격차를 관리하고 구조정책으로의 전환을 강구해야 한다.

◆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방법

II.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과 재정정책의 방향

1. 머리말
2.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불안정 가능성
3. 거시경제 운용 원칙: 안정화 정책의 추진방향
4. 재정정책의 방향성
5. 맺음말

III. 북한 사회주의 재정제도의 개혁과제:

중국 경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북한의 경제개혁과 재정제도
 2. 점진적 체제전환과 재정제도
 3. 북한의 계획경제와 재정제도
 4. 북한의 경제개혁과 재정제도의 개혁
 5. 결론
-

IV. 체제전환에 따른 금융의 역할 정립과 재정:

기업금융과 금융시스템 정비

1. 체제전환기 금융의 역할
2. 북한의 금융제도와 북한기업의 재무관리
3. 재정개혁과 기업분권화 및 금융의 역할강화
4. 결론

V. 기업 분권화와 재정구조의 변화

1. 2002년 7월 북한 기업관리체계 변화의 의미
2. 북한의 전통적 기업관리체계의 특징
3. 기업 개혁과 재정정책
4. 기업관리체계 변화의 방향
5. 결론

VI. 기업 및 노동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와 재정

1. 서론
2. 북한의 경제관리시스템 및 인센티브 구조
3.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복원
4. 인센티브시스템의 재구축과 재정에의 함의
5. 결론

VII. 북한의 농산물 가격·유통시스템 개혁과 재정의 역할:

러시아·중국과의 비교

1. 문제의 제기: 체제이행기의 농업과 재정
2. 농산물 가격·유통시스템 이행의 사례: 러시아와 중국
3. 북한의 농산물 가격·유통시스템
4. 최근 북한의 농산물 가격·유통의 '경제관리개선' 조치
5. 농산물 가격·유통개혁에서의 재정의 역할
6. 결론

V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 ◆ 옥동석
- ◆ 2003. 8.
- ◆ 276p/9,000원

재정관리제도는 정부가 공공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과정으로서 공공부문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감사, 사후평가를 망라한다. 재정개혁은 국가가 국권에 기초하여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 조성한 자원을 사용하는 절차, 즉 재정관리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크게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와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을 광범위하게 구조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소위 공적자금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재정의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이 향후에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목표를 ‘재정의 신뢰성 회복’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 형성’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

우선 재정위기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극복하고 ‘재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는 국가재정의 경제적 상태를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에 대한 국민

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관리하고 동원가능한 재정자원의 범위를 파악하여 이들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전면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재정의 범위는 형식적 요건과는 별개로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일체의 자원으로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운영과 파산에 대해 정치·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재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가 설령 정부산하기관의 채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 견지에서 볼 때 그 책무가 인정되면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과 통합예산의 범주를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의 실질적 범주를 제대로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의 범위를 파악한 이후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당해 기관이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향후 5~10년간 안정적으로 지속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 금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정부는 재정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그 방안은 원칙적으로 재정수혜의 축소(예컨대 연금급여의 축소, 의료보험료의 인상, 공공기관 종업원 인건비총액 동결 등), 재정사업(주요 국책사업 등)의 축소,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재정수입의 확대 등으로서 이들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이다.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여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와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재정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자들이 재정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통합재정 전반에 관한 정보생산체제가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개혁의 인프라인 재정정보 생산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범

위를 정비함과 동시에 다양한 재정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정부회계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재정범위는 그 실질적 의미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 국제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개혁의 두 번째 인프라로서는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정부회계는 재정정보와 재정통계 산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여타 경제통계체제와 부합하는 재정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정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 의미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첫 번째 인프라라면,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두 번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재정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 방안을 고안하여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측면의 과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재정사업의 집행 현장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보유하는 정보가 자발적으로 표출되어 상위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은 개별 사업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에게 사업선택과 집행에 관한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왜곡된 정보를 외부에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부처별, 각 실국별, 각 사업소별 그리고 일선부서별로 예산한도를 하향식으로 할당하고 이들이 각각의 예산계약하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자들이 충분한 재량권으로 중장기적인 다년도 관점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회계연도 내에서는 예산한도가 하향식으로 할당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분야별 예산한도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 및 세출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꾸준히 배양할 필요가 있다. 다년도 계속사업에 대해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며, 예·결산서가 조직단위와 사업중심으로 작성되며, 사업계획서의 작

성이 내실화되고 공개되는 것은 모두 제도적 역량의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사결정자들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비현금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보유할 때 각종 재정정책 수단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비현금거래들로는 정부채무보증, 정부위험보증(민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입보장 등), 조세지출, 정책금융, 국공유재산의 무상·저가 운용, 정부기관 상호간의 내부거래 등이 있는데, 예산 및 회계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현금거래의 재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중간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발생주의 예산(resource budgeting)은 정부의 현금지출 대신에 자원의 기회내용을 중시하는 예산개념으로서 19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재정개혁의 세 번째 목표인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원을 사용·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에서 도덕적 해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성과협약(performance agreement)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이념에 따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 개별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기능적 유인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상당한 정도 경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공기관의 유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기관별 성과협약(SOC 민자사업 실시협약 수준의)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기업에서 이윤이라는 객관적 성과가 중시되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도 그 산출물을 객관적인 성과로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에서 성과달성을 위해 경영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의 객관적 표현 정도에 따라 법령준수(compliance) 대신 재량권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에서는 획득하는 자원의 크기가 기업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와 연계되는 대가의

형태로 예산과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기업이 파산의 위험을 갖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정도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머리말

1. 재정개혁의 의의
2. 재정개혁의 장단기 과제

II.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변천과정

1. 예산회계법의 제정 - 1961년 이전
2. 외환위기 이전의 재정제도 변천 - 1997년 이전
3. 외환위기 이후의 재정제도 변천 - 1998년 이후
4. 재정제도 개편의 평가

III. 재정개혁의 인프라 1 - 재정범위의 재정비

1. 재정범위의 의의와 문제점
2. SNA지침의 제도단위 분류

IV. 재정개혁의 인프라 2 - 정부회계의 개혁

1. 정부회계의 의의와 과제
2. GFS지침과 정부회계

V.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의 구축

1. 예산금액의 하향식 할당제도
 2.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3. 다년도 일괄계약의 도입
 4. 사업중심 예·결산서와 사업계획서
 5. 비현금거래의 예산·회계관리
-

6. 민자사업과 재정효과분석

VI. 도덕적 해이의 경감

1.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성과협약의 도입

V. 맺음말

참고문헌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 ◆ 이준규
- ◆ 2003. 9.
- ◆ 356p/10,000원

1.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대표적인 소득통산형으로서 최초 도입 이후 8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제도로 변천해 왔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연결납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IRC에서 연결납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9개의 조항뿐이며, 특히 세액의 계산 및 납부에 관하여는 1개의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IRC의 위임에 따라 미국 재무성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인 연결납세규칙은 6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절대적인 분량에 있어서 IRC의 연결납세규정과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연결납세집단이 하나의 개별 법인이고 각 구성법인은 당해

개별 법인내의 사업부로 보아 결손금의 산정, 각종 공제의 한도,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 개별과세소득을 기초로 한다든지, 연결기준으로 산정될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든지, E & P를 각 구성법인별로 산정·관리하는 등 개별실체개념을 일부 채택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무상 적용을 간편하게 하고 연결이탈시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대체적으로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처음 도입 이후 80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으나 예상되는 모든 조세회피행위를 열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조치를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수정, 초과손실계정, E & P, 지분변동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미국에서는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의 지분비율(다른 구성법인의 지분비율 포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세액의 배분 및 연결이탈시 조세특성의 배분과 관련하여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데 미국의 연결납세규칙에서는 구성법인간의 실제 배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E & P 산정목적의 연결세액배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연결세액의 부당한 배분으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가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써 세액배분을 수정할 여지는 있다.

다섯째, 미국 세법상 개별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에는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대응되는 개념이 없거나 그 적용방법상 차이가 있는 규정들이 있으며 이들 규정이 미국의 연결납세규정 중 상당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세법상 주식의 기초가액 및 E & P는 우리나라 세법상 주식의 장부가액 및 세무상 잉여금에 해당하는 개념이지만 그 산정방법 및 적용용도가 다르며,

미국 세법상 내포손익 및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은 우리나라 세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의 방지와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여섯째, 미국연결납세제도에서 SRLY는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또는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조세특성을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구성법인이 연결과세소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이 공통의 모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연결과세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납세집단을 공통의 모회사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연결회계이론에서의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theory)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관계회사집단 성립전에 발생한 공통의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손금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역취득의 방식을 통하여 결손금공제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해지자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도입되는 등 연결납세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결납세가 강제적용되었으나 그후 연결납세를 관계회사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연결납세 여부를 임의선택하게 바뀌었으며 그 변경의 초기에는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연결납세가 조세지원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관계회

사집단이 경제적으로 일체가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연결납세를 임의로 중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납세제도의 강제적용 여부와 적용개시후 계속적용 여부 및 가산세부과 여부는 제도의 취지 및 당시의 경제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정책시사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대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부분의 연결납세규정을 두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되어 위헌으로 판정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연결납세규정의 대부분을 법률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법체계 및 전통이 유사한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법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개정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연결납세의 성격상 논리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연결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어 납세자인 법인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개별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과감하게 연결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결납세에 관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위헌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규제되는 조세회피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연결세액의 배분과 관련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미국 세법상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연결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주식의 기초가액, E & P, 내포손익,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과 차이가 있는 생소한 개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용이하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제도에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개별 법인에 대하여도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세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SRLY 및 역취득에 관한 규제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너무 복잡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모회사의 결손금도 자회사의 결손금과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역취득에 대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제도의 단순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단계 초과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나 낮은 단계의 세율(15%)과 높은 단계의 세율(27%)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고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도 1억원 이하로 적은 금액이어서 누진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누진의 효과가 비교적 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의 규제방안으로서의 연결납세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요구는 주로 재계에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장애 중 이중과세부담으로 인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연결납세제도가 기업집단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책이라기보다는 기업집단을 경제적 단일체로 볼 경우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되 일단 선택한 후에는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겠다. 또한 임의선택규정으로서의 도입 초기에 미국 및 일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기 때문에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부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경제적 일체성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지원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조기에 연결납세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가산세의 부과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 목 차

I. 머리말

II. 제도의 변천과정

1. 개요
2. 1917년의 연결납세규칙
3. 1918년~1951년의 세법
4. 1954년~1964년의 세법
5. 1966년의 연결납세규칙
6. 1966년 이후의 입법
7. 1990년대 연결납세규정의 보완수정

III.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 연결납세의 대상
2. 연결납세의 선택 및 중지
3. 역취득
4. 사업연도
5. 회계처리방법
6.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공통의 모회사
7.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8.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IV. 연결과세소득

1.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구조
 2. 결손금
 3. 자본손익 및 사업용자산 처분손익
 4. 기타 연결기준공제
 5. 내포손실
 6. 주식처분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손실의 공제 제한
-

7. 자회사주식의 처분 및 연결이탈
8. 한도초과 불공제 기타 수정항목

V. 내부거래

1. 개요
2. 대등원칙
3. 촉진원칙
4. 구성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내부거래
5. 내부채권채무와 관련한 손익
6. 기타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

VI. 투자수정 및 E & P

1. 투자수정
2. 초과손실계정
3. E & P
4. 집단의 구조변경후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VII. 지분변동

1.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
2.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
3.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
4. 제382조 연결한도 및 하위집단한도
5. 연결납세집단에 신규가입하는 손실법인과 제382조
6.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
7.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3조의 적용

VIII. 연결세액

1. 연결세액의 계산
 2. 연결최저한세
 3. 연결세액공제
-

IX. 시사점 및 맺는말

1.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2. 맺는말

참고문헌

<부록 I: 미국연결납세규정의 목차>

<부록 II: 미국연결세액의 계산구조>

<부록 III: 연결납세관련서식>



전설의 10년 :
1990년대 미국경제 성공의 교훈

- ◆ Alan S. Blinder · Janet L. Yellen
김교식/홍승일 역
- ◆ 2003. 11.
- ◆ 164p

1. 개요

1990년대 후반 미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후반을 비교해보면 실질GDP 성장률은 3.0%에서 4.0%로 높아진 반면, 실업률은 7.3%에서 5.0%로, 물가상승율은 5.1%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특히 매년 누적되어 가던 재정적자는 1995년 1,640억 달러까지 달했으나 5년 뒤인 2000년에는 2,360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주가지수인 다우지수 역시 1990년에 3000 이하에서 2000년에는 11,700을 넘어섰다.

1990년대 초까지 높은 인플레이션과 극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미국경제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은 IT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 기업들의 부단한 구조조정 노력, 석유가격을 비롯한 수입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등 경제여건의 호전과 더불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결합, 운용된 결과였다.

1990년대 미국경제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긴축 재정정책과 유연한 금융정책의 조합, 미국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생산성의 급속한 향상을 들 수 있다.

2. 경제성공의 기반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지칭하여 ‘경제가 문제야, 이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선거구호로 부시 대통령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성공의 기초가 된 긴축 재정정책·유연한 금융정책·미국기업의 구조조정 등은 그 당시에 이미 다져지고 있었다.

① 1990년의 예산합의

1990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는 예산집행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을 재량적 지출과 경직성 지출로 나누고 재량적 지출(국방비, 국제관계비, 환경·교통·통신 등 국내사업비)에 대하여는 상한을 설정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경직성 지출(사회보장 지원, 이자 지급, 예금보험 지원 등)에 대하여는 지출이 증가할 경우 동시에 조세수입 등이 증대되도록 함으로써 전체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1991~1993년중 계속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더불어 부실화된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s)의 정리를 위하여 1990~1991 회계연도중 부실금융기관에 각각 600억 달러 이상씩을 투입한 것 등이 원인이었다.

1990년 예산집행법의 기본틀은 2002년까지 유지되었으며 적자재정이 흑자재정으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② 기업구조조정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기업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으로 일컬어지는 기업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다운사이징을 일찍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경영환경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자본주의를 철저히 실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고를 막는 법률적 장벽이 없고 사회적 인식도 이를 수용하였다. 둘째, 1980년대 중반 고평가된 달러화는 세계시장에서 미국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기업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경제가 호황을 맞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의 금융시스템도 과감하게 개편되었다. 1980년대 저축대부 조합의 10%를 파산시켰던 부실대출 문제가 상업은행에까지 확산되면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해졌다. 그런데, 금융기반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금융산업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금융정책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92년 중반부터 연방기금금리를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3% 정도까지 인하하고(실질금리 0% 수준), 이를 18개월 동안 유지하였다. 연준은 클린턴 행정부의 긴축 재정정책하에서 저금리정책을 통해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에 마련된 안정성장을 위한 기틀, 즉 기업구조조정이나 예산제도의 개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저금리 정책 등은 1993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할 즈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재정적자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기업들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되었으며 1985년부터 고평가되었던 달러화의 가치도 급속히 하락하였다.

3. 재정정책의 전환점 : 1993년 예산합의

1992년의 대통령 선거기간중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는 재정적자 감축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세금인상과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을 포함하는 적자감축 주장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재정지출의 삭감과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인식의 배경은 첫째, 전통적인 구축효과(crowding out)이론과 관련하여 대규모 재정적자는 실질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재정적자를 빠른 시일 내에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은행시스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금융재앙에 대한 우려였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월가에서 공감을 크게 얻고 있었으며,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도 이에 공감하고 있었다

1993년 8월 확정된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예산안은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 30년 만기 채권금리를 160bp 이상 하락시켰는데 이는 적자감축이 증시부양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케인즈 이론과 달리 조세수입의 증대와 정부지출 감축이 어떻게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인가? 가장 유력한 대답은 금융시장의 붕괴에 관한 시나리오인데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부채의 증가(특히 GDP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시장의 공포심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감축정책의 추진은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금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재정적자가 결국 이자율을 상승시켜 금융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적자감축을 시도하는 정치인에게 보상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린스펀이나 볼커의장 모두 재정적자 감축정책을 선택하도록 제안해 왔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정책을 추진하자 연방준비은행은 저금리 정책으로 호응하였다.

4.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착륙 유도

1994년 겨울까지 2년 이상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지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실질금리를 기존의 0%에서 25bp 인상하였다. 당시 금리인상의 논거는 향후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클린턴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으나, 백악관의 참모들이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여 그때부터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불간섭 원칙이 확고히 정착되었다.

당시 연준의 금리인상 기준은 실질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여 완전고용(실업률 6%), 인플레이션 3% 수준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린스펀이 제시한 ‘중립적인 실질금리 수준’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가? 연준 내에서의 대체적인 의견은 명목기준으로 4.25%~5.25%(실질금리로는 1.25%~2.25%) 수준이었다. 중립적인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른 변수들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 단기금리수준을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 30~40년간의 장기 평균금리를 계산하여(극단적인 경우는 제외) 이를 중립적인 금리로 보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연준의 중립적인 실질금리수준은 1.75%~2.75%, 명목기준으로는 4.75%~5.75%이었다.

연착륙을 위하여 FRB는 1년간 금리를 7번 인상하여 300bp 인상하고 그 결과 1995년 2월 1일 금리가 6%가 되자 긴축금융정책을 종료하였다. 이후 경기 하강에 대한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자 연준은 1995년 7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3단계에 걸쳐 금리를 6%에서 5.25%로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해 미국경제는 1995년 말까지 완전고용하에 연착륙을 정교하게 달성하였다. 실업률은 5.6%였고 경제성장률은 3.2%였으며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3%였다. 이로 인해 그린스펀에게는 거시경제의 마술사(macroeconomic magician)라는 명성이 주어졌다.

5.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비개입 정책과 필립스곡선의 호응

미국경제는 1996년부터 눈부신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상황은 그 후 몇 년간 지속적인 호조를 보였다. 실업률은 미국경제의 자연실업률이 6%라는 종전의 상식을 뛰어넘어 1999년 12월에는 29년만에 가장 낮은 4.1%까지 하락하였다. 실질 GDP성장률은 1996년~1999년 동안 평균 4.5%를 기록했는데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넘어서는 성과였다. 연준은 일부의 금리인상 주장에도 ‘참고 기다리는 식’으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고도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임금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유가하락, 달러화 강세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① 임금요인 인플레이션의 완만한 상승

임금이 안정되었던 이유는 첫째, 근로자의 정신적 충격가설(trumatized worker hypothesis)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근로자들이 과거 장기간 계속된 불황기에 실직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취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기술의 진보가 가속화되면서 숙련기술의 주기가 짧아지고 직업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노동계층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되었다. 두 번째는 종전에 직접임금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간접임금(fringe benefit)이 1990년대 후반 이후 하락하거나 직접임금보다 느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교섭력이 약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비농업부문의 총생산에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1992년~1997년 동안 4%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전후 미국의 근로자들이 최대로 손해를 보았음을 나타내는데 반면에 기업의 이윤이나 자본이익은 증가하였다.

② 행운의 시대와 가격충격 : 1996년~1998년

1995년 봄부터 1998년 여름까지 진행된 달러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이 당시 세계경제의 둔화추세와 맞물려 비석유류 재화의 수입가격을 연평균 4% 정도 하락시켰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고 미국제품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강한 달러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효과를 넘어 나타난 유가하락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유가하락은 전반적인 에너지가격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수입가격과 에너지가격의 동반 하락은 명목임금의 상승요인을 둔화시킴으로써 기업의 비용 및 가격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③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법의 수정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ur Statistics)은 1995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CPI)작성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조정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1995년~1999년중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졌다. 1999년의 경우 조정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5%였으나 조정된 수치로는 1.9%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물가지수 산정방법의 수정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 및 의회에서 기존의 물가지수 산정방법이 상향편의(upward bias)를 가졌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물가지수 산정방법의 변경은 사회보장부분의 생계비 및 퇴직프로그램을 위한 지출규모를 축소하는 등 예산삭감의 명분을 가져다주었으며 임금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6. 연준의 저금리 정책과 주식시장의 호황

공급측면의 유리한 요인 등으로 인한 물가안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하여 연준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그린스펀은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진압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오를 조짐을 확인한 후 금리를 인상하지는 입장이

었다. 그는 "IT 산업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다같이 하락하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논지하에 그는 저금리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당시 중요한 대외적인 변수, 즉 1997년 하반기부터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냉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금리인상을 자제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1996년~1998년 중 총수요는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호황에 기인하였다. 주식시장의 호황은 총수요의 증가를 촉발하고 개인 저축률을 끌어내렸다. 주식시장의 호황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역시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7. 저금리 정책의 종료

1999년에 들어서자 그 동안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주도했던 공급측면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유가 상승, 컴퓨터가격의 상승 등으로 사라지거나 반전하면서 FRB는 저금리정책을 종료하고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1999년 6월 4.75%였던 연준 금리를 2000년 5월 6.5%까지 인상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두 번째 연착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반전에도 불구하고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위노동비용이 정체해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었다.

8. 생산성 증가와 컴퓨터 가격

1990년대 후반기 미국경제가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가일 것이다. 무엇이 생산성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왔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컴퓨터와 반도체산업에서의 기술향상이었다. 이러한 기술향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가격하락은 경제사회 전반의 컴퓨터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컴퓨터와

정보통신 장비의 가격하락은 투자 붐(1999년 GDP 대비 실질투자비율이 전후 최고 수준)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반면 이러한 첨단기술 투자의 일정부분은 1998년~2000년의 버블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 왜 생산성 증가가 임금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겪었던 실업에 대한 불안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성 상승기에 임금인상보다는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이적인 생산성 증가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9. 경이로운 사건 : 재정적자가 사라지다

연준이 금리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동안 재정상황은 급박하게 변하고 있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간에 예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었다.

1993년에 정부와 의회간의 예산합의는 1998년까지 재량적인 정부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재량적 지출을 축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국방비에서 축소되어 더 이상 국방비의 삭감이 불가능해지자 결국은 사회보장지출과 민간지출 영역에서의 삭감이 불가피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1998년에 미국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고, 클린턴은 앞으로 재정흑자가 지속되어 2015년경에는 공공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면 적자재정이 흑자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여건의 호전이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에 기여하였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변화 때문이다. 즉, 과세 가능한 소득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한 반면, 부과세 수당(fringe benefit)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고소득 납세자들의 상여금, 스톡옵션, 파트너십 소득과 같은 형태의 수입이 다른 계층의 소득보다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만 달러 이상 소득계층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14.5%에서 1998년 20.6%로 증가하였고 이들의 세금부담액 비중은 같은 기간 29.8%에서 39.8%

로 증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GDP 대비 연방 재정수입의 비중은 1997년의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1994~2000년중 약 2.5%포인트 증가했다.

1999년 11월 통과된 예산법에서는 사회보장 잉여계정을 별도의 부외예산(off-budget)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정정책의 규범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회보장 잉여계정에서 당분간 대규모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예산운용의 기준을 변경한 것은 향후 공공저축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의미한다. 2000년 예산협의 과정에서 사회보장 잉여계정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공화당은 감세를, 민주당은 재정지출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재정 흑자와 관련하여 당시 학계 등 지식층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대규모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과제로 떠올랐다.

10. 결론 : 경제정책을 위한 교훈

지난 10년간의 경제적 성과와 특징을 요약하면, 1990년의 예산합의는 충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기초가 되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긴축 재정정책과 그린스펀 의장의 저금리정책이 경제환경의 행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연준의 유연한 금융정책은 1995년 경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경제여건의 호전도 연착륙을 뒷받침하였다. 경제호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생산성의 증가였다.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정보기술산업의 호황은 총요소생산성의 증대와 자본심화에 기여하였으며,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주가는 1999년~2000년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요인 외에 간접임금(fringe benefit), 특히 건강보험비용이 1994년~1995년중에 급격히 감소하여 임금협상에서 긴장을 완화하였고 1995년~1998년중의 달러가치의 상승은 당시 국제원유가격의 인하와 더불어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물가지수 산정방식의 변화는 실질성

장물의 상향조정과 물가상승률의 하향조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긴축 재정정책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을 리드하였던 것이다.

고도성장과 주식시장의 호황은 연방재정적자를 급속히 감소시켜 1995년 1,640억 달러에 이르던 재정적자가 2000년에 2,360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경제정책을 위한 교훈

첫째, 긴축적인 정부지출이 저금리정책과 결합, 실질이자율을 낮춤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복음이 1990년대에는 더 원활히 작동하였다. 그러나 계량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1990년대 미국경제 성장의 동인은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이었다.

둘째, 1993년부터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한동안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채권시장에서 장차 재정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채권금리에 내재된 위험가중치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장기금리가 떨어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역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

셋째,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제도가 정부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1990년의 예산집행법은 재량적 지출에 대한 상한 설정과 더불어 경직성 경비의 증가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세입 증가를 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PAYGO절차) 적자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정부가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제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미세조정하면서 시의 적절하게 운용하고 당시 경제여건의 행운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주요국의 중앙은행 역할이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성장환경 조성에도 초점을 맞추므로써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다. 즉, 연준의 그린스핀 의장은 때로는 물가인상 조짐이 보임에도(예를 들어 1999년 말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2배가 됐지만) 고용안정 측면을 고려하여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등 유연하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경제여건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였다.

◆ 목 차

I. 서 론

II. 성공의 기반

가. 1990년 예산합의

나. 기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

다. 금융정책(Monetary Policy)

III. 정책효과의 시차와 FRB의 저금리 정책

IV. 재정정책의 전환점 : 1993년 예산합의

V. FRB의 연착륙 달성 : 1994~1996년

VI. FRB의 비개입(forbearance)정책과 필립스 곡선의 하향 이동

가. 임금상승률의 놀라운 하락

나. 행운의 시대와 가격 충격 : 1996~1998

다. 달러가치와 수입물가

라. 원유가격의 하락

마.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방법 개선

바. 임금 및 가격 충격의 영향에 대한 평가

사. 공급 충격에 대한 FRB의 검토

아. 행운의 시대와 수요 충격의 역할

VII. FRB의 비개입(forbearance) 정책의 종료

VIII. 생산성 상승과 컴퓨터 가격

가. 공급 충격의 영향 : 요약

IX. 1999년 이후의 금융정책

X. 재정적자의 극적인 반전

XI. 결론 : 경제정책을 위한 교훈

가. 요약

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는 다섯 가지 교훈

한국어판을 위한 서문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금융거래 및 조세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 ◆ 전 승 훈
- ◆ 2003. 12.
- ◆ 144p/7,000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시스템의 기본은 그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는 데 두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선 경제활동을 (1) 금융거래 (2) 재산운용 그리고 (3) 기업 및 자영업자의 회계관리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미국에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여 하며, 그 수단도 소액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주고받는 자가 기록된 개인수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거래의 내용이 은행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다. 한국과 같은 사채시장이 없고 금융거래는 거의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 또는 거래 상대방에 의해 거래 내용을 국세청(IRS)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1만달러 이상의 거래 또는 5천달러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타인에게 기본적으로 10달러(도박상금의 경우에는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불한 자는 그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끝으로, 개인의 대출상환 등 금융거래의 실적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그것이 개인 신용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둘째, 부동산 등 재산의 거래나 보유에 있어서도 위의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거래제도와 가격평가제도에 의해 투명성과 가격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거래 시장은 부동산 매물에 관한 사항 및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가 철저히 공개되고 원칙적으로 어느 중개인이라도 중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절차상, 쌍방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매매의 내용과 가격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대금의 수수도 해당 변호사가 수표의 형태로 받아 이를 별도(escrow) 계정으로 관리하여 나중에 당사자에게 정산해주고 있다. 완전경쟁적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실패매가격이 아닌 허위 가격을 신고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산세의 과표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매매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여건에서 지방정부 및 주정부를 거치는 평준화(equalization) 장치에 의해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 산정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이의 정직성을 담보하는 두 가지의 장치에 의하여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선, 기업의 모든 거래가 발행자와 수취인이 분명한 통화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소액의 현금거래 업종이 아닌 웬만한 기업이라면 회사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현금을 수수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모든 금융관련 일은 제도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직업인의 윤리와 책임이 아주 철저하여 부실한 회계관리나 감사가 발생하기 어렵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약간의 부실에 대해 소홀히 넘어갔을 경우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책임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이것으로 부족하여, 최근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진실성에 대해 CEO 및 CFO가 일반에 공개적으로 보증하게 하였다.

미국 시스템은 이상과 같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철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가 사후에 교정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

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과정, 그리고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납세신고 이후 자신이 선별적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세무당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세무공무원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있지도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부공무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모든 차들이 제각기 갈 곳을 향하여 달리고, 경찰이 다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에 딱지나 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후자의 정부의 사후 교정장치는 위의 투명성에 의한 자율정화작용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여, 정부가 사후에 잘못된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 시정하는 것이다. 이 교정장치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미국의 교정장치의 특징의 하나는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의해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치인, 변호사, 의사, 인기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가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지만 머리가 썩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도려내는 것이 미국인의 지혜이다.

미국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투명성=자율성=사후 교정장치'가 개인의 경제행위를 어떻게 유도하며,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개인으로서는, 이 시스템하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도리밖에 없다. 사업을 잘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신용은 은행의 거래실적과 납세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많이 내고 은행거래를 성실하게 하여 스스로 신용을 쌓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높은 효율성(efficiency)과 신뢰(trust)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우선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그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은 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 준다. 다음으로 자율성은 사회적으로 창의와 효율성을 높여준다. 끝으로 윗물부터 깨끗하게 하는

정부의 교정장치는 투명성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정화작용의 보루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높은 소득수준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부(富)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자율성이 최대한 신장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투명성, 자율성 및 사후 교정장치의 시스템이 그러한 조건을 구현함으로써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으로 하여금 높은 소득을 누리는 선진국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시스템은 고소득의 선진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우선 부의 정당성이 선진국처럼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의 형성이 너무 빨리 진행됐고, 그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율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율성은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투명성과 신뢰가 높지 못하여 항상 자율을 주창하지만 제대로 되지 못한다. 끝으로 사회적 신뢰와 화합의 측면에서 볼 때, 투명성과 사후 교정장치가 불완전하니 이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사 갈등구조는 이의 단적인 예이다. 이제 한국사회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철저한 금융거래 및 조세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과 공정한 사후 교정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I. 머리말

II. 미국의 금융거래 및 조세의 투명성 확보 시스템

1. 금융거래
 2. 재산의 평가 및 거래의 투명성
 3.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회계관리
-

4. 자율적 과세시스템

Ⅲ. 미국의 투명성 시스템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 미국의 금융거래 및 세정 시스템 구조
2.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면담자 명단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 ◆ 이형구·전승훈 編
- ◆ 2003. 12.
- ◆ 720p/150,000원

◆ 목 차

제 1 편 한국 경제의 성장·발전과 조세·재정정책

제 1 장 경제개발 여명기(1945~1961)

- 제 1 절 경제 개관
- 제 2 절 경제개발 여명기의 조세정책과 재정운용
- 제 3 절 경제개발 여명기의 금융·통화정책
- 제 4 절 경제개발 여명기의 산업·무역정책

제 2 장 종합경제개발의 출발(1962~1971)

- 제 1 절 경제 개관
- 제 2 절 종합경제개발 출발기의 조세정책과 재정운용
- 제 3 절 종합경제개발 출발기의 통화금융정책
- 제 4 절 종합경제개발 출발기의 산업·무역정책

제 3 장 중화학공업의 개발과 자력성장구조 실현 추구(1972~1978)

- 제 1 절 경제 개관
- 제 2 절 중화학공업의 개발과 자력성장구조 실현 추구기의 조세정책과 재정운용

제3절 중화학공업의 개발과 자력성장구조 실현 추구기의 통화금융정책

제4절 중화학공업의 개발과 자력성장구조 실현 추구기의 산업·무역정책

제4장 종합안정화시책의 추진(1979~1986)

제1절 경제 개관

제2절 종합안정화시책기의 조세정책과 재정운용

제3절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추진기의 통화금융정책

제4절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추진기의 산업·무역정책

제5장 민주화와 욕구분출(1988~1997)

제1절 경제 개관

제2절 민주화와 욕구분출기의 조세정책과 재정운용

제3절 민주화와 욕구분출기의 통화금융정책

제4절 민주화와 욕구분출기의 산업·무역정책

제6장 IMF STAND BY 협정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1998~2002)

제1절 경제 개관

제2절 IMF Stand by 협정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기의 조세정책과 재정운용

제3절 IMF Stand by 협정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기의 통화금융정책

제4절 IMF Stand by 협정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기의 산업·무역정책

제2편 조세 및 재정정책의 증언

제1장 경제개발의 여명기(1945~1961)

제1절 조세제도의 정비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2절 외국인조에 의존한 재정운용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2장 종합경제개발의 출발(1962~1971)

제1절 시대적 여건과 정책방향

제2절 투자재원의 동원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3절 경제개발과 재정

1.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의 역할
2. 당시주역들의 증언

제4절 산업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

1. 산업지원 현황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5절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과 공과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3장 중화학공업 개발과 자력성장구조 실현 추구(1972~1978)

제1절 시대적 배경과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1. 8·3 조치와 조세 및 재정조치
-

2. 1·14 조치와 조세 및 재정조치

제3절 개발지원 세정과 근대적 세제의 확립

1. 조세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국세기본법 제정
3. 종합소득세제도 전면 실시
4. 부가가치세제도 도입
5. 산업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6. 조세구조 개선
7. 조세원칙과 조세행정
8. 관세제도 개선

제4절 고도성장과 재정정책

1. 재정정책의 방향과 재정의 역할
2. 재정투융자와 중화학공업지원
3. 재정수지와 재정적자보전

제5절 국가안보와 자주국방력 배양

1. 자주국방 의지와 방위비 확충
2. 방위세 신설

제6절 식량증산과 농촌 근대화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7절 예산제도 개선과 재정운용

1. 예산제도의 개선
2. 재정운용

제8절 거품경제의 차단과 정책전환 논의 대두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4장 종합안정화시책의 추진(1979~1986)

제1절 개 관

제2절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추진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3절 안정기조하의 재정운용

1. 개 관
2. 예산개혁과 영점기준 예산편성방식의 도입
3.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의 동결
4. 1985년 이후의 적극 재정추진
5. 재정정책의 과제와 역할
6. 적자재정과 부채문제
7. 농업지원
8.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용
9. 재정정책에 대한 제언

제4절 조세정책 및 제도 개선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5절 금융거래실명제 추진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5장 민주화와 욕구분출(1987~1997)

제1절 개 관

제2절 민주화와 재정운용

1. 개 관
 2. 재정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3. 재정의 규모와 역할
 4.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 5. 농업지원
- 6. 재정과 타부문과의 연계관계
- 7. 외부압력과 자원배분
- 8. 예산제도 개혁
- 9. 예산작업 및 운용
- 10. 재정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제3절 조세정책

- 1. 개 관
- 2. 조세의 규모와 구조
- 3. 조세정책의 역할과 공과
- 4. 조세제도개선
- 5. 조세행정
- 6. 관세제도 개선

제4절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 토지공개념 도입

- 1. 개 관
-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5절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 1. 개 관
-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6장 IMF 협정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1998~2002)

제1절 개 관

제2절 외환위기와 재정정책

- 1. 개 관
 - 2.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 3.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증가
 - 4. 재정정책의 과제와 역할
 - 5. 농업지원
-

6. 재정과 타부문과의 연계관계

7. 재정 운용

제3절 조세정책

1. 개 관

2.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의 과제와 역할

3. 조세정책의 목표와 방향

4. 조세의 규모와 역할

5.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6. 조세정책의 중요성과 전문성

제7장 지방재정 및 세정

제1절 지방재정의 규모와 역할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2절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세원배분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3절 지방세제도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4절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5절 지방재정 및 세무행정

1. 개 관

2. 당시 주역들의 증언

제3편 한국경제의 조세·재정 운영 : 정책평가와 과제

제1장 경제개발의 여명기

- 제1절 대한민국 세법의 제정
- 제2절 전란기의 조세체제 변화
- 제3절 건국기 및 전란기의 재정운영

제2장 종합경제개발의 출발

- 제1절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의 선택
- 제2절 현대조세제도의 도입
- 제3절 경제개발을 뒷받침한 재정투융자
- 제4절 역금리체제의 도입

제3장 중화학공업 개발과 자력성장구조 실현 추구

- 제1절 경제발전 전략의 수정
- 제2절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 제3절 중화학공업발전을 위한 재정정책
- 제4절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8·3 긴급조치
- 제5절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제4장 종합안정화시책의 추진

- 제1절 종합안정화 전략의 선택
- 제2절 안정화시책의 주요 내용

제5장 민주화와 욕구분출

- 제1절 안정과 자율·개방정책의 후퇴
 - 제2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 도입
 - 제3절 한국금융회사들이 몰고온 국제금융시장 참여의 시행착오
 - 제4절 단일관세율제도의 도입
 - 제5절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대
-

제6장 IMF 협정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제1절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위기의 확산

제2절 한국정부의 대응과 성과

제7장 한국의 지방세정 및 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규모와 역할

제2절 중앙과 지방의 기능과 세원배분

제3절 지방세제도의 발전

제4절 지방재정조정제도

부 록

1. 연구과정 및 작업진행일정
 2. 조세·재정정책 연표(1945~2002년)
 3. 증언 및 정책평가 대담자 목록
 4. 대담자 설문지
 5. 연구인력 약력
-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 ◆ 배 준 호
- ◆ 2003. 12.
- ◆ 166p/7,000원

◆ 목 차

I. 서론

II. 연결납세제도 도입배경, 논의과정과 운영실적

1. 연결납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2. 도입과정상의 논의
3. 연결납세제도 운영실적과 평가

III. 연결납세제도의 구조와 개요

1. 기존 법인세와의 정합성 유지
2. 기본구조
3. 개요

IV. 연결납세 적용과 적용중지

1. 적용법인과 연결납세 적용 및 승인신청
 2. 연결납세 승인취소 및 적용중지와 관련 대응조치
 3. 연결사업연도
-

V. 연결소득금액, 연결납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1. 연결소득금액 계산방식
2. 세율
3. 연결법인세 개별귀속액
4. 연결법인간 거래와 손익처리
5. 연결결손금 이월공제
6.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수정(투자가액수정)
7. 자산의 시가평가 : 자회사의 연결적용과 연결그룹 가입
8. 신고 납부

VI. 연결납세제도의 개별적 논점

1.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
2. 감가상각비
3. 기부금과 교제비
4. 압축기장
5. 소득세액공제
6. 외국세액공제
7.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8.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이연손익 이입
9. 특별계정
10. 지방세

VII. 조세회피행위 방지

1. 조세회피행위 방지
2. 청색신고와 세무조사

VIII. 연결납세 적용시의 장단점과 적용 준비

1. 연결납세 적용시 장점
 2. 연결납세 적용시 단점
-

3. 연결납세 적용 검토

4. 연결납세 적용 준비

IX. 연결납세 시뮬레이션

1. 단년도와 복수연도

2. 이월결손금 보유와 시가평가과세시

X. 결론

참고문헌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 ◆ 김상헌·이영·김진영·민동기·사공 영
- ◆ 2003. 12.
- ◆ 320p/12,000원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사업평가 연구는 미국·영국·EU 등 외국의 평가사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사업대상 선정의 다양화, 평가의 집중 등을 위해 자체평가와 독립평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평가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정량적 평가지표의 개발 및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반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비 지원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은 국공립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지원은 대학의 규모에 비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논문 수로 평가한 성과가 연구비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연구비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효율성과 성과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비가 연구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시설비나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은 연구성과의 증대와 무관하거나 악화시킨다고 결론 짓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한 논문은 하수처리단가를 비교·분석하고, 처리장별 운영비용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용량의 과

다 등으로 처리용량이 비슷한 경우에도 처리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처리시설의 계열화 등을 통하여 운영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처리용량 등 공공성에만 치우쳐 효율적인 경영에 소홀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운영비용에 있어서 지역간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용을 각각 살펴보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공동규격 출하, 산지유통조직 연계 등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많을수록, 새로 설립된 유통센터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수익률은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 영향을 받고 투자비가 많은 처리장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매입가격을 낮추는 한편 판매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소 소장의 경영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경영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① 과학기술분야
- ② 교육분야
- ③ 환경분야
- ④ 농업분야



고령화 현상에 수반되는 사회경제 변수 및 의료지출의 변화

- ◆ 김종면·이철희·전영준
- ◆ 2003. 12.
- ◆ 232p/8,000원

1. 요약

1) 인구 연령구조 고령화에 따른 향후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최근 김종면·성명재(2003)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가구 소득분포가 자연대수 정규분포임을 밝혀 소득분포를 단 2개의 모수로써 파악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연대수 소득분포의 연령별 평균 m 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 변함을 밝혀 비교적 정확하게 소득분포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조세 정책과 사회보장 등의 분야 정책모의실험(policy experiment)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김종면·성명재(2003)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겼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우선 연령별 자연대수 가구소득의 평균 m 의 예측방법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즉 횡단면 연령-소득 곡선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한 분석에서 대부분의 경우 김종면·성명재(2003)에서 제시한 방법이 무난하다고 하더라도,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는 m 의 예측치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을 기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m 의 평균 절대잔차는 약 0.05 부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자연대수를 취하지 않은 소득으로 다시 환산하였을 경우 약 5%의 오차에 해당된다.

본고에서 찾은 또 하나의 결과는, 자연대수 소득분포의 표준편차 s 역시 m 과 유사하게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를 평균 m 의 예측과 더불어 사용하였을 때, 현재 21년밖에 축적되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40여년에 걸친 세대별 생애 연령-소득 곡선은 물론, 연령별 소득분포를 모두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소득분포 전체를 연령별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각 소득분위까지 세밀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결과 횡단면 연령-소득 곡선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최고소득 연령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소득분포의 특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으며, 세대별 생애 연령-소득 곡선에서는 동 현상이 관측되지 않을 것임도 보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연령별 소득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가구주 연령분포를 모두 알 때 전 연령 전 가구 소득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 연령별 소득분포의 전망과 가구주 연령분포의 전망을 대입하면 전 연령 전 가구 소득분포를 구하고 이로부터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가늠하는 지니계수 역시 산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분포 전망을 2020년까지 구하여 향후 지니계수 전망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로는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변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총가구 소득의 분산이나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악화될 것이라는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2) 사회지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남성 경제활동 변화와 원인

이 연구는 1955년에서 2000년까지 한국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추계하고 고령남성의 노동시장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60세 이상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65년 40~44%에서 1995년 52~

55%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 패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령남성의 급격한 경제활동참가 감소를 경험한 대다수 OECD 국가들의 역사적인 경험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고령남성의 노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기간에 대한 결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신빙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이후의 고령노동의 노동시장퇴출이 경기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거의 대부분 농촌지역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남성의 노동참가율은 1965년에서 1995년 사이 46%에서 7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시 지역에 거주하는 같은 연령의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불과 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마찬가지로 농가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성들의 노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47%에서 78%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비농가에 거주하는 고령남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고령남성의 노동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족 수, 주택소유형태, 도시거주 여부, 거주행정구역의 고령화 정도와 농업인구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거주지역의 고령화 정도를 보여주는 시·군별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고령남성의 노동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였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분류한 소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1970년과 1980년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도 거주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산업화과정 동안 농촌 청·장년의 도시이주가 가져온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1965년 이후 농촌 고령남성의 노동참가율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혀준다.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남성에 대해서는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교육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 이래 줄곧 결혼상태에 있는 고령남성은 그렇지 못한 같은 연령층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의 확률이 훨씬 높았다. 가족의 수는 1980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그 관계가 바뀌어 근래에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에 의한 고령부모 부양이 줄어드는 대신 늦은 연령까지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인구는 농촌거주 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았다. 끝으로 거주 행정구역의 비농업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았으나,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던 것이 관찰된다.

1997년 이후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사정 악화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1997년 이후의 하락세가 설사 단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농촌고령남성의 노동참가율이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인 만큼 그동안 전체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주요요인이 되어왔던 농촌고령인구의 경제활동증가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농촌인구고령화가 농촌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매우 작은 상태이다. 둘째로 농촌거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도시인구 참가율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상대적인 감소는 전반적인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요인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교육수준, 도시거주인구비중, 비농업인구비율 등의 변화는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60~7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어도 20% 가량 낮출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의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타 퇴직소득의 증가는 여가에 대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기술과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는 고령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이들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3)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귀착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세대별 귀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행의 건강보험 재정구조, 지난 수 년간의 건강보험 재정구조의 변천,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의료비 지출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현행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세대별 재정부담 귀착, 건강보험 관련 각종 정책대안, 그리고 최근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행의 건강보험제도와 조세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대와 세입기반의 약화, 그리고 소득상승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대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의 상대적 비중 등 건강보험 세입구조에 상관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건강보험 급여대상 범위의 확대, 특히 중증진료와 장기요양 등에 대한 적용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보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에 대한 급여확대와 경증진료에 대한 급여축소를 통한 재정중립적인 정책 개편이 가능하며, 이는 대규모의 세대간 재분배를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치료에 대한 진료비 감소를 그 목적으로 하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상당수준의 지출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원진료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이 제도의 효과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2000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수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분업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대폭적인 증가가 약제조제에 대한 급여 증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통합에 의한 건강보험료 수입증대는 소폭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불가피하게 증가할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 억제 문제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유인구조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요측면에서는 경증진료에 대한 급여축소, 공급측면에서는 포괄수가제도와 같은 사전적 지불보상제도(prospective payment)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와 국고지원금 증대 방안들은 세대간 재정부담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국고지원금 비중의 증대는 오히려 건강보험 급여와 재정부담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요시 적기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부담의 미래세대로의 전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책시사점

본 보고서의 소득분포에 대한 논문은 소득분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격상 기초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나 시사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분포와 연관된 정책분야의 거의 모든 연구가 부딪혀 왔던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소득분포나 소득분배와 연관된 대부분의 정책 연구 및 분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정책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꼽자면 노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소득분배의 체감 형평성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지니계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지니계수 이외에도 형평성의 지표들을 다양하게 참조하여 소득분배 구조변화의 성격을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50대 초반 이후 가구소득이 정체되거나 상대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포

의 분산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고령층의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므로 저소득층 정책과 고령층 정책 간에 긴밀한 연계성이 있음을 상기하게 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관한 연구는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은 물론 재정 전반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히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향후 10년 동안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역시 점차 규모가 줄어가는 농촌 인구에 의해 거의 설명되고 도시의 고령층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미미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모색은 보다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장 장기재정 안정화 대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껏 상정했던 상황과는 다른 가정을 바탕으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의 세대간 귀착에 대한 연구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현행의 건강보험제도와 조세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며, 미래세대의 재정부담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의 상대적 비중 등 건강보험 세입 구조에 상관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억제와 국고지원금 증대는 세대간 재정부담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국고지원금 비중의 증대는 오히려 건강보험 급여와 재정부담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요시 적기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책 중 상당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건강보험의 보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에 대한 급여확대와 경증진료에 대한 급여축소를 통한 재정중립적인 정책 개편이 가능하며, 이는 대규모의 세대간 재분배

를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치료에 대한 진료비 감소를 그 목적으로 하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상당수준의 지출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원진료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이 제도의 효과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2000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수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분업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대폭적인 증가가 약제조제에 대한 급여 증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통합에 의한 건강보험료 수입증대는 소폭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 목 차

I. 서 론

II. 인구 연령구조 고령화에 따른 향후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2000~2020)

1. 서론
2. 소득분포함수의 특성
3. 자연대수 소득의 평균 m 의 추정
4. 자연대수 소득의 표준편차 s 의 추정
5. 소득분포의 변화 분석
6. 맺음말

III. 사회지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남성 경제 활동 변화와 그 원인

1. 머리말
 2. 사회지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본 고령남성 경제활동상황
-

3. 자료와 경제활동참가의 정의
4.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 추이
5.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 결정의 분석
6. 농촌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요인
7.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미래전망
8. 맺음말

IV.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귀착: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1. 서론
2. 건강보험 재정구조
3. 세대간 회계의 산출방법
4. 자료의 출처와 세대간 회계의 산출과정
5. 분석결과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건강보험 순재정부담

(미래세대의 출생시점 현재가치 기준)

부록 II. 국고지원금 부담 총액 및 성별·연령별 추이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 ◆ 장 근 호
- ◆ 2004. 6.
- ◆ 624p/20,000원

◆ 목 차

제1편 총론

- I. 경제 및 사회환경
- II. 조세체계
 - 1. 미국 조세체계 연혁
 - 2. 미국 연방세
 - 3. 미국 지방세
- III. 세수구조 및 세입
 - 1. 정부 총수입 동향
 - 2. 연방정부 수입 동향
 - 3. 지방정부 수입 동향

제2편 개별 세법

- I. 조세절차법
 - 1. 서론
-

2. 조세의 부과
3.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4.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5. 조세의 징수
6. 세무조사제도
7. 조세불복제도
8. 가산세(금)와 조세범 처벌
9. 회계방식과 과세연도
10.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II. 개인소득세

1. 서론
2. 총칙
3. 과세소득
4. 비과세소득
5. 자산소득의 과세
6. 소득세 세율과 세액결정
7. 신고와 납부
8.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9.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III. 법인세

1. 서론
 2. 총칙규정
 3. 과세소득
 4. 비과세소득
 5. 법인세 세율, 신고 및 납부
 6. 기업 매수·합병 및 분할
 7. 양도소득
-

8. 파트너십(Partnership)
9. S 주식회사
10. 배당과 청산소득
11. 연결납세제도
12. 이중과세방지제도
1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IV. 소비세

1. 미국의 소비세 체제
2.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es)
3. 기타 지방정부 소비세
4. 연방정부 소비세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V. 미국의 유산 제세와 관련 소득세

1. 서언
2. 유산세(Estate tax)
3. 증여세(Gift tax)
4.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GST) Tax)
5. 유산과 유산신탁기금 소득세(Estate and Trust Income Tax)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VI. 재산세

1. 개요
2. 뉴욕시 재산세
3. 매릴랜드주 재산세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VII. 국제조세

1. 개요
-

2. 미국인 등에 대한 해외소득 과세
3. 비거주 외국인(회사)
4.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제도
5.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
6. 국제조세협약
7. 기타
8.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VIII. 결론

1. 미국의 조세체계
2. 세목별 특성
3. 중요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 ◆ 박 정 수
- ◆ 2004. 6.
- ◆ 434p/15,000원

◆ 목 차

I. 서 론

1. 영국의 조세관리(tax management) 개요
2. 영국 정부의 세입현황
3. 최근 영국의 주요 세법개정 개요
4. 재정법(Finance Act): 연간세법

II. 영국의 평가제도

1. 평가관련 과세체계의 개요
2. 평가기구 및 조직과 운용

III. 소득세제도

1. 소득세제도의 개요
 2. 과세소득
 3. 비과세소득
 4.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5. 소득세율
 6. 소득세 행정 및 기타 관련 제도
-

7. 정책시사점

IV. 기업과세제도

1. 개인사업, 동업 또는 유한회사
2. 법인 형태인 경우
3. 정책시사점

V. 국제조세

1.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기초
2. 국제조세업무

VI. 부가가치세제도

1. 부가가치세제 개요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세 행정
4.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 비교와 정책시사점

VII. 상속세

1. 서론
2. 과세대상 및 면세
3. 상속세 행정
4. 정책시사점

VIII. 개별 소비세제도

1.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세(Aggregates levy)
 2. 주세(Alcohol tax)
 3. 항공여객세 (Air passenger duty)
 4. 에너지환경세(Climate change levy)
 5. 도박세(Betting and gambling duties)
 6. 보험 프리미엄세 (Insurance premium tax)
-

7. 쓰레기 매립세(Landfill tax)
8. 석유세(Petrol tax)
9. 담배세(Cigarette tax)
10. 자동차세(Vehicle excise duty)
11. 정책시사점

IX. 지방세제도

1. 카운슬세(Council tax)
2. 국제형식의 재산세: 비주거 레이트(Non-domestic Rate)

X. 자본이득세제도

1. 서론
2. 과세대상
3. 세율과 적용
4. 정책시사점

XI. 인지세(stamp duty)

1. 연혁
2. 세율과 과세대상
3. 인지세 과세범위와 공제
4. 정책시사점

XII. 영국의 조세절차법

1. 서론
2. 과세절차
3. 행정불복심사절차
4. 조세소송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영국 통계

- <부록 2>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 <부록 3> 1967년 자본이득세 시행규칙
 - <부록 4> 1988년 자본이득세법
 - <부록 5> 상속세법
 - <부록 6> Schedule-Intangible Fixed Assets(2001. 11. 27)
 - <부록 7> 1994년 부가가치세법
 - <부록 8> 소득 및 법인세법
 - <부록 9> 영국 석유 생산에 대한 과세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

- ◆ 국 중 호
- ◆ 2004. 6.
- ◆ 430p/15,000원

◆ 목 차

I. 총 론

1. 경제사회의 구조변화
2. 일본재정의 구조변화
3. 현행 일본의 조세체계
4. 일본 주요 세목의 비중추이

II. 조세절차법

1. 서론
 2. 납세의무와 납세기한
 3. 조세의 부과
 4. 납부 및 징수절차
 5. 주요 세목의 법정 납기함과 납세의 유예·담보
 6. 세무조사제도
 7. 조세 불복심사제도
 8. 가산세와 연체세·이자세
 9. 조세범칙의 단속
-

10. 기타
11. 시사점

III. 일본의 소득세

1. 소득세의 역사개관과 부담상황
2. 납세의무자와 納稅地
3. 소득세법상의 소득분류 및 소득계산
4. 소득공제제도
5. 세율구조와 세액의 계산
6. 신고와 납부
7. 소득세액 계산의 예시
8. 정책시사점

IV. 일본의 법인세

1. 법인세의 역사개관 및 성격
2. 총칙규정
3. 법인과세의 세수추이
4. 법인과세의 세율구조
5. 법인세의 부담조정
6. 조직재편 세제
7. 충당금·준비금 및 감가상각제도
8. 일반법인 이외의 법인과세
9. 조세특별조치와 교제비과세제도
10. 기부금 세제와 압축기장
11. 신고 및 납부
12. 정책시사점

V. 일본의 소비세

1. 소비세 도입 이전의 소비과세
-

2. 소비세의 창설배경
3. 소비세 구조와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5. 비과세거래 및 면세거래
6. 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세액공제제도
7. 소비세의 신고·납부
8. 정책시사점

VI. 일본의 상속세·증여세

1. 기본 구조 및 과세현황
2.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3. 과세가격의 계산과 재산평가방법
4. 공제제도 및 과세등급
5. 상속세의 계산
6. 증여세
7. 신고와 납부
8. 최근의 상속증여세 개정 동향
9. 정책시사점

VII. 일본의 재산과세: 고정자산세

1. 일본의 재산과세와 고정자산세 개요
 2. 총칙규정
 3. 재산가치의 평가
 4. 세율 및 세액계산
 5. 비과세 및 감면
 6. 신고와 납부
 7. 시사점
-

VIII. 일본의 국제조세제도

1. 과세권의 경합과 국제조세
2. 일본의 국제조세제도 개략
3.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외국세액 공제제도
4.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5. 이전가격세제
6. 과소자본세제
7. 외국자회사 합산세제: 조세피난처대응세제
8. 조세조약 및 현황
9.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IX. 일본의 기타 조세

1. 기타 조세의 종류
2. 기타국세
3. 고정자산세 이외의 지방세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X. 시사점 정리

1. 조세절차법
2. 개인소득과세
3. 법인소득과세
4. 소비세(부가가치세)
5. 상속증여세
6. 자산과세
7. 국제조세
8. 기타조세

참고문헌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

- ◆ 안창남
- ◆ 2004. 6.
- ◆ 318p/13,000원

◆ 목 차

I. 총론

1. 경제 및 사회 환경 편
2. 불어권 국가연합의 현황
3. 조세체계
4. 조세 및 국가부담률
5. 세수구조 및 세수입
6. 조세행정체계

II. 개별세법

1. 조세절차법
 2. 소득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5. 주세
 6. 상속 및 증여세
 7. 재산세
-

8. 국제조세

Ⅲ. 프랑스 세제가 우리나라 세법 및 세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 ◆ 김 유 찬
- ◆ 2004. 6.
- ◆ 338p/13,000원

◆ 목 차

제1편 총론

I. 독일의 사회 및 경제환경

1. 독일의 사회환경
2. 독일의 최근의 경제상황

II. 조세체계(국세/지방세, 직접/간접세, 일반/목적세 등)

III. 국가할당률 및 조세부담률

IV. 세수구조 및 세수입

1. 전체적인 재정수입 구조
2. 조세수입

제2편 개별 세법

I. 독일의 국세기본법(조세절차법: Abgabenordnung)

1. 서론
-

2. 조세부과의 원칙
 3.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
 4. 조세의 부과
 5. 조세의 징수
 6. 세무조사제도
 7. 조세불복제도
 8. 가산세와 가산금
 9. 조세범처벌법
 10. 기타: 구속확언(verbindliche Zusage)제도
 11.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
- <부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회계감사 의무
<부록> 2000년도 독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부록> 독일 국세기본법의 목차

II. 독일의 소득세(Einkommensteuer)법

1. 서론
 2. 총칙규정
 3. 과세소득
 4. 비과세소득
 5. 소득세의 세율 및 세액결정방식
 6. 신고납부 및 징수
 7.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8. 원천징수제도
 9.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
- <부록> 독일 소득세법의 목차

III. 독일의 법인세(Koerperschaftsteuer)법

1. 서론
 2. 총칙규정
-

3. 과세소득
 4. 비과세소득
 5. 법인세의 세율, 발생, 신고 및 납부
 6. 기업합병과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
 7.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8.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9. 청산소득 및 청산소득과 유사하게 과세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10. 부당행위계산(transfer pricing)
 11. 연결납세제도
 12. 이중과세방지제도(법인세의 주주단계의 공제)
 13. 기타
 14.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
- <부록> 독일 법인세법 목차
- <부록> 주요 조문 번역문
- IV. 독일의 소비세제도
1. 부가가치세(Umsatzsteuer)
- <부록> 독일 부가가치세법 목차
- <부록> 주요 조문 번역문
2. 독일의 기타 소비세제도
- V. 독일의 상속증여세(Erbchaft-und Schenkungsteuer)법
1. 서론
 2. 총칙규정
 3. 과세등급 및 세율
 4.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규정
 5. 비과세 및 감면
 6. 신고와 납부
 7. 기타: 최근 상속증여세법의 개정 동향
-

8.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

<부록> 독일 상속증여세법 목차

<부록> 주요 조문 번역문

VI. 독일의 재산세(Vermögensteuer)제도

1. 부동산세(Grundsteuer)

<부록> 부동산세법의 목차

2. 부동산취득세(Grunderwerbsteuer)

<부록> 부동산취득세법의 목차

3. 자동차세(Kraftfahrzeugsteuer)

VII. 독일의 국제조세제도

1. 서론: 국제조세의 체계와 법원

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국내세법의 규정

3.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관련 규범

4. 대외조세법(Aussensteuergesetz)

5. 외국세법

6. 독일이 맺은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VIII. 기타: 독일의 영업세(Gewerbsteuer)법

1. 서론

2. 과세대상 기업

3. 납세의무자

4. 과세소득

5. 영업세 계산금액의 분할

6. 납세의무의 발생, 납세신고 및 징수

참고문헌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전택승
- ◆ 2004. 8.
- ◆ 258p/10,000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추진 과정과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식 PART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PART는 사업성적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를 예산에 연계하는 단계에서 부처와 예산처 간 의견조율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게 해 주며, 사업성적을 예산에 연계해 줄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수십 년의 예산배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과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획예산처 예산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배분을 하는 담당자가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나라식의 PART에 담으면 된다. 물론 유사사업 간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을 사업의 목표, 추진수단, 대상과 성과 등에 따라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된 사업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식의 PART가 균형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평가시에 외부평가와 서베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연구개발사업의 성

과는 정량적인 지표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다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외부평가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계량적인 평가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외부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영국은 부처의 성과 계획서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보다 사업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물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부처의 장관과 대통령 간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장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처운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Top-down 방식으로 주어진 재원의 목표에 맞추어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이나 재정적,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보다 정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성과평가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평가는 부처가 중앙에서 주어진 지침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업평가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평가의 지침서를 만들고, 사업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제도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각 부처는 기존의 업무 이외에 성과평가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으로, 자칫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와 각 부처의 장관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성과관리제도 추진의 의견조율 채널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서 론
2. 성과평가 관련 제도와 성과관리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평가와 시사점
4. 2003년 성과관리제도

III.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서 론
2. 미국의 GPRA
3. 영국의 성과중심 재정개혁
4. 뉴질랜드의 산출예산제도
5. 기타 국가의 성과주의
6. 거시적 관점에서의 성과주의의 국제비교
7.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 부록 1. 사업평가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부록 2. 2003-06 SERVICE DELIVERY AGREEMENT
부록 3. 2003-06 PUBLIC SERVICE AGREEMENT
부록 4. AUTUMN PERFORMANCE REPORT
-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관한 이해

- ◆ 전승훈 외
- ◆ 2004. 9.
- ◆ 384p

본 보고서는 전승훈(2003)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대한 의식적 바탕과 투명성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미국 사회의 경제적 자유와 투명성의 의식적 토양을 미국인의 개인중심주의(individualism)라는 가치관으로 보고,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경제적 자유와 투명한 거래제도가 발전될 수 있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네 가지 측면, 즉 금융거래, 부동산 시장, 조세행정 및 복지제도의 운영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감사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과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의 실제 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미국의 장점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고 적용 가능한 운용규정을 마련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연방금융감사국이 이 법령의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은행은 본 법령의 시행을 위해 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와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의무를 진

다. 금융감사국은 수상한 거래보고의 요건, 요주의 위험분야, 자금세탁의 유형, 감사의 절차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운영요령을 가지고 요주의 은행에 대한 감사 등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은행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민간의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의 소유·등기·평가·조세·모기지에 관한 제도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및 평가가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모든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부동산 거래의 내용과 재산의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와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고, 부동산의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고 우리 처럼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셋째, 미국의 소득에 대한 조세행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소득세제도는 포괄적 소득을 대상으로 '자기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기부과과세제도하에서 납세순응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납세순응 확보활동(tax compliance activity)의 내용과 그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후 조세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섯 가지 제도적 장치, 곧 자료신고서(Information Returns), 세무조사(Examination)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화된 조세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세행정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율성과 권익을 철저히 존중하는 동시에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미국이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복지제도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복지지출은 이를 아주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의 수혜자는 점점 일하지 않고 받는 공짜소득을 받는 데 익숙하게 되어 일할 의욕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주정부 빈곤가정임시지원프로그램

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빈곤층의료보조(Medicaid), 식권(Food Stamp) 그리고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프로그램인 사회보장생활보조금(Social Security Supplemental Income) 제도가 복지의 사기와 복지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아울러 빈곤가정임시지원프로그램(TANF)을 예로 근로의욕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동 프로그램은 수혜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대부분의 수혜자는 현금보조를 2년간 받은 후에는 근로나 직업훈련을 하여야 하며, 이동의 수에 비례하여 수혜금을 주었던 것을 수혜를 받는 동안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수혜액을 올려주지 않도록 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로 근로로 자립하는 저소득 가정에 혜택(credit)을 주어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지 수혜자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근로에 종사하고 싶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의 의식적 바탕 그리고 주요 투명성 제도에 대한 구체적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 사회의 개인중심주의적, 수평적 가치관의 바탕에서 추구된 경제적 자유와 투명성이 공동체 또는 수직적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의식적 토양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있음을 통하여 경제적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제도적 핵심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하에서 부동산의 고평가와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분배에 대한 신뢰성과 부(富)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서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미국 복지제도가 오랜 역사를 두고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수정·보완을 거쳐왔음은 복지프로그램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초기단계의 한국으로서는 귀감으로 삼아야 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 자유와 투명성을 갖추어 창의적이고 화합적인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느냐의 능력에 달려 있다.

◆ 목 차

-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관한 이해 : 전 승 훈
 - 경제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윤리 : 장 석 정
 - 은행비밀법/자금세탁방지 운영해설 : 이 상 섭
 - 미국 부동산 거래·평가 및 과세의 투명성 : 김 선 응
 - 소득신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장치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 : 양 영 용
 - 복지제도의 운영과 투명성 : 강경희·이봉수
-

재정연구



- ◆ 2003年 7月
- ◆ 100p/5,000원

- 1990년대 전·후반기의 소득세 부담률 변화의 요인별 효과 분리추정에 관한 연구/성명재

일반인들은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더 높아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면 과세당국이 지나치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고 비난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경감이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대 효과를 상쇄해 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소득세 실효세부담은 상승한다.

그렇지만 세법개정을 통한 세감감 효과가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더라도 평균 실효세부담률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소득세 경감이 부족하여 납세자들의 실질소득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소득분배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거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신고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종종 발생할 수 있다.

1990년대 전반기(1992~1996년)에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3.4%에서 3.0%로 하락하였다. 이는 소득증가에 의한 세부담 증가효과보다 소득세 경감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기(1997~2001년)에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3.3%로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하반기에는 소득증가에 의한 세부담 증가효과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소득세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실효세율이 상승한 것은 상당부분이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에 따른 고소득층의 실질세부담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1990년대 하반기에는 소득세 경감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형평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진권 · 임병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1991년, 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형평성 종류별로 분해해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비교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높으나, 절대 세부담을 나타내는 평균소득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를 형평성별로 분해해 보면,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너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소득세제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은 1991년과 1996년의 두 시점을 비교해 볼 때,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1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수직적 형평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1996년에 더욱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1991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시사점으로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김정완**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성장과 지역귀착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지역성장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경제 수준 측정의 유일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생산과 귀착은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職住分離 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양자간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역생산 지표인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귀착

지표인 예금액·가계소비액·지방세수 등의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입이 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부가가치가 지방에서 서울로, 인접도에서 광역시로 유출되어 생산과 귀착의 불일치라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빈익빈 부익부라는 역진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정책은 공공부문의 양대 원리인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 Interest Group, Government Structure and Public Expenditure/
김상헌

그동안 정부의 형태와 지출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는 등한시 되어왔다. 재정지출이 큰 지방정부가 지출수준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형태와는 다른 정부형태를 선택할 경우 자기선택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단순한 회귀분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은 기존문헌에서 소홀히 되었던 자기선택문제를 고려하여 정부형태가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연구와는 달리 미국 카운티 정부형태의 개혁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03年 12月
- ◆ 140p/6,000원

- 직접세와 간접세 인하의 지역경제 성장효과 비교: CGE모형의 정태·동태분석/지해명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CGE모형 분석을 통하여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의 변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수요측면에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에는 기여하는 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인하는 단기·중기적으로 소득세·법인세의 인하에 비해 지역의 생산기반을 보다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세의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중립성 가설이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첫째, 직접세와 간접세의 조합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다. 둘째, 낙후지역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안정장치로서 공급측면에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 지역발전 수단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그 수단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점을 제시하였다.

-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추정모형의 분석/유승훈

조건부 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CVM 서베이로부터 얻게 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행동을 모형화할 때, 모수 추정치를 비일치적으로 만들어 평균 지불의사액 추정치를 왜곡하는 무응답 편익과 표본선택 편익의 문제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두 편익은 표본 내에서의 무응답 때문에 발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CVM을 적용하여 수집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to-pay) 방정식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일치적인 모수 추정치와 불편 WTP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모형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WTP 방정식을 추정하며 이 결과를 무응답 편익과 표본선택 편익이 없다고 가정된 모형으로부터의 결과와 비교한다. 표본선택모형은 무응답 편익과 표본선택 편익이 존재할 때도 일치적이므로, 두 결과 사이의 차이는 무응답 편익 또는 표본선택 편익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 수질 개선정책의 편익추정과 관련된 DBDC-CVM 서베이에서 수집된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편익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정한 결과를 보고한다. 검정결과, 무응답 편익과 표본선택 편익이 모두 발견되었다. 이 두 가지 편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선택모형을 적용한 결과, 두 편익을 보정하지 못하게 되면 제안된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무려 54.64%나 과대추정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무응답 편익 혹은 표본선택 편익이 존재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DBDC-CVM 표본선택모형이 일치적인 모수추정치와 편익없는 후생 추정치를 제공하면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國際的 租稅 非中立性 測定에 관한 研究 - 우리나라와 G7 國家의 個人 포트폴리오 投資를 중심으로/이경근

『자본수출의 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과 『자본수입의 중립성(Capital Import Neutrality)』은 국제조세정책의 중립성 및 효율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어느 국가의 조세제도나 정책이 그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중립성과 효율성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화하는 연구는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King-Fullerton이 개발한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 산정을 위한 경제학적 모델에 기초를 두고 국가별 자본수출의 비중립성과 자본수입의 비중립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법을 그 이론적 토대와 함께 제시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2000년도 말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G7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경우의 국가별 자본수출 및 자본수입의 비중립성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독일·캐나다가 비중립성이 가장 높고, 일본·이탈리아·프랑스가 비중립성이 낮으며 우리나라의 비중립성은 이들 국가 중 평균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2001년부터 재 실시한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의 자본수출 및 자본수입의 비중립성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았는바, 국공채 투자와 관련한 비중립성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증대되었으나 주식투자에 관한 비중립성은 그 이전보다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국가간의 조세정보 교환비율의 변동이 국제적인 조세 중립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 2003年 8月
- ◆ 168p/6,000원

● 한계세율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노현섭 · 서갑수 · 서종길

한계세율은 자금조달 의사결정, 자본비용의 계산, 보상의사결정, 과세증권과 비과세증권 간의 상대적인 자산가격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한계세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계세율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재무자료(KIS-FAS)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을 측정한다.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한계세율의 대체추정치에 비하여 합리적인 한계세율의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 어느 대리변수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에는 완전예측 한계세율, 시뮬레이션 한계세율, Manzon 한계세율 등 3 가지 한계세율 측정치와 법정한계세율, 과세소득 더미변수,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삼분변수와 4분변수 등 5가지 더미변수, 그리고 평균세율, Zimmerman 세율 등 2가지 유효세율 측정치 등이 있다.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진실한' 한계세율을 예측하는 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예측 한계세율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한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다른 대리변수에 비하여 예측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레버리지가 기업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System-GMM을 이용한 상장제조기업 패널 분석/조삼용·신선우·이훈현

본 연구는 1981~2002년 기간 중 계속 상장된 389개 제조기업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레버리지가 기업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의 동태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추정하기 위해 Dynamic System GMM 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추정 결과는 투자에 대한 레버리지의 영향이 분석대상기간 동안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성장기회가 낮은 기업(토빈q가 1보다 작은 기업, 매출증가율 하위 25%기업, 총고정자산증가율 하위 25%기업)일수록 더 큰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nsen(1986)과 Stulz(1990)의 부채에 의한 대리인비용의 감소효과 이론과 일치한다. 즉, 추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한 기업은 부채사용이 높을수록 무리한 기업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Myers and Majluf(1984)의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회와 성장기회가 낮은 기업에서 대리인비용의 감소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무선 데이터 통신 과금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김정유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용시간에 따라 과금하는 회선과금방식과 정보이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패킷과금방식의 시장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주된 결론은 패킷과금방식이 도입되면, 정보이용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상승할 것이나, 총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회선과금방식과는 달리 패킷과금방식은 정보전송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텍스트 파일보다 높은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전송의 경우에는 패킷과금방식으로의 선회가 멀티미디어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멀티미디어 수요를 진작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혼잡이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만 국한되며, 혼잡의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재정포럼



2003년 1월호
(통권 제79호)

1. 권두칼럼

음식문화와 새로운 경제질서/송대희

2. 현안분석

1) 강원도 카지노세 논의배경과 도입 방안/김정훈

2)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김현아

3)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김진수

3. 해외동향

일본 소득과세의 경제효과/국중호

4. 전국 대학생 현상 논문 공모 우수작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김선중

5. 정책흐름

1) 2003년 1월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2002 한국의 사회지표

6. 재정통계

중앙재정 V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희망을 키우는 경제를 위



2003년 2월호
(통권 제80호)

1. 권두칼럼

부동산투기와 세제개편의 과제
/ 조주현

2. 현안분석

- 1) 기금의 투자적 성격 -계약성과 영향력- / 전택승
-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분류/박기백
- 3) 선박 톤세제도 관련 논의/손원익

3. 정책흐름

- 1) 2003년 경제운용방향
- 2) 최근 주요국의 연금제도 개혁동향
- 3)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4) 200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운용계획 및 쌀소득보전기금운용계획

4. 재정통계

중앙재정 VI편

5.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좋지만 외

6. 권말부록

2002년 총목차



2003년 3월호
(통권 제81호)

1. 권두칼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나성린

2. 현안분석

- 1) 우리나라와 OECD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비교/ 권오성
- 2)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노영훈

3. 정책토론

- 1)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 2)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4. 정책흐름

- 1) 2003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 경비율 신고 안내

- 2) 200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3) 2002년 국세수입 실적
- 4) 2003년도 기획예산처 현안 및 주요정책 과제

4. 재정통계

중앙재정 VII편

5.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노무현정부의 세정개혁 기대와 불만 함께 따져봐야 외



2003년 4월호
(통권 제82호)

1. 권두칼럼

SK의 비윤리적 교훈/최용선

2. 현안분석

- 1)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김종면
- 2)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소득분배 구조의 현황/성명재
- 3) WTO DDA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정재호

3. 해외동향

독일의 상속증여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김유찬

4. 정책흐름

- 1)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 2)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3) 2003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

- 4) 외국의 재정분권 동향과 시사점
- 5) 국세청 혁신방향

4. 재정통계

중앙재정 VIII편

5.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적자재정 말할 때인가 외



2003년 5월호
(통권 제83호)

1. 권두칼럼

포괄주의 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윤세리

2. 현안분석

- 1)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도농간
소득비교/이명현
- 2) 미국조세제도의 역사적 흐름과 시
사점/현진권
- 3) 국제적 탈세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최준욱

3. 정책토론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면방안

4.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4. 정책흐름

- 1)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 2) 성과관리제도 시행방향
- 3) 2003년도 재정운영 등 현황업무
- 4) 2003년 5월 1일부터는 내집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자
- 5) 2001년도 지방세 최종징수실적

4. 재정통계

중앙재정 XI편

5.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부동산 과표, 현실성 있게 고쳐야 외



2003년 6월호
(통권 제84호)

1. 권두칼럼

참여정부의 국세행정방향/김종상

2. 현안분석

- 1)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방간 재정 관계 변화와 정책시사점/안종석
- 2)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정재호
- 3)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 /박기백

3. 정책토론포트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4.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5. 정책흐름

- 1) SOC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 2)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3)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
- 4) 2002회계연도 정부결산
- 5) 투기지역 지정 확대
- 6) 2003년 추경예산(안) 편성

6. 재정통계

지방재정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율 내리고 감면 줄여야 외



2003년 7월호
(통권 제85호)

1. 권두칼럼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에 관하여/
유일호

2. 현안분석

- 1)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 / 박기백
- 2) 효율적인 정부조직구성 및 인사배치 이론/전택승
- 3)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3.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4. 정책흐름

- 1) 2003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

2) 부가세법시행령 및 조특법시행령 개정

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4) 5월까지의 재정조기집행 실적 및 추경예산 집행 대책

5) 2003년 7월 1일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안내

5. 재정통계

지방재정 II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추경보다 더 급한 경기대책은 외



2003년 8월호
(통권 제86호)

1. 권두칼럼

‘눈의 시대’의 경제정책/전승훈

2. 현안분석

- 1) 일본의 배우자 공제제도, 사회보험과 여성노동공급/원종학
- 2) 일본 재정구조의 변화와 세계개혁 전망/국중호
- 3) 프랑스 공공지출의 현안과 시사점 /김종면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주정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외

4. 정책흐름

-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2)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3) 근로소득공제율 5%p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10%p 확대
- 4) 2001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상황 분석자료

5. 재정통계

지방재정 III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금보험료, 봉급자만 ‘봉’ 안 되게 외



2003년 9월호
(통권 제87호)

1. 권두칼럼

거시경제 안정화가 우선이다./
이인실

2. 현안분석

- 1) 공평한 세무조사란 무엇인가?/
김형준
- 2) 부동산 거래세의 실가과세 실행방
안/노영훈
- 3) 국가채무관리의 개선방안/박형수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호주의 2003/04 회계연도 예산 외

4. 정책흐름

- 1) 9. 5 주택가격 안정대책
- 2)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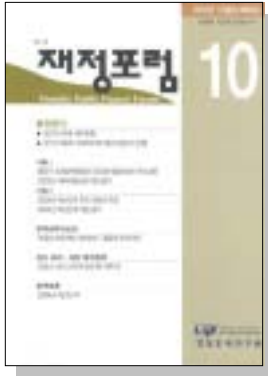
- 3)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5. 재정통계

조세총괄 I 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새 세금보다 보유세 강화를 외



2003년 10월호
(통권 제88호)

- 1. 권두칼럼:** 사회경제 구조변화에의 적절한 대응방향 모색 / 장수만
 - 2. 현안분석**
 - 1)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결과 / 전승훈 · 김재진
 - 2) 최근의 국세 세수동향 / 성명재
 - 3) WTO 제5차 각료회의와 DDA 협상의 진행 / 정재호
 - 3. 특집**
 - 1)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주영섭
 - 2)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전병목
 - 3) 200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권해상
 - 4) 2004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최준욱
 - 4. 정책토론회리포트**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쟁점과 추진과제
 -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프랑스 내년 소득세 3% 인하 계획 외
 - 6. 정책흐름**
 - 1) 2003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
 -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04년 예산안
 - 7. 재정통계:** 조세총괄Ⅱ편
 -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 예산 성장배려 미흡 외
-



2003년 11월호
(통권 제89호)

1. 권두칼럼

재정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초석,
재정분석센터 발족에 즈음하여/
전승훈

2. 현안분석

- 1) 2003 일본 세제개편 주요내용 검토/손원익
- 2) 지방세수 추계의 왜곡요인과 개선 방안/김현아
- 3) 연안화물운송업에 대한 조세체계 및 개선방안의 검토/권오성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프랑스 등 EU국가의 재정적자 장기
화와 유로화의 안정성 외

4. 정책흐름

- 1) 제1차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 개최
- 2)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 3) 지난 5년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평가 결과
- 4)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 6,499억원 부과

5. 재정통계

조세총괄 Ⅲ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기술이전 세제지원 유지돼야 외



2003년 12월호
(통권 제90호)

1. 권두칼럼

중위값과 평균의 차이/박원규

2. 현안분석

- 1) 정책인프라로서 소득과약의 문제: 실태와 정책과제/현진권
- 2) 소득분배구조의 향후 추이에 대한 일고/김종면
- 3) 지방소비세 신설-필요한가?/안종석

3. 정채토론포트

KIPF-일본 재정전문가 세미나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감세정책 경기회복 견인 외

5. 정책흐름

- 1) 2004년도 기금운용의 주요 내용과 특징
- 2) 2003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결사항
- 3)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 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6. 재정통계

조세총괄 IV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적자재정, 경기부양 효과 없다 외



2004년 1월호
(통권 제91호)

1. 권두칼럼

부동산 관련 조세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송대희

2. 현안분석

- 1)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 전병목
- 2)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 박기백
- 3)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수입측면을 중심으로 / 박노옥

**3. 전국 대학(원)생 현상 논문 공모
우수작**

고용 창출을 위한 선택적 차별과세/
이옥진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전자상거래시장 동향 외

5. 정책흐름

- 1) 2004년 1월 1일부터 조세제도 이
렇게 달라집니다
- 2)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 주요 내용
- 3) 2004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확정
- 4)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
법 개정안 국회통과

6. 재정통계

조세총괄 V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양도세 벌금수준으로 올라 외



2004년 2월호
(통권 제92호)

1. 권두칼럼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곽태원

2. 현안분석

1) 실업구조 변화와 실업대책/
원종학

2)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새편에 관
한 연구/김현숙

3)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쟁점 분석
/박형수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호주 노동당, TCF품목 관세인하계획
수정 촉구 외

4. 정책흐름

1) 2003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
용현황

2) 2004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분석

3) 2004년 상반기 재정집행 54.8%

4)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
실적 및 금년 계획

5. 재정통계

조세총괄 VI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접대비 규제 현실화해야 외



2004년 3월호
(통권 제93호)

1. 권두칼럼

경제정책,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전주성

독일 재무장관, 근본적 세제개혁 요구 외

2. 현안분석

- 1) 향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대한 소고/노영훈
- 2) B2C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소고/홍범교
- 3) 의료기관 관련 조세정책의현황과 정책방향/손원익

5. 정책흐름

- 1) 제1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 2) 부동산투기지역 지정현황
- 3)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및 소득분배동향
- 4) 2003 회계연도 통세입부·총세출부 마감

3. 정책토론포트

- 1)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
- 2)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6. 재정통계

소득세 I 편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SOC 투자 효율성 점검해야 외



2004년 4월호
(통권 제94호)

1. 권두칼럼

참여정부 1년의 경제회고와 과제/
김준영

2. 현안분석

- 1) 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성명재
- 2)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정재호
- 3) 개별과세정보는 국회에 공개되어야 하나?/현진권

3. 정책토론티포트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분과별 토론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향후 5년간 세금감면 관

문 높여 외

5. 정책흐름

- 1)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2) 특별소비세율 인하
- 3) 2003년 통합재정수지 8.1조원 흑자 실현
- 4) 세금포인트제 최초 시행
- 5) 올해 지방예산규모 87조 2,840억 원

6. 재정통계

소득세 II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신용불량자 대책, 첫발은 땀지만 외



2004년 5월호
(통권 제95호)

1. 권두칼럼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나성린

2. 현안분석

- 1) 인구구조 고령화의 재정영향/
최준욱
- 2) 경제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
세정책/안종석
- 3) 네덜란드 환경세제의 변화와 시사
점: 에너지세를 중심으로/현진권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G7, 세계·노동개혁 합의 외

4. 정책흐름

- 1) 2003 회계연도 정부결산
-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
월 연장

3)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
율 인하

4)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
상 소형주택의 범위

5) 2003년말 국가채무 165.7조원

6)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방안

5. 재정통계

소득세 III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이제는 물가안정이다 외



2004년 6월호
(통권 제96호)

1. 권두칼럼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과 Top-down 방식의 자원배분 / 원윤희

3) 2003회계연도 정부결산

4) 4월까지 지난해보다 3.1조원 증가한 56.8조원 재정집행

2. 현안분석

- 1)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비교 및 시사점 / 정재호
- 2)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 박형수

5. 재정통계

소득세 IV편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인터넷 접속세 금지법 통과 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산세 개편은 보유세 강화로 외

4. 정책흐름

- 1)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 2) OECD, 경제전망 발표
-



2004년 7월호
(통권 제97호)

1. 권두칼럼

재정안정화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이만우

2. 현안분석

- 1) 중국의 최근 조세정책 / 한상국
- 2) 우리나라 수자원관련 조세정책 방
향 / 전병목
- 3)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노영훈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회원국, 조세부담률 지속적으로
감소 외

4. 정책흐름

- 1) 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 2) '04.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 3)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4)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운영시
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
- 5) 국가재원배분 방식을 선진국형으
로 전환
- 6)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 7) '04년 1/4분기 말 현재 총 대외채
무·대외채권 현황(잠정)

5. 재정통계

양도소득세 I 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금, 국민을 이해시켜라 외



2004년 8월호
(통권 제98호)

1. 권두칼럼

재정개혁의 과제 / 임성일

2. 현안분석

- 1)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김현숙
- 2)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 현진권

3. 정책토론회리포트

- 1)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2)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경기 살아나 2003년도 법인세수 10조엔대 회복 외

5. 정책흐름

- 1) 2004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동향
- 2)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지원 현황
- 3) 2004년 6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4) 추경예산 등 3.2조원 3/4분기에 집행
- 5)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

6. 재정통계

법인세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아파트 재산세 반발, 옳지 않다 외



2004년 9월호
(통권 제99호)

1. 권두칼럼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박성배

2. 현안분석

- 1) OECD 회원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동향/홍범교
- 2) OECD 국가의 대학 지배구조 변화 동향 및 시사점/안종석

3. 기획

- 1) 중점 조세정책 방향 및 2004년도 세계개편안/백운찬
- 2) 2004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I)/안종석
- 3) 2004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II)/곽태원
- 4) 2004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III)/손광락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하원의장, “부시 재집권하면 국제청 폐지될 것” 외

5. 정책호름

- 1) 소득세 경감 및 특소세 폐지관련 보도 참고자료
- 2) 2004년 세계개편(안)
- 3) 기금운용평가단에서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

6. 재정통계

법인세 II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기금 주식투자의 전제조건 외

1993~2003

발간도서목록

연구총서

1. KTI 금융모형: 금융·거시 통합모형
최장봉·이인표/1995. 2/값 9,000원
2.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0,000원
3.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4.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5.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V)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6.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
임주영(편)/B5변형/365면/1998. 12/값 12,000원
7.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
임주영(편)/1998. 12/값 10,000원
8.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I)
임주영(편)/1998. 12/값 11,000원

연구보고서

- 93-01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손광락/1993. 9/값 5,100원
- 93-02 소비세 부담 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성명재/1993. 10/값 5,500원
- 93-03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명근/1993. 10/값 4,000원
- 93-04 조세지원체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윤건영·임주영/1993. 10/값 6,100원

- 93-05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이성욱·한상국·최명근/1993. 11/값 6,500원
 - 93-06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김유찬/1993. 11/값 6,000원
 - 93-07 금융선물거래의 도입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분석
최흥식·홍범교/1993. 12/값 7,000원
 - 93-08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김진수/1993. 12/값 8,500원
 - 93-09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나성린·현진권/1993. 12/값 6,500원
 - 93-10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수/1993. 12/값 7,200원
 - 93-11 대만의 환율운용과 수출경쟁력
김종만/1993. 12/값 6,000원
 - 94-01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
최장봉/1994. 2/값 5,500원
 - 94-02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률의 모색
김명숙/1994. 4/값 2,500원
 - 94-03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김진수·안종석/1994. 5/값 4,500원
 - 94-04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향
성명재·현진권/1994. 6/값 7,100원
 - 94-05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세합리화 방안
최명근/1994. 7/값 7,000원
 - 94-06 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현진권/1994. 10/값 9,500원
 - 94-07 국제통칙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철송/1994. 11/값 6,000원
-

-
- 94-08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곽태원/1994. 12/값 4,500원
- 94-09 환율운동과 수출경쟁력
김종만/1994. 12/값 9,900원
- 94-10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편방안
김유찬/1994. 12/값 4,000원
- 94-11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안종범 외/1994. 12/값 9,000원
- 94-12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안종석/1994. 12/값 3,000원
- 95-01 담배소비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김진수·성명재·박정수·이성욱/1995. 2/값 11,000원
- 95-02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안종길/1995. 5/값 6,000원
- 95-03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1995. 12/값 7,000원
- 95-04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현진권/1995. 12/값 4,000원
- 95-05 세수추계모형과 세수전망
성명재/1995. 12/값 5,000원
- 95-06 재정정책 기초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이창용·조운제/1995. 12/값 3,000원
- 96-01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김종만/1996. 4/값 6,000원
- 96-02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박정수·안종석/1996. 4/값 7,000원
- 96-03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통금융의 현황 및 정책과제
이기영/1996. 5/값 5,000원
-

- 96-04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추정
현진권/1996. 8/값 5,500원
 - 96-05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향
김종만/1996. 10/값 7,000원
 - 96-06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상국·배준호·이광재/1996. 12/값 16,000원
 - 96-07 기업의 차입과 세제
손원익/1996. 12/값 5,000원
 - 96-08 한국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KIPF96Q
박종규/1996. 12/값 5,500원
 - 96-09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손원익 외/1996. 12/값 6,500원
 - 96-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안종석·박정수/1996. 12/값 8,000원
 - 96-11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유시권/1996. 12/값 6,500원
 - 96-12 한국의 토지세제
노영훈·이성욱·이진순/1996. 12/값 6,000원
 - 97-0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정수/1997. 3/값 6,000원
 - 97-02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관계
김건우/1997. 3/값 4,000원
 - 97-03 단위근 검정과 세수추계
성명재/1997. 3/값 6,000원
 - 97-04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장 춘/1997. 3/값 11,000원
 - 97-05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와 세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
- 성명재/1997. 4/값 5,000원
- 97-06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박대근·이창용/1997. 5/값 4,000원
- 97-07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전주성/1997. 4/값 4,000원
- 97-08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전영준/1997. 4/값 4,000원
- 97-09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1997. 5/값 5,000원
- 97-10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분석과 석유류 과세정책의 개선방향
성명재/1997. 7/값 7,000원
- 97-11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손원익/1997. 10/값 5,000원
- 97-12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손광락/1997. 8/값 4,000원
- 97-13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안
장근호·김진수/1997. 11/값 9,000원
- 97-14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성명재/1997. 11/값 5,000원
- 97-15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노영훈/1997. 12/값 6,000원
- 97-1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전영준·한도숙/1997. 12/값 7,000원
- 97-17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장근호/1997. 12/값 7,000원
- 98-01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 추계(1954~1996)
표학길/1998. 6/값 7,000원
-

- 98-02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성명재·전영준/1998. 5/값 6,000원
 - 98-03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상·이준규/1998. 12/값 4,000원
 - 98-04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국중호/1998. 12/값 4,000원
 - 98-05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소비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안석환 외/1998. 12/값 4,000원
 - 98-06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손원의 외/1998. 12/값 9,000원
 - 98-07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장근호/1998. 12/값 14,000원
 - 98-08 인적자본과 조세
이철인/1998. 12/값 6,000원
 - 98-09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이용섭/1999. 5/값 7,000원
 - 99-01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성명재·장근호/1999. 12/값 12,000원
 - 99-02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
장근호·이명현/1999. 12/값 10,000원
 - 99-03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성명재·전영준/1999. 12/값 10,000원
 - 99-04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산업별 거시경제모형: KIPF99Q
박종규/1999. 12/값 8,000원
 - 99-05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박종규/1999. 12/값 4,000원
 - 00-01 혼합분포 추정을 통한 중심(core) 인플레이션을 측정
박종규/2000. 3/값 5,000원
-

-
- 00-02 외환위기 발생 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 부담의 변화 분석
성명재/2000. 11/값 9,000원
- 00-03 세수추계의 기법개발연구:법인세,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전환효과
박기백·이명헌/2000. 12/값 6,500원
- 00-04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전영준·한도숙/2000. 12/값 8,000원
- 00-05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이철인·전영준/2000. 12/값 9,000원
- 00-06 저축률 하락과 재정정책
박종규·김진영/2000. 12/값 5,000원
- 00-07 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김정훈/2000. 12/값 5,000원
- 00-08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한도숙/2000. 12/값 5,500원
- 00-09 의료비 지출의 장기예측
김종면/2000. 12/값 8,500원
- 00-10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과급효과분석
을 위한 모형 개발
이명헌·정재호/2000. 12/값 5,000원
- 00-11 장기 거시-재정 모형(KIPF00A): 공적자금의 재정 수지에 대한 장기
적 영향
박종규/2000. 12/값 5,000원
- 00-12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2001-2005)
박종규·박기백·성명재·전영준/2000. 12/값 5,500원
- 01-01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성명재/2001. 11/값 8,000원
- 01-02 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 방안
-

- 이철인/2001. 11/값 10,000원
- 01-03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현진권·박창균/2001. 12/값 7,000원
- 01-04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박기백/2001. 12/값 7,000원
- 01-05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김진영/2001. 12/값 7,000원
- 01-06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이명현·성명재/2001. 12/값 6,000원
- 01-07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전영준·김종면/2001. 12/값 6,000원
- 01-08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합의
김진영·박창균/2001. 12/값 6,000원
- 01-09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정훈/2001. 12/값 6,000원
- 02-01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성명재/2002. 6 23/값 7,000원
- 02-02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전병목/2002. 12. 31/값 7,000원
- 02-03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모형:KEFM02
박형수/2002. 12.13/값 6,000원
- 02-04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박기백·박형수/2002. 12. 31/값 7,000원
- 02-05 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분석
김종면/2002. 12. 31/값 5,000원
- 02-06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
-

-
- 을 인상효과분석
이명헌·성명재/2002. 12. 30/값 6,000원
- 02-07 지속가능발전과 최적 환경세에 대한 연구
권오성/2002. 12. 30/값 6,000원
- 03-01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
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성명재·박기백·김현아/2003. 8. 31/값 8,000원
- 03-02 장기인력수급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김종면·성명재/2003. 12. 31/값 9,000원
- 03-03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전병목·원종학/2003. 12. 31/값 7,000원
- 03-04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성명재·박노옥/2003. 12. 31/값 11,000원
- 03-05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안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 12. 31/값 7,000원
- 03-06 국제조세회피: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안종석·최준욱/ 2003. 12. 31/값 6,000원
- 03-07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오성·강만옥/2003. 12. 31/값 9,000원
- 03-08 인구구조의 변화와 조세·재정정책: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최준욱·전병목/2003. 12. 31/값 8,000원
- 03-09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김정훈/2003. 12. 31/값 6,000원
- 03-10 이전기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노영훈/2003. 12. 31/값 7,000원
-

영문연구보고서

96-01 Land Taxation in Korea
Ro Young Hoon/1996. 12

정책보고서

- 93-01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최장봉/1993. 9/값 4,300원
- 93-0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유시권·임주영/1993. 10/값 4,900원
- 93-03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곽태원/1993. 10/값 5,300원
- 93-04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손광락 외/1993. 11/값 8,500원
- 94-01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이기영/1994. 1/값 5,500원
- 94-02 적정 통화지표의 선정
이인표/1994. 4/값 4,900원
- 94-03 금융자율화와 신금융상품의 개발
홍범교/1994. 4/값 5,000원
- 94-04 재산보유세의 귀착: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재고찰
김명숙/1994. 5/값 5,500원
- 94-05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개편방안
최흥식/1994. 7/값 4,600원
- 94-06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박정수/1994. 8/값 6,100원
- 94-07 취득과세형 상속세 전환에 관한 연구
-

-
- 한상국/1994. 10/값 5,700원
- 94-08 스칸디나비아 3국의 조세제도 - 스웨덴을 중심으로
박노호/1994. 11/값 11,000원
- 94-09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
조운제·안종석/1994. 12/값 5,500원
- 95-01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조운제·황현리/1995. 3/값 3,000원
- 95-02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개선방향
이기영/1995. 5/값 2,500원
- 95-0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김유찬/1995. 6/값 3,000원
- 95-04 재정정책의 경기조정 기능
박종구/1995. 7/값 3,000원
- 95-0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손원익/1995. 7/값 3,000원
- 95-06 석유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성명재/1995. 9/값 3,000원
- 95-07 사용료소득 과세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김유찬/1995. 12/값 4,000원
- 96-01 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 분석
최장봉·안종길·김기홍/1996. 4/값 12,000원
- 96-0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방안
정영현·박정수/1996. 6/값 4,000원
- 96-03 WTO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임주영/1996. 6/값 3,000원
- 96-04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박상태/1996. 8/값 11,000원
- 96-05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

- 최흥식·김성룡/1996. 8/값 7,000원
- 96-06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6. 8/값 4,000원
- 96-07 업종전문화시책의 현황, 평가 및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
이기영/1996. 9/값 3,500원
- 96-08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1996. 11/값 5,500원
- 96-09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현진권/1996. 12/값 6,000원
- 96-10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김진수/1996. 12/값 4,500원
- 96-11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규제완화
김종만/1996. 12/값 4,000원
- 96-1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한도숙/1996. 12/값 6,000원
- 96-13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6. 12/값 4,000원
- 97-01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과 정책과제
홍범교/1997. 4/값 4,000원
- 97-02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7. 4/값 5,000원
- 97-03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박상태/1997. 5/값 8,000원
- 97-04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안종석/1997. 6/값 4,000원
- 97-05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에 관한 연구
이기영/1997. 6/값 4,000원
- 97-06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
- 임주영/1997. 12/값 4,000원
- 97-07 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1997. 7/값 5,000원
- 97-08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한상국/1997. 7/값 4,000원
- 97-09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유시권·이노창·유재권·오엽록/1997. 8/값 4,000원
- 97-10 한·일 국제행정의 비교·평가
유시권/1997. 10/값 5,000원
- 97-1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임주영·장근호·노영훈/1997. 9/값 5,000원
- 97-12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 우리의 대응
홍범교/1997. 11/값 4,000원
- 97-13 對中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소고
한상국/1997. 12/값 4,000원
- 97-14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안종석/1997. 12/값 4,000원
- 97-15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7. 12/값 4,000원
- 97-16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김진수 외/1997. 12/값 4,000원
- 97-17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손원익/1997. 12/값 4,000원
- 98-01 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연구
국중호/1998. 3/값 5,000원
- 98-02 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문춘걸/1998. 3/값 5,000원
- 98-03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

- 김재진 · 홍용식/1998. 7/값 6,000원
- 98-04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윤건영 · 최영순/1998. 6/값 4,000원
- 98-05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박종규/1998. 6/값 6,000원
- 98-06 물가지수 연계채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이상섭/1998. 7/값 4,000원
- 98-07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성명재/1998. 12/값 6,000원
- 98-08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김유찬 · 홍범교/1998. 12/값 5,000원
- 98-09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국중호/1998. 12/값 6,000원
- 98-10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김진수/1998. 12/값 5,000원
- 98-11 외국제도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김유찬/1998. 12/값 5,000원
- 98-12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김재진 · 김진수/1998. 12/값 7,000원
- 98-13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 · 세대내 재분배 효과
전영준/1998. 12/값 4,000원
- 98-14 기업분할과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8. 12/값 4,000원
- 98-15 유가증권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및 과세방안
한상국/1998. 12/값 5,000원
- 98-16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한상국/1998. 12/값 4,000원
-

-
- 99-01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박기백·최준욱/1999. 12/값 7,000원
- 99-02 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
이상섭·김진수·한상국/1999. 12/값 6,000원
- 99-03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9. 12/값 6,000원
- 99-04 특별소비세 부담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성명재/1999. 12/값 9,000원
- 99-05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성명재/1999. 12/값 5,000원
- 99-06 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영준·이철인/1999. 12/값 4,000원
- 99-07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김정훈/1999. 12/값 6,000원
- 99-08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노영훈·연태훈·홍범교/1999. 12/값 4,000원
- 99-09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노영훈·장근호/1999. 12/값 13,000원
- 00-01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손원익/2000. 12/값 6,000원
- 00-02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김정훈/2000. 12/값 6,000원
- 00-03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도숙/2000. 12/값 6,000원
- 00-04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현진권·정재호/2000. 12/값 5,000원
- 00-05 파트너쉽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김재진/2000. 12/값 6,500원
-

- 01-01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홍범교·안종석/2001. 12/값 7,000원
 - 01-02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황국재/2001. 12/값 10,000원
 - 01-03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정재호/2001. 12/값 8,000원
 - 01-04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안종석/2001. 12/값 6,000원
 - 01-05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
세·재정분야 기초연구(I)
최준욱·전택승·이명현·한상국/2001. 12/값 19,000원
 - 01-06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전영준/2001. 12/값 6,000원
 - 01-07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에 관한 연구
최준욱/2001. 12/값 7,000원
 - 02-0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수·이준규/2002. 9. 31/값 8,000원
 - 02-02 재정의 지방분권화: 남미국가들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와 시사점
안종석/2002. 12. 18/ 값 9,000원
 - 02-03 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II)
최준욱·이명현·전택승/2002. 12. 18/값 9,000원
 - 02-04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향-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최명근/2002. 12. 31/값 10,000원
 - 02-05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준규·김진수/2002. 12. 31/값 6,000원
 - 02-06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이명현/2002. 12. 31/값 8,000원
-

-
- 02-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 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
방안-
김재진·권오성/2002. 10. 30/값 11,000원
- 02-08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김진수·김재진/2002.12. 31/값 14,000원
- 02-09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손원익/2002. 12. 31/값 5,000원
- 02-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김정훈/2002. 12. 31
- 02-11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 경제개방이 자본소득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정책 논의
최준욱/2002. 12. 31/값 6,000원
- 02-12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노영훈/2002. 12. 31/값 6,000원
- 03-01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한상국/2003. 12. 31/값 11,000원
- 03-02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홍범교/2003. 12. 31/값 7,000원
- 03-03 관세율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와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 12. 31/값 11,000원
- 03-04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박형수·박기백/2003. 12. 31/값 8,000원
- 03-05 조세감면의 합리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박기백·정재호/2003. 12. 31/값 8,000원
- 03-06 지방소비·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김현아/2003. 12. 31/값 8,000원
- 03-07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노영훈/2003. 12. 31/값 6,000원
-

- 03-08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김재진/2003. 12. 31/값 12,000원
- 03-09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전택승/2003. 12. 31/값 7,000원
- 03-10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손원익/2003. 12. 31

연구논문집

- 93-01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최 광 외/1993. 12/값 9,000원
 - 94-01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조운제 외/1994. 11/값 7,000원
 - 95-01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제1권 조세정책 : 이우택 외/1995.12/값 7,000원
제2권 금융정책 : 조운제 외/1995.12/값 6,000원
 - 96-01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편)/1996. 4/값 11,000원
 - 97-01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정영헌 외/1997. 12/값 5,000원
 - 98-01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현진권 편/1998. 12/값 8,000원
 - 98-02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용방향
/1998. 12/값 5,000원
 - 99-01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
/1999. 12/값 4,000원
 - 99-02 조세개혁의 효율성 제고
현진권 편/1999. 12/값 7,000원
-

정책연구

- 98-01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김종만/1998. 3/값 3,000원
- 98-02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김유찬/1998. 12/값 3,000원

재정연구

- 『재정금융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1호)/1994. 12/값 8,000원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에 관한 분석/안종범·정영현
 - 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성욱
 -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세제조화의 이론적 타당성/한도숙
 - 시장가격자료를 사용한 운수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측정/현진권
 - 정부계층간 기능분배의 적정구조 분석/박정수
 - 우리나라 실질 설비투자의 장기추세 추정/박종규
 - 수출가격변동과 환율운용 지표/김종만
-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통권 제2호)/1995. 6/값 7,000원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김유찬
 -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노영훈
 - 지방교부세 분배방식에 관한 연구/안종석
 - 수출금융의 可用量과 금리보조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이기영
 -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김종만
 - 證據金의 시장안정화 기능과 적정수준/최홍식
 - 우리나라의 통화충격지표/이인표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3호)/1995. 12/값 6,500원

- 遺産行動이 減稅정책의 實物효과에 미치는 영향/배준호
- 均等犧牲假說에 따른 個人소득세의 수직적 形평성에 관한 연구/임주영
- 지방세 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미국 州稅를 중심으로/장근호
- 자동차 관련 세법개정의 효과: 소득 계층별 세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전영준
- 거시금융모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의 과급효과 분석/최장봉
- 先物시장에서의 조작과 감독: 문헌조사를 중심으로/홍범교
- 서평: 『Regulation and Economic Analysis: A Critique over Two Centuries』 (by Richard L. Gordon, 1994)/이준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통권 제4호)/1996. 6/값 6,500원

-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성명재
-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 한국의 경우/박완규
- 개인연금의 과세유형이 국민저축과 정부채무에 미치는 효과/배준호
- 재고자산에 대한 세제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 미국의 경우/손원익
- 조세정책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안종석
-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논의와 전망/김종만
- 서평: 『The Economic Foundations of Government』(by Randall G. Holcombe, 1994)/소병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5호)/1996. 12/값 7,000원

- 개방경제하에서 조세정책이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분석/안종석
 -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양준모
 - 加重平均值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옥동석
 -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간신용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이기영
 - 석유류 과세의 소득계층별 귀착 분석/최준욱
-

-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개편방향 검토/한상국, 배준호
- 書評: 『Public Economics: Selected Papers by William Vickery』(ed. by Richard Arnott and others, 1994)/노영훈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6호)/1997. 8/값 9,000원

- 기업 기부행위의 동기에 관한 연구/김진수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박정수
- 메뉴비용과 가격충격분포/박종규
- 메뉴비용과 산업별 요소가격충격하에서의 독점적 경쟁기업의 가격결정/박종규
- 환율변동이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非對稱性/김종만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분석/진병용
- 인플레이션과 상대가격변동성/황의각, 현성민
- 서평: 「중앙은행론」(정운찬 著, 1995)/정진호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7호)/1997. 12/값 7,000원

-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을 위한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분포의 추정/성명재
- 교육서비스와 소득분포 평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국중호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행태분석: 기간간 최적모형을 중심으로/김규한, 이명훈
- 우리나라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결정요인 분석/김종만
- 주가변동성의 추정과 활용/이준행, 최홍식

※ 제5권 제1호부터 『재정금융연구』를 『재정연구』로 改題

『재정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8호)/1998. 8/값 7,000원

- 공·사교육비와 조세/박기백

- 조세정책 평가모형에서 유산이 주는 경제학적 함의/김재진
- 인적투자와 물적 이전에서 나타나는 과세효과/국중호
- 경제체제 전환기의 신용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인정책/한도숙
- 서평: Do Deficits Matter?(by Daniel Shaviro, 1997)/이지순

『재정연구』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1998. 12/값 7,000원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안중석
- 자본비용의 추정: 상장기업을 대상으로/윤종인
- 통화정책의 주가에 대한 효과분석/이상섭
-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축적과정에서의 유산의 역할 및 행태분석/배준호,
김진수
- 공공재의 수요와 불확실성/이철인

『재정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1999. 8/값 6,000원

-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비용의 세대별 귀착/전영준
- 수직적 상품차별화된 산업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분석/연태훈
-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 지속 가능 시한의 변화: 단순 시뮬레이션 분석/
박종규
- 다국적기업들의 기업 내 자금흐름에 대한 이론적 분석/한도숙
- The Effects of Off-farm Work Experience and the Regional Labor
Market Situation on Farmer's Exit and Off-farm Work Participation/
이명현

『재정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1호)/2000. 1/값 7,000원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감면 규모 추정/박기백
 - 인구집적과 도시의 성장: 정태모형과 그 실증적 함의/김진영
 -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
-

요인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마재신

- 同次性, 실질잔고효과와 고전과적 이분법/장세진
- The Long-run Burden of Health Care Costs on Public Finance: An Alternative Forecasting Approach/김종면

『재정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2000. 7/값 7,000원

-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최적관세: 小國과 大國의 경우/정재호
- 고정투자자에 대한 재무제약가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윤종인
- 지방재정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안종석
-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 거시적 구조 변화와 미시적 원인/박종규, 김진영
- 서평: Cybertaxation: The Taxation of E-Commerce/홍범교

『재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3호)/2001. 4/값 7,000원

-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
에 관한 연구/성명재
-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
/정재호
- 통화옵션에 나타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추정/박창균
-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licy Analysis for the Social Optimum/권오성
- 서평: 20세기 빈부격차를 설명하는 비경제학자들의 견해/김진영

『재정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2001. 12/값 5,000원

- ACE제도의 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과/곽태원
- 로비활동하의 간접세 결정에 관한 연구/이인호
- 지방세수추계 모형 및 요인분석/김현아
- Neighborhood Structure and the Viability of Cooperation/전택승, Rajiv

Sethi

『재정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5호)/2002. 7/값 5,000원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김상현·현진권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체계의 구축/국중호
-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김정유
-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권오성
- 영문요약

『재정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2002. 12/값 5,000원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김상현·현진권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체계의 구축/국중호
-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김정유
-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권오성
- 영문요약

『재정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2003. 7/값 5,000원

- 1990년대 전·후반기의 소득세 부담률 변화의 요인별 효과 분리추정에 관한 연구/성명재
 - 형평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현진권, 임병인
 -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김정완
 - Interest Group, Government Structure and Public Expenditure/김상현
-

『재정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8)/2003. 12/값 5,000원

- 직접세와 간접세 인하의 지역경제 성장효과 비교: CGE모형의 정태 동태 분석/지해명
-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모형의 분석/유승훈
- 國際的 租稅 非中立性 測定에 관한 研究- 우리나라와 G7 國家의 個人 포트폴리오 投資를 중심으로/이경근

『재정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19)/2004. 8/값 5,000원

- 한계세율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노현섭·서갑수·서종길
- 레버리지가 기업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System-GMM을 이용한 상장 제조기업 패널 분석/조삼용·신선우·이훈현
- 무선데이터 통신 과금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김정유
-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Nonparametric Structural Models by Instrumental Variables Method/김우철

재정포럼

『재정포럼』 1996. 7월호부터 계속

기타보고서

- 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
안종범(편)/1993. 10/값 4,000원
- 새로운 경제질서와 생산성 향상
장현준/1994. 10/값 6,000원
- 개정세법 총람 (I)(II)(III)
/1994. 10/값 100,000원

- 재정·금융정책과 자유주의 사상
이근식/1994. 12/값 8,500원
 -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한상국/1995. 6/값 6,000원
 - 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한상국/1995. 12/값 6,000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과급효과와 정책과제
이인표·안종범·최흥식/1995. 12/값 6,5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임주영 외/1996. 11/값 5,500원
 -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이철송/1996. 12/값 6,000원
 -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이준규·이태희/1997. 3/값 4,000원
 -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함의
정영현·심재진(역)/1997. 4/값 4,000원
 - 세무자문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건창/1997. 6/값 6,000원
 - 우리나라와 BIS, 미국 및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최장봉·가경수/1997. 6/값 5,000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김종만·김관영/1997. 9/값 7,000원
 -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 범위
육동석/1997. 10/값 5,000원
 - 캐나다의 재정
박기백/1997. 10/값 6,000원
 - 독일의 재정
김유찬/1997. 11/값 6,000원
-

-
- 영국의 재정
최준욱/1997. 11/값 6,000원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현진권 편/1997. 11/값 13,000원
 - 조세정책50년 제1권~제6권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제2권: 총괄자료집, 제3권: 소득세자료집, 제4권: 법인세자료집, 제5권: 소비과세자료집, 제6권: 재산과세자료집>
최광 · 현진권 편/1997. 12/전 6권 1질(CD 포함) 25만원, 각권 4만원
 -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Globalization, Unification and Tax Policy)
김유찬 외/1997. 12/값 8,000원
 -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김유찬 외/1998. 2/값 11,000원
 -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우택/1998. 3/값 9,000원
 -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 외/1998. 3/값 5,000원
 - 일정한 조선의 조세정책
차병권/1998. 3/값 9,000원
 -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대도시경제의 내발적 발전과 자치단체 재정개혁 전략
황한식 외/1998. 7/값 6,000원
 - 미국과 캐나다의 세수추계
성명재/1998. 11/값 6,000원
 - 지방재정 구조분석 -전남·전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광수·김일태/1998. 12/값 4,000원
 - 주류 유통·판매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성명재/1999. 12/값 4,000원
 -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파급효과
노영훈, 심재진 역/1999. 12/값 4,000원
-

- 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손원익/1999. 12/값 5,000원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현진권(편)/2000. 4/값 13,000원
 - OECD 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2002. 1/값 8,000원
 -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최광/2002. 1/값 8,000원
 -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최명근/2002. 3/값 4,000원
 -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과 정책시사점
국중호·한상국/2002. 10/값 5,000원
 - 한일 지방세 구조와 세부담 특성비교
국중호/2002. 12/값 6,000원
 - 조세사면-한국에서의 정책적 유용성-
최병철/2002. 12/값 4,000원
 - 학교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교육 행·재정체제의 개혁
 - 탈통제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이진순/2002. 12/값 6,000원
 -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원윤희·전택승·황수철·안종범·임주영/2002. 12/값 15,000원
 - 인적자원의 장기추이 분석과 복지재정 잠재부담 전망
김진영·안주엽·김종면·전영준
 -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이일영·김연철·양문수·이건범·이남주·전병유/2003. 5/값 7,000원
 -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옥동석/2003. 8/값 9,000원
 -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이준규/2003. 9/값 10,000원
-

-
- Tax Equity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정광수/2003. 11
 - 전설의 10년: 1990년대 미국경제 성공의 교훈
김교식/2003. 11
 -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전승훈/2003. 12/값 7,000원
 -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배준호/2003. 12/값 7,000원
 -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김상헌·이영·김진영·민동기·사공 용/2003. 12/값 12,000원
 - 고령화 현상에 수반되는 사회경제 변수 및 의료지출의 변화
김종면·이철희·전영준/2003. 12/값 8,000원
 -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이형구·전승훈(편)/2003. 12/값 150,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장근호/2004. 6/값 20,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박정수/2004. 6/값 15,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국중호/2004. 6/값 15,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안창남/2004. 6/값 13,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김유찬/2004. 6/값 13,000원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택승/2004. 8/값 10,000원
 -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대한 이해
전승훈 외/2004. 9/값 13,000원
-

